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167-10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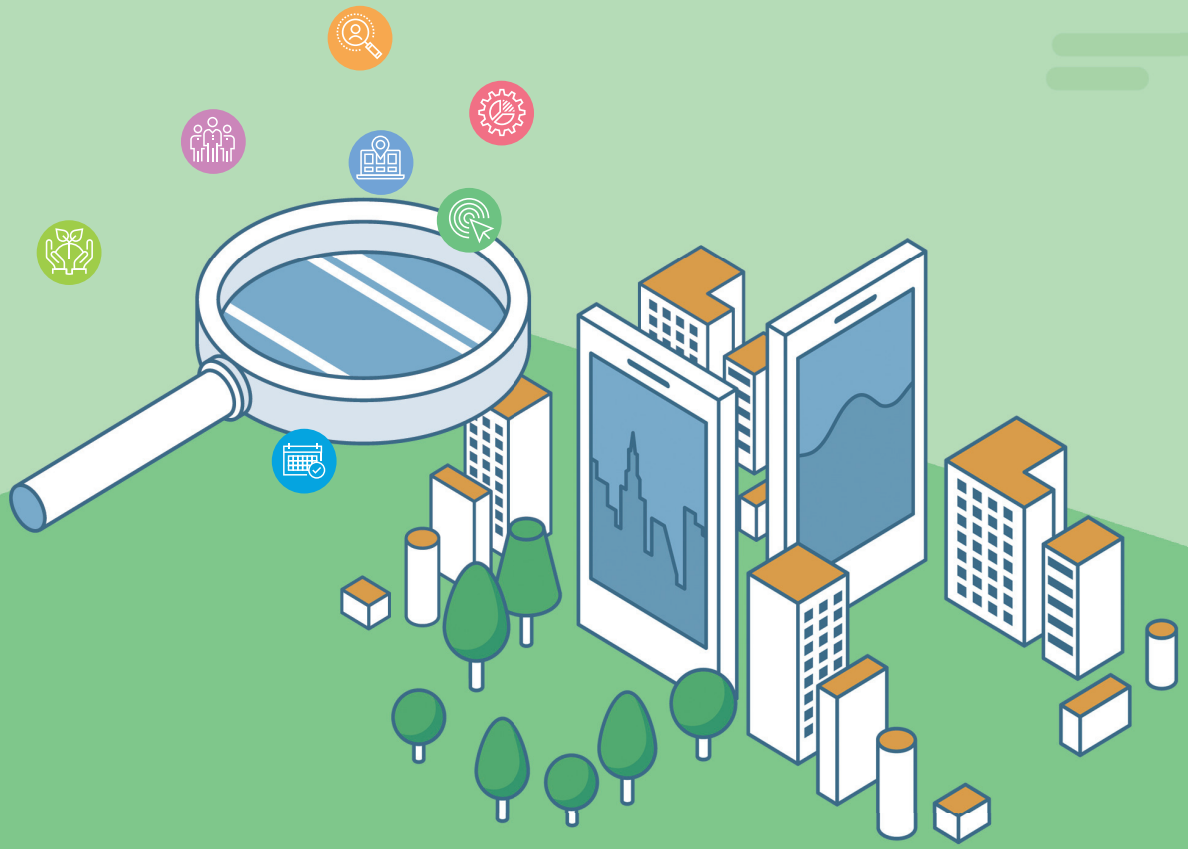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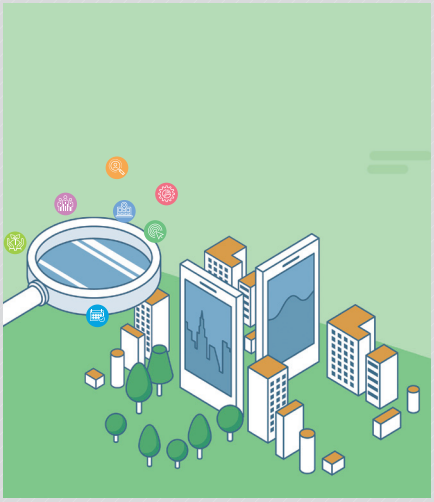

CONTENTS

개요

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개요 7

Ⅱ. 사업 추진 체계 9

Ⅲ. 주민자치 지원 분야 업무계획 12

주민자치 분야

Ⅰ. 주민자치 분야 개요 25

Ⅱ. 세부 추진 요령 31

1.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31

2. 주민자치 지원 체계 개선 122

Ⅲ. 지원 정책 153

1.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153

2. 지역 대상 정책 연계 지원 173

■ **붙임** 205

개요

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개요

Ⅱ. 사업 추진 체계

Ⅲ. 주민자치 지원 분야 업무계획

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으로
  - 도시지역은 소원했던 이웃 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필요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주민들이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 내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

⇨ 이를 위해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주민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으로 혁신

2 추진경과

혁신읍면동추진단 ('17.11.~'18.3.)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18.4.~'19.12.) →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20.1.~)

(사업개편) (추진단 기능 확대)

사업도입 및 모델발굴('17.8.~'18.12.)

- **(사업발표 및 조직 설치)** BH 사회혁신수석,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상 발표('17.8.) → 『혁신읍면동추진단*』 설치('17.11., 대통령훈령 제정)

  * 지방자치분권실장 소속, 1단 3팀 20명

- **(사업개편)** '18년 국회 예산 전액삭감에 따라, 지자체 주도, 행안부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창출·확산하는 형태로 사업 개편('18.1.)
  * 『혁신읍면동추진단』 →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개편('18.4.)
- **(모델발굴)**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공유, 소규모 도시재생(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업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지원 모델 검토

사업확산('19.1.~)

- **(모델적용)** 읍·면·동 현장인력 확충, 주민자치회 확산, 공공서비스 연계*, 지자체 컨설팅**, 「주민자치·보건복지 매뉴얼」 읍·면·동 배포('19.4., '20.3.) 등
  * 공공서비스 연계 공모사업('19.4.~12. 49개 시·군·구, '20.3.~ 52개 시·군·구)
  ** 주민자치 컨설팅, 보건복지 컨설팅, 주민자치 전문가 양성, 지역복지 인재양성 등
- **(지역사업 연계)**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의 사업 지원모델* 설계, 자치·돌봄·재생 등 협력 확대를 위한 5개 부처** 협약 체결('20.3월) 등
  * 관계부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19.2.),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모델 설계('19.11.) 등
  ** 행안·교육·농식품·복지·국토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기능 추가('20.1.)

- **(추진단 개편 논의)** 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주민복지 전달체계 개편 업무를 수행토록 B.H.(사회수석실), 행안부, 복지부 등 협의('19.5.)
- **(훈령개정)** 추진단 명칭을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으로 변경하고, 추진단 기능에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가('20.1.)
  * 추진단 확대 개편은 전달체계 개편 사업 구체화에 따라 재논의('19.12.)
- **(시범사업안 마련)**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안' B.H. 보고('20.5., 행안부·복지부)

Ⅱ. 사업 추진 체계

1 기본방향

-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을 통해 사업 기획·총괄 및 자치단체 사업추진 지원
- **(시·도)** 시·도별 자체 사업 추진 및 관할 시·군·구의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사업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 **(시·군·구)** 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전담팀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배치(주민자치, 복지, 총괄 부서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 추진

시·군·구 및 읍·면·동 소요인력은 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지속 반영 추진 예정

- **(협력체계)** 지자체별 자체 추진협의회 운영,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추진협의회 구성 예시

- (구성) 시·군·구, 읍·면·동 담당부서, 주민자치회, 지역 내 사업 관련 단체, 기관
- (역할) 사업 지원방안(조례제정, 자치단체 실시계획 등), 지역자원과 주민사업 연계방안 등 논의

※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사업 분야별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2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안

읍·면·동 조직 기본방향

- '22년까지 전체 읍·동은 「기본형*」을 거쳐 「공공서비스 연계형」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기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舊복지허브화)의 기본형과의 주요 차이점 : 행정팀에 주민자치 전담인력 1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인력 1명이 추가된 형태

- 면은 「기본형」 또는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전환 추진

  * 현재 기본형인 경우 현행 유지, 권역형 중심면인 경우 기본형으로 전환 원칙

읍·면·동 기본 조직·인력 모델

<table>
<tr><th>구분</th><th>모델</th><th>기능</th><th>조직</th><th>인력 구성*</th></tr>
<tr><td rowspan="2">읍·동</td><td>기본형</td><td>• 방문상담, 통합사례 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복지+건강 서비스
• 주민 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 등</td><td rowspan="2">•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읍·면·동장
행정팀 *주민자치 1명 포함 | 복지 행정팀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간호 1명 포함</td><td>• (행정팀) 자치 1명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3명, 간호 1명</td></tr>
<tr><td>공공서비스 연계형</td><td>•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범위 확대
• 종합상담
• 실질적 민·관연계
• 주민 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 등</td><td>• (행정팀) 자치 1명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7명, 간호 1명</td></tr>
<tr><td rowspan="2">면</td><td>기본형</td><td colspan="3">• 읍·동 기본형 모델과 동일</td></tr>
<tr><td>농어촌 특성화형</td><td>• 기본형 모델과 동일</td><td>•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미설치(전담 인력만 배치)
읍·면·동장
총무·민원 * 자치 1명 포함 | 산업 | 복지 행정 | 찾아가는 보건복지 * 복지 2명, 간호 1명</td><td>• 주민자치 1명, 복지 2명, 간호 1명</td></tr>
</table>

*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인력은 기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맞춤형복지팀 인력을 포함하며, 팀 명칭 등은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

인력별 주요 업무

- **(시·군·구 사업 총괄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체계 구축, 자체사업 기획·총괄, 관련 부서 및 소관 읍·면·동 지원 등
- **(읍·면·동 복지인력)**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방문상담, 보건·복지·건강 등 전문 종합상담,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주민역량 강화
- **(읍·면·동 간호인력)** 위험도별 지속적 건강관리, 맞춤형 지역사회자원연계, 건강현황 분석에 따른 해결전략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읍·면·동 주민자치 인력)**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지원, 민·관 협업 실행 지원 등

2021년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운영요령

- **(정원배정·배치)** 아래 표를 원칙으로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되, 시·군·구의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배정된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시·구 2명, 군 1명) 범위 내에서 시·군·구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 총괄부서에 정원배정 및 배치 가능*

  * **(주요 직무)** 시·군·구 단위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모델 기획, 공공·민간자원 연계 등

인력별 정원 배정 및 배치

구분	사업 총괄인력	읍·면·동 복지인력	읍·면·동 간호인력	읍·면·동 자치인력
정원 배정	시·군·구 본청 주공사업 총괄부서	읍·면·동	보건소	읍·면·동
배치	시·군·구 본청 주공사업 총괄부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행정팀

- **(복지인력 직렬)** 사회복지직렬 충원을 원칙으로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충원하되, 사회복지직렬이 최소 70% 이상 충원되도록 함

  ※ 예) 배정인력 5명인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직 최소 4명 충원(소수점 첫 자리 반올림)

Ⅲ. 주민자치 지원 분야 업무계획

과제 1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배경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제도 기반 마련 및 공론장 운영 필요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제도 근거 마련 추진 * 자치분권제도과 협력
  - **(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능·역할, 재정지원 등 법제화 지원
  - **(조례)** 주민자치회 대표성·민주성·집행력 강화 중심 조례(안) 지원
  - **(시범사업)**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대상 지역으로 지정
    ※ '20년 시범실시 지역 626개소 운영 中
- 주민자치사업 재원(주민세, 참여예산, 특별회계 등) 확충 지원
  - 주민세 개인 균등분 상당액 활용, 읍·면·동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활성화 지원
    * 지방세정책과, 재정정책과 협력
  - 자치재원 규모 확대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지자체 협업 및 사례 전파
- 민·관·학 주민자치 정책 공론장 운영 지원
  - 온·오프라인 사례 공유, 정책 방향 등의 이슈별 포럼(2회)
  - 전국 권역별 주민자치 현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현장 경험 기반의 소규모 연구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정운영 혁신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담당자 전문직위제 운영 지원

추진일정

- 제도, 재원 확충 방안, 공론장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2~11월)

과제 2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추진배경

- 주민자치 관련 민간 및 공무원 교육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정책 활성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필요

주요내용

- 자치단체 주민자치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 시·도, 시·군·구 공무원 교육(상반기 권역별 설명회 등 2회)
  - 읍·면·동 담당자 교육(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계 교육 1회)
  - 주민자치회 회장 등 임원 교육(1회)
- 주민자치 민·관 전문인력 양성-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20개팀(1개팀-민간인 2명, 공무원 2명) 선정
    * '20년 21개팀 총 84명 운영
  - 시군구청장협의회·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 주최
  - 과제 수행형 워크숍 방식 교육(전문 코칭단 운영)
- 자치단체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자치단체 공모를 통한 선정 지원
  - 자치단체별 수석컨설턴트 지정·교육을 통한 책임성 강화
    * '19년 자치단체 25개, '20년 26개, 수석컨설턴트 12명 운영

추진일정

- 주민자치 민관 교육 추진(2~11월)
-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추진(3~11월)
-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운영(4~11월)

참고 1 2021년 주체별 주민자치 교육역할 구분(안)

2021년 주민자치 교육

- 주민자치의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별 교육 심화 필요
- 행안부 간접지원, 자치단체 직접운영으로 역할 분담 필요

주체	역할
행안부 (자치팀)	• 주민자치 교육 체계 구성 및 총괄 지원 – (연 2회)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교육(상반기 권역별 설명회 1회 포함), (연 1회) ① 읍·면·동 담당자 교육, ② 주민자치회장 교육 – (연 1회, 6개월)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 관련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 명단 정리·공유 * 민관 대상 다양한 주민자치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설명회, 특강, 사례방문, 워크숍, 주민자치학교, 아카데미 등)
시·도	• 시·도별 주민자치 교육 및 시군구 지원 – 연간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 (민) 시·도 주민자치 강사 교육 (관) 시·군·구 관리자·담당자 교육 및 시·군·구 교육 설계 지원 – 시·도 주민자치 지원기관 내 교육 운영 또는 교육 위탁
시·군·구	• 시·군·구별 주민자치 교육 및 읍·면·동 지원 – 연간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 (민)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관) 읍·면·동장 및 담당자 교육 – 시·군·구 주민자치 지원기관 내 교육 운영 또는 교육 위탁
읍·면·동	•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교육 – 연간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 위원 및 일반주민 등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 * 시·군·구와 협력·논의하여 읍·면·동별 민간 교육 통합 또는 분리 운영

* 필요시 교육과정별 교육 수요조사 실시

참고 2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필요성

-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행정과 민간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기획 및 통합 교육 부재

  ⇒ 자치분권·균형발전·주민자치·사회혁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교육 운영

  ⇒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문제해결 역량 향상 필요

'지역혁신 핵심인재 양성교육' 주요내용

- **(주제)** 자치분권·균형발전·주민자치·지방자치·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민·관 통합 역량 강화 및 정책 설계·실행
- **(기획·운영)** 4개 기관 - 시·군·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 전문 교육기관 위탁운영
- **(대상·선발)** 시·도, 시·군·구별 4명(공무원 2, 민간 2) 공동신청·선발

  - 참여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무원과 민간 인재 양성자 함께 선발

    ※ 지자체별 민관 총 4명이 되어야 신청 / '20년 21개팀 84명 신청

  - 공무원 : 시·도 5급 및 시·군·구 6급 이상 지자체별 핵심 인재 2명

    * 행정직 공무원 중 해당 직무 장기근속 예정자(임기제 또는 전문관 포함)

    **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의지가 있는 자

  - 민간 : 시·도, 시·군·구별 지역의 사회혁신 활동가 2명

    *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NGO, 시민사회 등 다양한 활동범위, 경력 보유자

    ** 해당 지역 및 관련 업무에서 네트워크가 넓은 대표, 임원, 고위관리자 등
- **(교육)** 4분기별 각 2박3일 교육 ※ 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 및 조정

  * 교육 장소는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분기별(4회) 진행

• **(과정)** 집체 교육 워크숍 및 지자체 선택 분야별 민관 합동 정책 설계·실행

- 신청 자치단체별 자치분권, 균형발전, 사회혁신, 지방자치, 주민자치, 민·관협치 등 지역 문제 및 과제 선 고민 후 신청
-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분야를 민·관이 공동계획, 공동생산을 통해 해결 노력,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역에 필요한 정책설계를 위한 전문적 지식 제공뿐만 아니라 설계된 정책이 실제 실천되도록 지원하는 양성과정 운영

• **(추진체계)**

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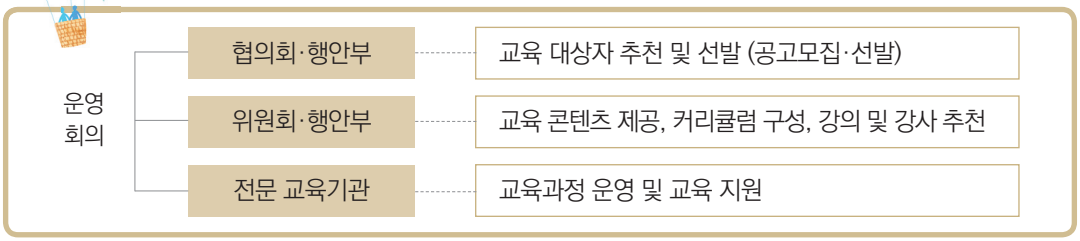

• **(인센티브)**

- 지자체별 계획 수립 및 해결 노력에 따른 포상

  * 4차 교육 시 경진대회 행사 포함

- 수료증 배부,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인정 등

향후계획

• 2021년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추진(3~11월)

과제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추진배경

- 최근 급격한 주민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심화방향 제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총괄적 지역혁신 필요 증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주민자치 회로의 재도약 필요

주요내용

- 주민자치 중심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관련 공모사업 진행
-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프로세스 고도화
  - (과제) ① 심화된 지역현황 조사 및 지역의제 조사 프로세스 진행 : 양질의 공론화 과정 운영, 고도화된 의제 도출
    ② 읍·면·동 비전 및 3개년 이상의 동 지역 발전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구축
  - (과제) ① 법인에 관한 주민 대상 교육 및 의견 수렴 과정 진행
    ② 법인 설립(신규) 또는 고도화(기설립지역)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컨설팅 내용) 지역조사(자원, 공공서비스, 사경생태계 등), 사업모델 등
    ③ 위·수탁 사업 발굴(지자체)

추진일정

- 주민자치 고도화 대상지 선정(2월)
- 합동워크숍 및 컨설팅 운영(3~11월)
- 공모사업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11월)

과제 4 중앙부처 주민참여 정책과의 연계 강화

추진배경

-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주민참여 기반 정책과의 연계 필요

주요내용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정책과의 연계

① 도시재생 예비사업 연계 지원(행안부 협력형 별도 선정)

- (내용) 도시재생뉴딜 사전사업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를 통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 개소당 0.5~2억원의 국비 지원(지자체 별도 매칭 50%)

** '18년 4개소, '19년 9개소, '20년 9개소, '21년 6개소 예정

② 도시재생 지역특화유형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운영

- (내용) 인구 감소 지역 내 공공생활서비스를 중심지와 주변지로 재구성하고, 주민참여 기반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

* '19년 2개소, '20년 1개소, '21년 2개소 예정

- 중앙부처 주민참여 기반 정책과의 연계 운영

- 각 부처 공모사업에 주민자치회 연계 운영 시 공모 선정 가점 부여

* (교육부) 미래형교육자치,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 타 부처 사업과의 지속적 연계 방안 마련

추진일정

- (예비사업) 공모('20.9월), 평가·선정('20.12월), 워크숍 및 예산교부('21.2월)
- (서비스집약형) 공모('21.6월), 평가('21.10월), 도시재생특위 선정('21.11월)
- (중앙부처 연계) 연계사업 발굴 및 협의(1~12월)

참고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개요**

검토 배경

-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한 지역 내 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을 연계하기 위해 국토부·행안부·복지부 간 MOU 체결('18.9월)
  - 도시재생·커뮤니티케어·주민자치 등 관련 정책들이 상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지역 내 특화모델 마련
- 인구감소지역의 중심지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적하고 주변지역과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콤팩트 도시재생 필요

모델 구상(안)

- 인구 감소지역의 중심지에 분산된 공공·생활 서비스 집중
-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지역 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공공·생활서비스 집적 및 서비스 제공(중심지, 뉴딜지역)
  - 인구 감소지역의 거점지역(중심지)을 설정하고, 해당 중심지에 행정서비스·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생활서비스 집약 제공
    - 주민센터 등 거점지역의 기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어울림센터* 등의 신축·리모델링 통해 서비스 제공

      * 행정, 일자리, 문화, 복지, 상업, 주거 등 공공·상업·주거 기능이 모두 포함된 복합앵커시설로 지역의 혁신거점 기능 수행
  - 수영장·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공공문화시설, 도서관과 같은 '지역거점 생활SOC*'도 함께 공급하여 거점 역할 수행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별표 2]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참조

• 연결 네트워크 체계 구축(중심지~주변지역, 지자체 자체계획)

- 중심지역에 집적된 공공서비스의 제공범위에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공급체계 마련
  • 대중교통 운행계획 수립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 연결 체계 수립
- 주변지역의 기존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초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마을단위 생활SOC*' 공급계획도 함께 마련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별표 2]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참조

• 지역(주변지역 포함) 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뉴딜사업 지역 내 주민협의체와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주민자치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 인구 감소지역의 여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마련
  • 시·군·구 행정사무 위탁, 읍·면·동 주민센터 기능개선 등 공공서비스 개편을 위한 계획 수립

공공생활서비스 집약 특화모델 예시

과제 5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추진배경

- 지역에서 다수 기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 증대
- 부처별 정책은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성과 한계
- 정부-지역 정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초 지자체 역량 미비

⇒ 지역의 부처 간 사업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정책 효과 제고 필요

주요내용

- 5부처 MOU* 기반 사업 연계로 시너시 효과가 큰 지역** 선정(5부처 합동)
  - 지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부처는 지원 가능 방안 적극 검토(상향식)

    * 자치·돌봄·재생·교육 등 부처 지역사업의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해 행안·교육·농식품·복지·국토부 등 5개 부처 간 협약 체결('20.3월)

    ** 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지역범위 내 생활권 (1~3개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공공생활서비스 공유 가능 범위)
- 부처 간 정책 연계사업 추진을 돕는 지원체계 구축
  -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주민 및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 보완
- 지역 맞춤형 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 지역 현황, 부처 정책, 주민 의견 등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
- 지역 이슈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운영

  * 중앙·지방정책협의체, 지역민·관합동협의체, 주민협의체 등
- 다부처 협력사업 추진 기반 확산
  - 사업추진 전 과정 매뉴얼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과 홍보 추진 등

추진일정

- 공고('20.12.~'21.1월) → 사업지 선정/합동워크숍(2월) → 사업추진(~12월) → 성과 홍보(12월)

▶ **(예산)**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총 10억원 : 5개소×2억원(국비 1, 지방비 1)

주민자치 분야

Ⅰ. 주민자치 분야 개요

Ⅱ. 세부 추진 요령

Ⅲ. 지원 정책

Ⅰ. 주민자치 분야 개요

추진목적

- 읍·면·동 지역*에서의 행정과 지역사회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력 향상

  *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문제해결에 주민이 주체로서 참여가 가능한 단위

-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 핵심수단* 설계** 및 제도화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대표성 확보) → 자치계획 수립(공론장 마련) → 주민총회 진행(공공성 확보) → 다양한 이행수단 마련(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상당액 등)

주체별 역할

주체	주요역할
행정안전부 (추진단)	• 주민자치사업 설계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 지자체 컨설팅 및 교육 기획, 홍보 지원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주민참여형사업 각 부처 사업과 연계 기획
시·도	•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시·군·구 운영 지원 • 시·도 단위 전문지원기관 운영 • 사업추진 현황 및 통계, 사례 관리 • 주민자치 전문 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군·구	•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읍·면·동 운영 지원 • 시·군·구 단위 전문지원기관 운영 • 주민자치회 행·재정 지원 * 사무국 운영(인력, 사무공간 등) 및 자치계획 예산편성, 사업시행 지원 • 주민자치회 관련 민·관 역량강화 지원(워크숍, 교육 기획·운영 등) • 주민설명회 등 홍보 지원
읍·면·동	• 주민자치 주요사업(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지원 • 자치계획 실행 지원 • 공유공간(마을활력소 등) 조성 지원 • 주민자치회 위탁·협의사무 지원 • 주민자치 전담지원 공무원 배정(1명/ 전문직위 또는 임기제)

참고 1-1 서울특별시 총괄추진체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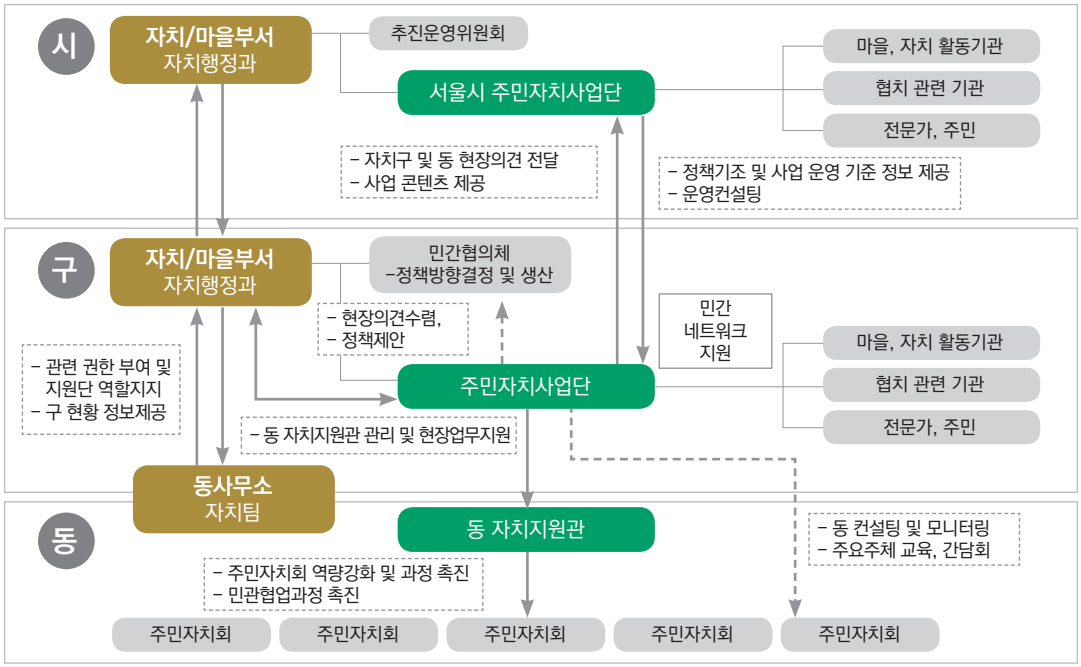

주체	행정조직	지원조직
서울시	• 서울형 주민자치사업 계획 수립 •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및 동 주민자치회 사업비) • 유관부서(자치행정과, 마을과, 시민참여예산과)와 협의 • 자치구 행정과 소통 지원	•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정책 협의 •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콘텐츠 생산 및 공유 (매뉴얼 및 교육자료 등) • 자치구사업단 지원(교육 및 정례회의 등) • 자치구 현장 지원(간담회 및 모니터링) •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연구 • 사례 기록
자치구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 계획 수립 • 유관부서 협의(자치 및 마을부서) •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 자치계획수립 및 주민총회 지원 • 참여예산 사업 선정 지원 • 행정사무 위수탁 지원	• 자치구사업계획 협의(정책제안) • 동자치지원관 업무 지원 • 사업실행단계별 지침 마련(동현장지원) • 구 단위 주민자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공론화 활동 • 구 단위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 주민자치 주요사업(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공유공간(마을활력소 등) 조성 지원 • 주민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 위탁·협의사무 지원	• 주민자치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기획 및 현장 지원 •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및 운영 촉진 •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업무 기획 • 주민자치활성화·지속화 방안 연구 •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

읍·면·동 단위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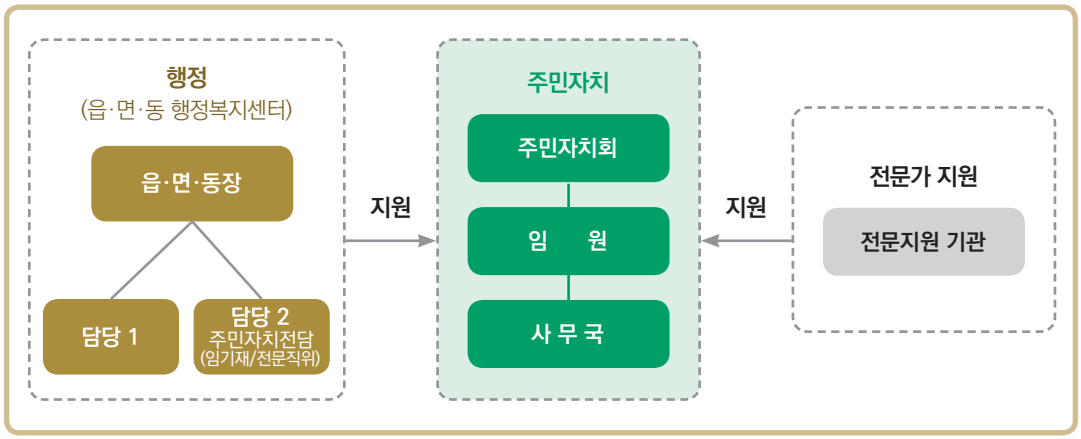

• 지원 주체 역할

- **(읍·면·동장)** 읍·면·동 현장의 주민자치 혁신을 지원하는 총괄 리더
  - 비전 제시, 사업 전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지역주민, 자생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의 소통(네트워크 구축 등) 및 협업 주도 등
- **(담당 공무원 1 : 기존 인력)** 주민자치 업무 수행 및 주민자치회 전환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지원계획 수립
  -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 업무 수행(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생단체 관리 등)
  -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동 관련 행정 지원

    * 위원 모집, 교육, 위원 선정, 후보자명부 관리, 주민자치회 인수인계 등 행정지원

    **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 위·수탁 사무 협의, 참여예산 연계 등 지원

    *** 각종 주민참여형 정부 정책 연계 및 정보 공유 등
- **(담당 공무원 2 : 신규 인력)**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지원 전담, 임기제 또는 전문직위 공무원
  - 주민자치회 구성 등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주요업무)

    * 위원 모집, 교육, 선정, 후보자명부 관리, 주민자치위원회 인수인계, 임원 및 간사 선출, 분과원 구성, 운영내규 작성 등

- 주민자치 관련 제도 개선 지원
  *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제 등
- 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 주민총회 개최 지원
- 주민참여 정책 공모사업 연계
- 행정 위·수탁 사무 발굴·협의 등

- **(전문가)** 민간전문기관*에서 주민자치회 총괄 자문 및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실행 지원

  * 서울, 대전, 인천 : 민간보조 사업형태로 한시적으로 운영(주민자치지원 조직)

- 공무원, 주민 대상 주민자치 교육
- 기본 및 심화 교육, 대규모 회의 및 워크숍 기획·운영
- 읍·면·동에서 필요한 시·군·구, 시·도 전문가 자원 연계
  *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운영, 갈등관리 등에 전문가 자원 연계
- 민-관, 민-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촉진
  * 행정-주민 간 동등한 파트너십 체계 구축, 지역사회 주민모임 대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참고 1-2 주민자치 전담 인력 운영(담당공무원 2: 신규인력)

취지 및 개요

- **(취지)** 주민자치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정책 추진, 現 정부의 중점 정책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7~'22년 1만 9천명(복지 1만 2천, 간호 3.5천, 자치 3.5천)

- **(개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 구축과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전담 인력 세부 업무

※ 「'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관련, 국가시책 사업별 지침」(행정안전부. 2019. 12.) 참조

- **주민자치회 구성 등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주요업무)

  * 위원 모집, 교육, 선정, 후보자명부 관리, 주민자치위원회 인수인계, 임원 및 간사 선출, 분과원 구성, 운영내규 작성 등

- 주민자치 관련 제도 개선 지원

  *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제 등

- 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 주민총회 개최 지원, 읍·면·동 협의 업무 지원
- 주민참여 정책공모 사업 연계
- 시설관리 운영 등 위·수탁 사무 발굴·협의 등

자치단체 역할

- **(배치)** 주민자치회 구축·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 주민자치 전문가가 채용되도록 추진(임기제 또는 전문직위 일반직)
    ☞ 초기 주민자치회 구축·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기제 채용 고려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및 인력 사항을 조례에 반영
- **(교육)** 주민자치 전담인력 대상 정기·수시 교육 시행

사례 : 전담직원 임기제 채용

구분	당진시	화성시
임용 직급	본청 :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읍·면·동 : 지방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채용 인원	15명 ※ '19년 8명, '20년 7명	11명
근무 기간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이내에서 연장	1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이내에서 연장
근무 부서	공동체새마을과 및 각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및 현장 지원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마을계획 및 주민총회 등 운영 - 읍·면·동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리통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 업무 기획 - 주민자치 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 주민자치회 회계 - 공동체 활동 지원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관련분야 :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평생교육, 지역복지(커뮤니티 복지 등)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공동체조직(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등) 활동 경력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Ⅱ. 세부 추진 요령

1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핵심주체로서 주민자치 대표기구는 지방분권법의 「주민자치회」를 원칙으로 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 본 '세부추진요령'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20.4.22.)에 근거하며, 세부운영은 해당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민자치 업무흐름도(구축·안정:2년)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1. 준비	① 사전준비	•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공직자 직무교육, 행·재정지원 계획 수립, 지방의회 및 직능단체 등 협의	4월
	② 자치법규 정비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등 제·개정	5월
2. 구성	③ 위원 모집	•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	6~7월
	④ 신청자 교육	•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8월
	⑤ 위원 선정	• 기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9월
3.운영	⑥ 자치규약 제정	• 운영내규 마련 및 임원진 선출	10월
	⑦ 자치계획 수립	• 자치계획 수립·운영에 참여할 주민 모집, 워크숍, 지역자원 조사 등 • 주민들이 참여하는 분과 구성, 마을의제 발굴, 발전계획 등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주민자치 정책정보 제공	11~4월
	⑧ 주민총회	• 자치계획 공론화(주민총회, 안건 사전·현장 투표 등)	5월
4. 협의	⑨ 행정 협의	• 자치계획의 세부사업별 시기·규모·방법 등 세부 실행방안 숙의 및 확정(자치회, 시·군·구)	6월
	⑩ 예산 확보	• 참여예산위 제안 및 의회 의결 등 필요절차 이행	6~12월
5. 시행	⑪ 사업 시행	• 보조사업(주민자치회), 공모사업, 행정발주, 민간위탁 등 시행	1~11월
	⑫ 환류	• 사업성과 등 평가 주민총회에 보고	12월

주민참여가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

- 주민 스스로가 자치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주민자치 구축·실행 단계에서 지역사회에 새롭게 관심갖는 주민을 찾고 함께하는 혁신적 홍보방법을 강구 하는 것이 핵심
- 2회 이상 주민총회 참여시 주민자치 추진 활동 경험 축적 가능

1. 준비

- 공직자 직무교육 시행
  - 시·군·구 과장급 이상, 읍·면·동장,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취지 및 진행과정, 홍보사항, 협조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 주민·지역단체·조직* 간 사회적 합의 및 지방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 이행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모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협의회 등

사례 : 주민자치회 구축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해산

- 주민자치위원회 마무리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하지 않은 기존 위원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시함

- 행·재정지원 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읍·면·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인력, 사무공간 등), 민간전문지원기관운영 등 지원사항 검토
- 자치법규 정비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
    -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시·군·구 여건에 따라 제정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9.8.23., 자치분권제도과-2666호)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 주민참여예산, 특별회계, 이·통장 등 관련 조례에 주민자치회 관련사항 포함

사례 : 순천시 주민자치 정책 민관 합동 기획 및 심의 기구

• 추진 배경
  –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에 앞서 다양한 활동가들이 주민자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협력체계) 민간 활동가와 행정이 함께하는 주민자치 관련 상시 논의체계 구성 및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 추진

• 운영 개요
  – 기간 : 2020.5. ~ 12.31.
  – 구성 : 35명(행정·주민자치협의체·민간 전문가 및 활동가)
  – 내용 : 민관 합동 워크숍, 주민자치 관련 시책 논의 등

  · 행정 : 5개 부서* 및 읍·면·동 협업
    * 총무과(인력 및 조직)·자치혁신과(주민자치)·지역경제과(사회적경제)·사회복지과 + 여성가족과(복지)
  · 민간 : 주민자치협의체 + 민간 전문가 및 활동가 + 시민단체(순천YMCA)

• 주요 운영 현황

구분	일자	내 용
1차	5.12.(화)	주민자치 정부 추진방향 및 순천시 주민자치회 확대시책 공유
2차	5.26.(화)	주민자치회 제도화 방향에 대한 이해
3차	6.9.(화)	순천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모둠 토의
4차	6.30.(화)	주민세 환원 실행계획 논의
5차	7.28.(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협업 방안
6차	9.28.(월)	주민자치회 재정적 독립에 대한 논의
7차	11.24.(화)	주민자치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 향후 계획
  – 대학생 명예주민자치위원, 청년 공동체 등 참여계층을 확대하여 운영 예정

합동 워크숍 모습

영상회의 활용 추진

주민자치회 조례개정안 논의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 의회와의 토론회

사례 : 김포시 조례 제정 민관 통합 준비 과정

- 2019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특별안건 제출
  - 참석자 : 37개 회원 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 등
  - 안　건 :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공동 협력
    - 위탁업무 추진 및 재정 집행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 보급
    -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교육 컨텐츠 제작·지원 등
- 김포시자치분권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 간 공동 논의(4회)
  -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논의('19.4~10월)
-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간담회 개최
  - 일　시 : (1차) '19.9.3., (2차) '19.11.15.
  - 참석자 : (1차) 읍·면·동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 (2차) 주민자치위원장
  - 내　용
    -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안내 및 자치회 전환 관련 지원·협조사항 공유
    -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가이드라인 및 운영세칙(안) 관련 논의
- 주민자치협의회(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회의 정례화
  - 참석자 : 시장, 소관부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등(월 1회)
  - 내　용 :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현안 사안 논의, 추진사업 정보 공유 및 자치센터별 협업 추진

사례 : 해남군 민·관·의회가 함께한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 활동

- 추진 기간 : 2019.10.~
- 추진 주체 : 해남군,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
  - 행정 12명(관련 팀장), 군의원 2명(총무위원회), 민간 6명(시민단체 등)
- 추진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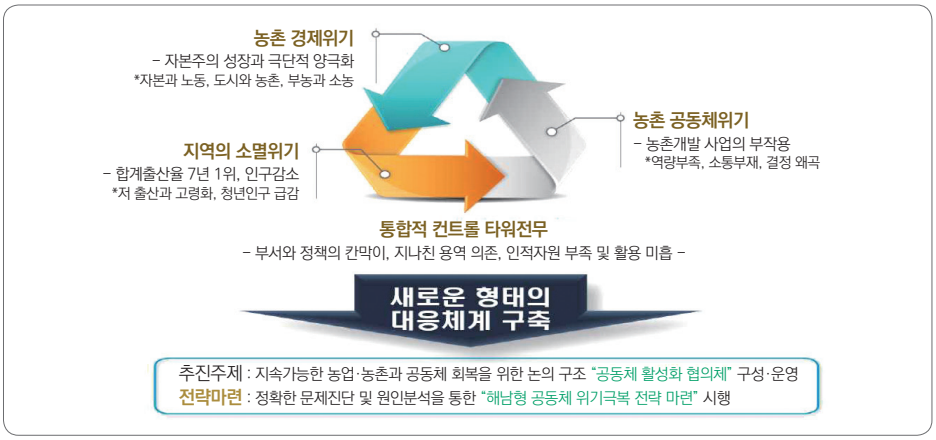

※ 행정(해남군지방분권추진위원회)과 의회(지방분권연구회)가 공동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필요성” 제기

- 추진과정 및 내용

① 계획수립: 자치와 공동체 기반한 “농촌 활성화 기본방향”
- (1단계) 공론화 단계(2019.11.)
- (2단계) 해남형 농촌 활성화 기본방향 수립 단계(2020.4.)
- (3단계) 조직 및 제도 등 시스템 정비 단계(2020.7.)
- (4단계) 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평가·환류 단계(2020.7.~)

② 해결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의회 협의체 구성 및 활동
- (공론화 단계) 군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2회/7강) 및 포럼(1회)
- (협의체 구성) 20명(주민자치와 공동체 관련자)
- (협의체 활동) 매주 1회 운영(공동학습 및 토론, 분과활동, 전문가 토론)

③ 주민자치에 기반한 공동체 활성화 기틀 마련
- (조직개편) 혁신공동체과 신설(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농산어촌)
- (중간조직) 통합형 중간지원 조직 구성 중(전남도 공모사업 최종 선정)
- (조례제정) 군민배심원제 조례(5월), 주민자치회(11월), 교육공동체 조례(11월)
- (통합정책) 통합 교육 및 자원조사 등 통합적 정책 추진
- (통합성장)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양적·질적 성장 기반 구축

2. 구성

주민자치회 구성

- **(명칭)** ○○읍·면·동 주민자치회
- **(주요 기능)**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기구

[주민자치회의 역할 – 표준조례 제5조(기능)]

- (협의업무)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수탁업무)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구성)** 주민의 자발성에 기반한 기구로서 구성 다양성(성별, 세대 등)과 민주적 선정과정을 통해 구성된 조직

* 본　회 : 20~50명으로 여건에 맞게 자율 구성

** 분과회 : 지역 현안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위해 운영규약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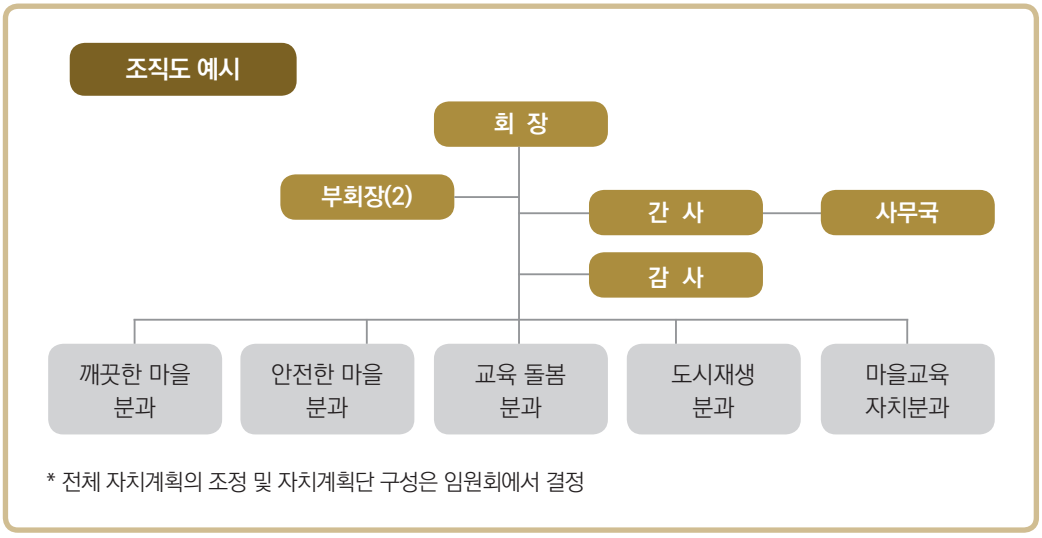

* 전체 자치계획의 조정 및 자치계획단 구성은 임원회에서 결정

사례 : 주민자치회 조직도

※ 지역 특색에 맞는 조직 구성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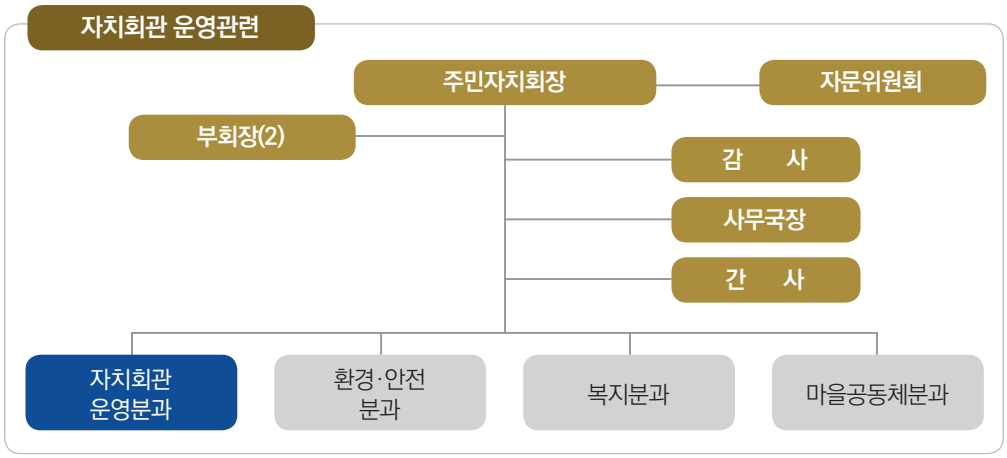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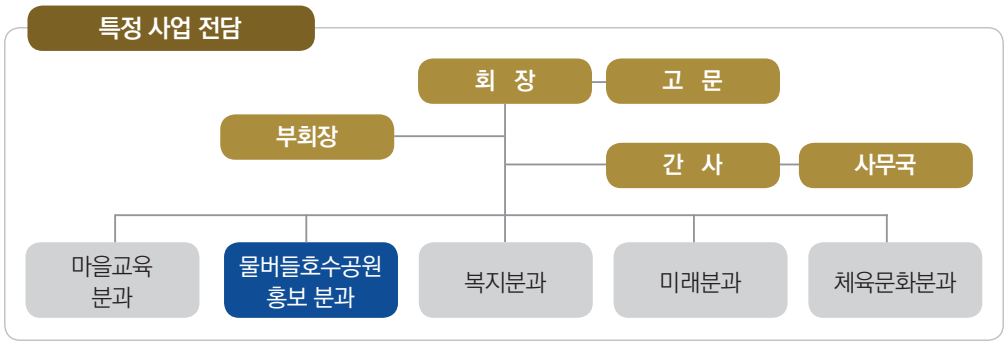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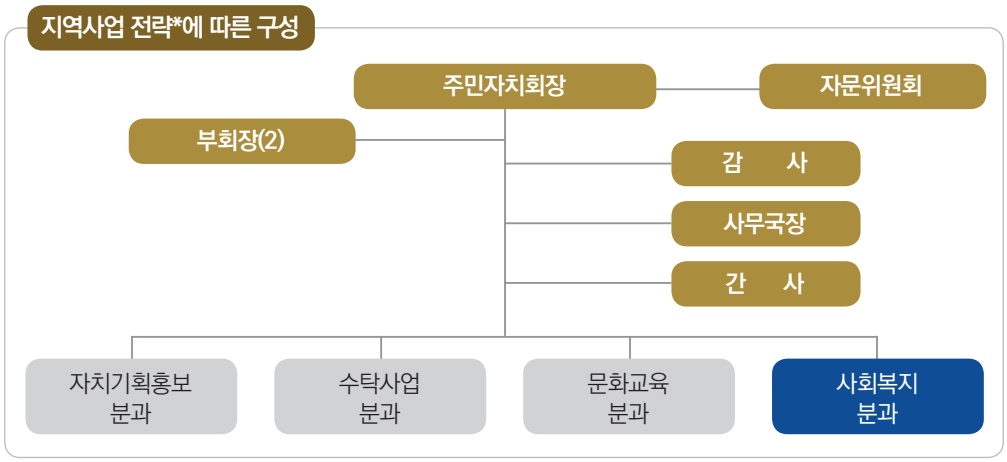

* 저출산, 고령화 지역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분과 특별 구성

사례 : 인천 서구 도시재생 연계 주민자치회 구조

• 추진 배경
- 마을 활동에 중복 참여하는 주민, 원활하지 못한 정보 전달 및 공유, 부서 간 업무 혼재 및 중복
- 가시적인 성과주의 행정문화의 문제점 인식
- 실질적 주민주도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진행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 확인
- 주민자치회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 및 협력 제안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와 도시재생 연계모델 수립
- 시범동 주민자치회 재생 관련 분과 별도 구성
- 도시재생사업 준공에 따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주체 교육 및 주민자치회 연계를 위한 워크숍 (2020.11.)
-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 교육 진행(2020.12.)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연계 모형 및 주민자치회의 플랫폼 기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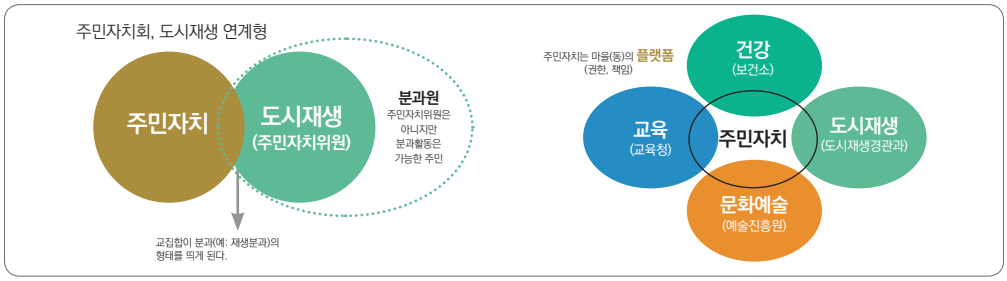

• 주민자치회 조직도

〈신현원창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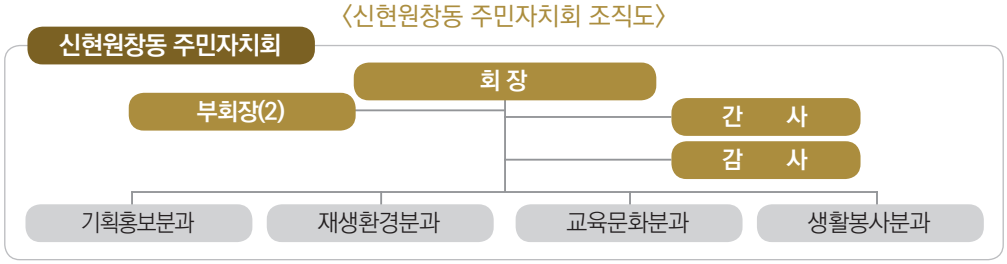

〈가좌4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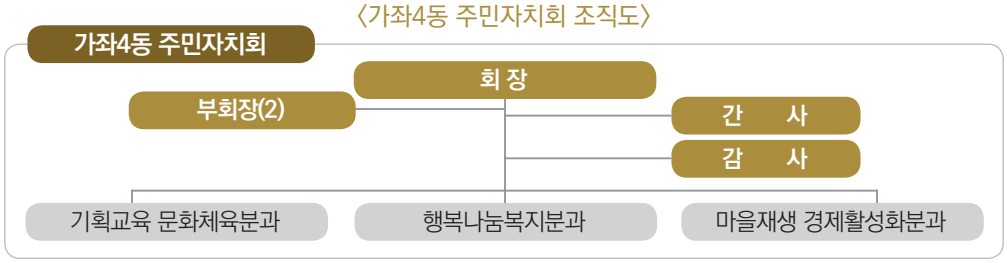

사례 : 곡성군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구조

- 주요 내용
  - 마을자치분과, 나눔분과, 문화분과를 구성하고 나눔분과는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겸함
  - 각 기관사회단체협의회와 이장단을 주민자치회 협력단으로 하여 단체들 간의 협력체계 마련
- 조직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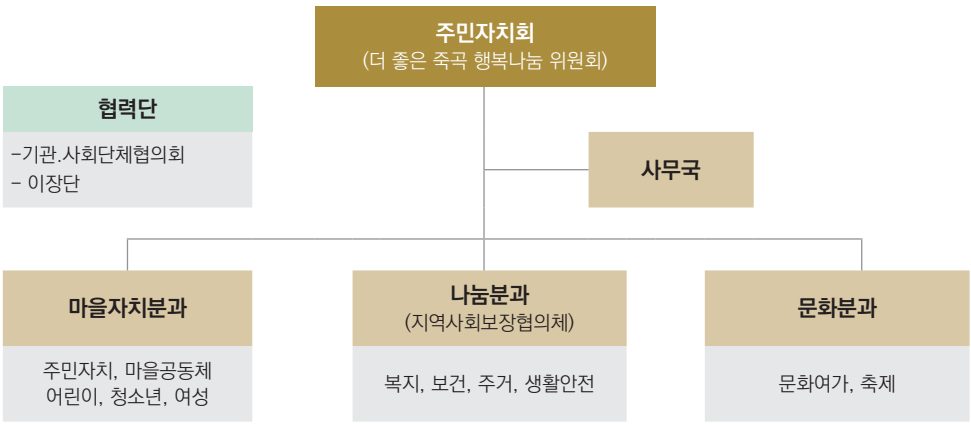

사례 : 마을교육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연계 구조

【경기도 시흥시】

- 주요 내용
  - (참여기구)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회 연계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참여기구 확대
  -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을 통한 시흥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조직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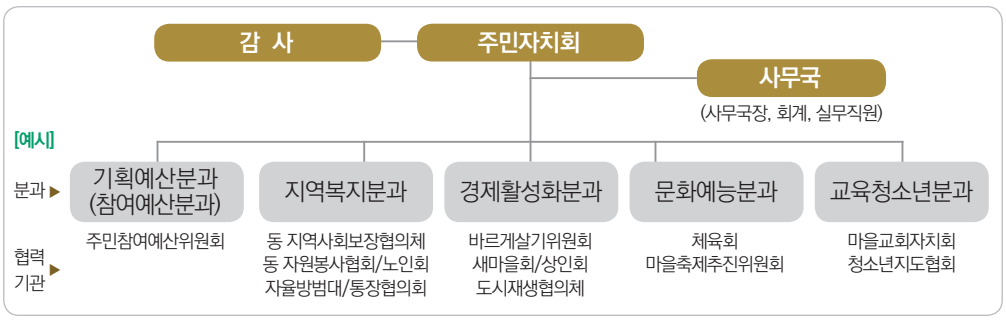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계양구】

• 마을교육분과 구성 현황(2개동)

구분	위원 수	분과현황		구분	위원 수	분과현황	
작전2동	48	48		계양3동	30	29(회장 제외)	
		교육문화	13			마을배움터	9
		마을발전	10			마을환경	10
		복지건강	12			마을(공간소통)	10
		주민자치	13				

• 동 단위 거버넌스(권역별) 네트워크 구성(안)

필요성

-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지역 중심 교육으로 전환
- 지역과 마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마을 중심 교육 실시
- 마을, 학교,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운영방안

- 동 단위 거버넌스 구성(12개동) 후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 효성권역(2), 계산권역(4), 작전권역(3), 계양권역(3)
- 권역별 네트워크 정기적 모임 운영(월 1회)
  - 주민자치회, 학교,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등 교육 주체의 정기적인 모임으로 지역교육 거버넌스 기반 마련
- 동 단위 교육력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지원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시 학교교육 평생교육 마을강사 연계)
- 지역과 학교 협력체계 기반 마련
  - 1동 1교 하모니 사업 추진
  -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 토크(권역별 실시)

※ 학교, 주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필요성 확산 계기 마련

참고 2-1 주민자치회 마을교육분과 구성 사례(충남)

충남 서천 마산면 주민자치회

- 주요 내용
  - 2017.11월 자치회 설립 : (계획) 물버들 마을축제 → (코로나) 문해교실 운영으로 대체
  - 마을교육공동체(마을-학교-지역아동센터) 세대 통합과 화합의 장
  - 학부모들이 직접 방과후 학습 지도(우주과학, 목공, 의사소통, 미디어, 보드게임 등)
  - 충청남도 동네자치 한마당 발표(대상 수상)
- 조직 체계

마을교육분과	• 물버들 마을학교 협동조합 • 문해교실 지원 • 마을학교사업
물버들호수공원홍보분과	• 마산면 소식지 발행 총 (6권) • 마산면 골목탓 제작
보건복지분과	• 여성농업인 힐링캠프 • 오늘은 내가 목수, 제빵사 •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
청년농업미래분과	• 블루베리 공동 육묘 사업 • 청년 농업인 아카데미 사업
체육문화분과	• 마산 면민 체사대회 • 마산면 체육대회
평생학습환경분과(신설)	• 우리 마을 쓰레기를 부탁해 • 마을환경매니저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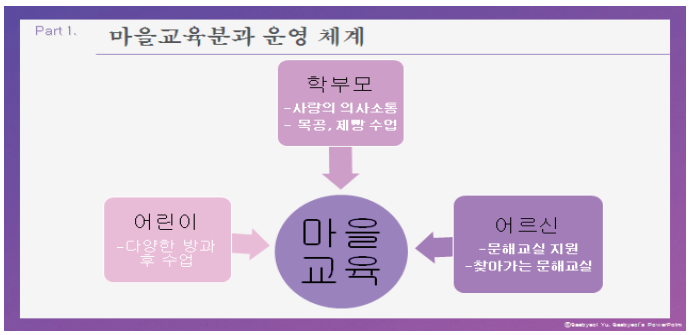

충남 당진 신평면 주민자치회

- 주요 내용
  - 2020.6월 시작(그 이전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준비)
  - 주민자치 주도 교양 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 주부를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 주민자치 실행법인 '꿈꾸는 나무' 설립 운영

- 송악읍-신평면 오봉제 문화공원 만들기 사업 추진
- 청소년위원회 '별하' 운영
- 2020년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상 수상(코로나 상황, 우리동넷 온라인 주민총회로 소통 구현)

※ 당진3동 주민자치회 더불어 행복한 원당공원 사업 : 최우수상 수상

• 조직 체계

- 주민자치회 내 '문화교육분과' 구성, 타 분과와 협업하여 사업 추진

주민자치 위원 선정

•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위원 선정 절차

공개모집 ▶ 주민자치 교육이수 ▶ 공개추첨 ▶ 위원 위촉

필요시 사업장·단체 등 직능단체*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일정비율을 정해 공개모집·추첨

* 이·통장, 새마을회, 자율방범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자유총연맹 등

☞ 다만, 단체보다 개인 공개모집 추첨 비율이 우선!!

• **(위원 선정 사무관리)**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모집, 공개 추첨, 후보자 관리 등 사무를 공정·투명하게 수행

* 다만, 최초 연도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과정을 읍·면·동장이 주관할 수 있음

• **(자격)**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또는 주소를 둔 사업장·단체 근무자

- 다만, 필요에 따라 연령대 조정 가능

* 표준조례안 제7조(위원의 자격)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자격 연령대 조정 가능, 연령대를 하향할 경우 단서 조항 수정 필요

※ (연령자격) 세종시-16세/ 금천구-위원 자격 및 총회 참석 연령 제한 없음/ 당진시-주민총회 참석자 15세/ 화성시-15세(재외동포 및 거주 외국인 포함) 등

• **(모집)**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기존 관계를 벗어나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일선 공무원 및 주민자치회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며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사례 : 동 홍보

- 지역 주민 대상 홍보 사례
  - **(사례 1)** 동자치지원관(민간전문가), 자치담당(공무원), 마을사업전문가(전담공무원)가 사업장이나 단체를 방문하고, 통장과 함께 통별로 호별 방문을 진행
  - **(사례 2)** 주민자치위원들 및 커뮤니티공간 주민들이 직접 홍보에 참여, 새벽에 종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 홍보 진행
- 지역 위치 기관 소속 단체 대상 홍보 사례
  - **(사례 3)**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장에서 주민자치회위원 모집 홍보
  - **(사례 4)** 마을버스에 광고 기사 게재
- 홍보 전담인력 채용 사례
  - **(사례 5)** 동자치지원관 등이 없는 지역, 시간제 인력 고용
    - 해운대구 반송2동(찾아가는 현장방문 설명 및 홍보 / 서류전형 및 면접)

근로 조건	모집분야	인원	활동업무
• 활동 기간 : 9월~11월 • 활동 횟수 : 13회 • 활동 수당(활동보상금) : 1회 50,000원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홍보 및 신규위원 모집 홍보	4명	• 반송2동 내 주민 모임 전수 조사 • 반송2동 내 각종 단체 및 소모임을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홍보 • 반송2동 관련 블로그, 카페, SNS 등 온라인 홍보

- **(교육)**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주민자치 개념, 주민자치회의 역할, 지역사회의 이해 등 주민자치회 업무수행 관련 교과과정으로 여건에 따라 외부 강사 등 활용
  - 기본교육 6시간 이상, 오전·오후·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 운영

사례 : 화성시 주민자치학교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대상 :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 운영장소 : 지역별 거점 장소
- 교육과정

구분	기본과정		심화과정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자치역량 강화교육	실무교육	현장탐방(실무교육연계)
대상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기본교육 이수자	실무교육 신청자
인원	200명	200명	40명	
시기	5월 ~ 9월	4월, 11월	9월, 10월	실무교육 3주차
과정 운영	- 총 6시간 * 2개 읍·면·동 매칭	- 총 3회 - 주 1회(2H) - 권역별 교육	- 총 4회 · 집합교육 3회 ⇒ 주 1회(2H) · 현장탐방 1회(4H) - 분임토의 등 참여형 교육	- 실무 교육과정 중 1회
교육 내용	- 주민자치의 이해 - 자치위원의 역할 - 주민자치 제도의 이해 - 주민자치 우수사례		- 마을 만들기 - 행사기획·관리 - 주민참여예산	- 우수기관 방문 및 사례 공유

- 주민자치 기본교육 야간 및 주말 과정 운영(필요시)
  - 목적 : 주간 또는 평일에 교육이수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
  - 운영 : 기본교육 운영 시 야간 또는 주말 과정을 함께 운영

    ※ 주민위원 위촉 시 교육이수(6시간 필수) 여부 확인

사례 : 고성군 주민참여형 교육

- 추진기간 : 2019. 8. 20.(화) ~ 12. 18.(수)
- 교육대상 : 주민자치회 위원 희망자(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충족 자)
- 교육인원 : 읍·면별 30명
- 홍보 및 모집 방법 : 이장 회의, 현수막, 홈페이지, SNS(고성군 공식 밴드) 등
- 교육방식 : 워크숍 방식을 통한 쌍방향 소통
- 교육내용

차시	기본교육		시간
	주제	내용	
1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 워크숍1 – 주민자치회 A부터 Z까지 ▸ 워크숍2 – 다양한 민주적 논의방식	3h
2	주민자치회 이해와 역할	▸ 워크숍3 – 자치위원회 역할 인식 ▸ 워크숍4 – 마을의제 찾기	3h
수료식 및 발표회 * 자율 참석		▸ 영상나눔 ▸ 1부 – 읍·면별 발표회 ▸ 2부 – 수료식	6h

- 교육진행 : 1일 6시간 진행

- **(선정)** 기본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선발하며, 단체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일정비율을 정해 모집·구성

- 지역이 특성에 맞는 성·연령·소수계층(청소년, 장애인, 1인가구, 다문화 가정 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
  ex) 특정성별은 총원의 60% 이하, 40대 이하 15% 등
- 예비후보로 총원의 20%를 선발
- 읍·면·동 소재 공공·직능 단체 30% 선발

사례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읍·면·동에서 공개모집, 후보자 추천 ▶ 시·군·구 단체장이 위촉

• 추첨에 의한 후보자 선정

1. '19년 서울시 강북구 5개동

- 추첨비율 : 개인공개추첨 70%, 지역단체추첨 30%
- 할당조건 : 특정성 60% 초과금지, 40대 이하 15% 이상

  할당결과 ⇒ 성별-여성 58%, 40대 이하 22%
- 신청현황 : 접수 555명→교육이수 430명(77%) → 선정 249명(45%)

  추첨 경쟁률 ⇒ 1.72 : 1

2. '20년 당진시 2개 면·동 추점으로 최종 선정

- 당진시 전 읍면동 위원 공개모집
- 추첨비율 : 개인 또는 단체소속 상관없음, 신청자 중 교육이수자 대상
- 할당조건 : (석문면)특정성 60% 이하, 기존 위원 1/3, (당진3동)기존 위원 1/3

  할당결과 : 여성 50%(최고 57%), 40대 이하 42%(최고 53%)

  추첨 경쟁률 ⇒ 1.25 : 1

3. '19년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 신청현황 : 접수 140명 → 교육이수 102명(72%) → 선정 50명(35%)
- 선정 조건 : 사전교육 6시간 이수자 추첨, 추첨자 중 기존 주민자치위원 우선 선정 후 개인 또는 단체 소속 60% 이내, 특정성 60% 이내

  할당결과 : 여성 58%, 40대 이하 40%

  추첨 경쟁률 ⇒ 2.04 : 1(교육이수자 대비 선정인원)

금천구 추첨 현장

사례 : 순천시 대학생 명예주민자치위원 제도 운영

• 대학생 명예 주민자치위원 참여 과정
  - 2017. 10. : 순천시 정책 제안, 순천대 및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논의
  - 2017. 11. :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진 및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부진 워크숍
  - 2017. 12. : 협약 체결(순천시-순천대학교-순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 사업 실적
  - 2018. 3. : 제1기 순천시 명예 주민자치위원 위촉(35명, 6개 동 배치 활동)
  - 2018. 3. ~ 12. : 주민자치 월례회의, 주민자치사업, 동네한바퀴 등 참여
  - 2019. 3. : 제2기 순천시 명예 주민자치위원 위촉(48명, 7개 동 배치 활동)
  - 2019. 3. ~ 12. : 주민자치 월례회의, 주민자치사업, 동네한바퀴 등 참여
  - 2019. 11. : 제2기 명예 주민자치위원 우수 활동사례 보고회 개최

• 2019년 제2기 명예주민자치위원 활동 개요
  - 추진일정

사전협의	대상 확정	위촉식	활동 및 관리	활동공유
운영방안 등	명예주민자치위원 및 읍·면·동 확정	시청 대회의실	월례회의 참석 주민자치사업 등	발표회 (중간, 최종)
2019. 2.	2019. 3.	2019. 3. 12.	2019. 3.~11.	2019. 6./11.

  - 위촉대상 : 48명(순천대학교 학생) ※ 7개 동 배치, 활동
  - 위촉기간 : 2019. 3. ~ 2020. 2월 (1년)
  - 위촉신분 : 무보수 명예직
  - 활동내용 : 동 주민자치 월례회의 참석 의견 청취, 주민자치 사업 참여 등
  - 시 지원사항
    · 월례회의 참석 실비보상 지원
    · 활동 공유 :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 개최, 연 1회 활동 공유회 추진
      ※ 우수 활동사례 선정, 시상금 지급
  - 정기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실습수업을 받은 것으로 간주(월 1회 2시간 정도 인정)
    ※ 기타 나머지 활동은 명예 회원이 학생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임

제1기 활동 결과 발표

제2기 위촉식

사례 : 금천구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이관 및 사례

- 사 업 명 :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및 동별 운영세칙 개정
- 추진 기간 : 2019. 5. ~ 2020. 2.
- 추진 주체 : 마을자치과 · 주민자치사업단 · 전동주민자치회
- 추진 배경 및 목적
  - 1기 운영과정 중 주민자치회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한 제도적 개선점 보완
  -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 및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제고
  - 동별 여건에 맞는 규칙(운영세칙)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독립성과 자주성 확보
- 추진 과정 및 내용
  - 조례 및 운영세칙 개정 주요 내용
    - 주민총회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등을 동별 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동자치회 간 협업의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 추첨 시 예비후보자 인원 제한 폐지
    - 위원선정 시 단체추천 비율 제한 완화, 단체 추천 경쟁률이 높아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 공익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 수익금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추진 과정
    - 의견수렴 및 조례 개정 사항 논의(2019.1.~9.)
    - 조례 심의 의뢰(2019.10.30.), 구의회 안건 상정(2019.11.11.), 조례 공포(2020.1.3.)
    - 개정 조례를 기반으로 동별 운영세칙 개정(2020.1.~3.)
-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 주민자치회의 재량권 확대로 자치회별 운영 방법 차별화
  - 총회 참여 연령 제한 완화, 주민자치 위원 선정 후보 인원수 폐지 등으로 일반 주민의 주민자치회 참여기회 확대
  - 동별 운영세칙 개정의 경험으로 자치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이해도 제고
  - 주민자치회의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념 확보

사례 : 남양주시 위원 선정(주민자치 배심원 선발)

- 추진 배경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과정의 제한적·폐쇄적인 구조 개선
  - 다양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한 위원 선정 방식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위원 선정 방법	위원선정위원회 심의·선발	• 위원선정위원회 심의 · 선발 (50% 이상) • 주민자치 배심원 (50% 이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발된 사람 중 공개추첨

※ 주민자치배심원 선발절차 : 주민자치회 및 위원 선발 홍보 → 배심원 선발(ARS 무작위 추출) → 주민자치교육 과정(6시간) 사전이수 → 공개 추첨

◈ 주민자치배심원 선발

– 기간/대상 : 2020. 6. 8.(월) ~ 6. 15.(월) / 읍·면·동 주민 등

– 선발주체 : 외부전문기관 용역

– 선발방식 : 무작위 표본추출(성별·연령·지역 고려하여 인원 배분)

– 선발규모 : 해당 읍·면·동 위촉 인원의 3~5배수 권장(자율적으로 결정)

– 추진 절차(요약)

구분	5월		6월		6월		6월말		7월
선정위원회 심의선발	선정위원회 구성	⇒	모집공고 및 접수	⇒	주민 자치교육	⇒	선정심의	⇒	위촉 · 공고
주민자치 배심원 선발	주민자치회 사전홍보	⇒	무작위 표본 추출	⇒		⇒	공개추첨	⇒	
비고	심사평가표 사전배점		15일		6시간		성별·연령·지역 등 균형 고려		최종선정 위촉공고

– 행정사항

구분	협조사항
평내동 진건읍	· 주민자치회 설치 추진 및 운영 ·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개정
기획예산과	1회 추경 예산 편성
홍보기획관	SNS 홍보(남양주톡톡 등), 문자메시지(내손의 남양주) 발송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팝업창 설치
교통계획과	교통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사전 홍보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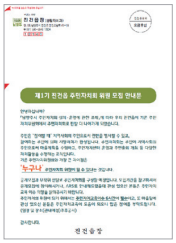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안내문

공개추첨

위촉식

사례 : 당진시 주민대상 현수막 등 홍보

- 추진 배경
  - 향후 2년간 당진형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역량있고, 활동성 높은 주민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모집하기 위해 효과적 홍보를 진행함
- 주요 내용
  - 주민자치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유선 안내 진행
    -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새마을회, 부녀회원 등 대상
  - 불특정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지속적 노출이 가능한 홍보 방안 시행

구분	방안
현수막 게첨	읍면동별 인구 구성 특성을 고려한 홍보 현수막 제작
전광판 송출	관내 전광판·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TV 송출용 이미지 제작 및 활용
SNS 활용	당진시 주민참여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넷'을 활용한 위원 모집 홍보
홍보포스터 배부	식당가, 영화관, 주민자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배부 및 부착
읍면동별 전단지	읍면동별 자체 전단지 제작 및 배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현수막

읍면동별 전단지

'우리동넷' 게시글

모집 홍보 포스터

전광판 송출 이미지

임원 선출, 운영규약 제정

-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원칙·절차, 임원, 세부기능(임무), 회의운영, 회계절차, 분과, 사업계획, 총회, 재정 등 세부사항 규정
- **(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모집절차, 공개추첨절차 등 세부사항
  * 위원 정수는 면적, 인구, 평균연령 등을 고려해 실정에 맞게 산정
- **(회의운영)** 정기회(월1회)와 임시회, 분과위 세부운영사항
- **(사무처리)** 여건에 따라 사무국 설치, 간사, 사무보조원 등 규정
- **(회계)** 자치단체의 위탁사업비·보조금(보조사업비)집행기준,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계약법, 보조금관리법, 지방 보조금관리조례 등
- **(주민 홍보)** 주민자치회의 운영사업 및 수행업무 등을 적극 홍보
  * 오프라인(게시판 등), 홈페이지·SNS 등 미디어, 주민 간담회 등

사례 : 운영규약 제정

「서울 성동구 마장동」: 도시형

- **(주민자치회 구성)** 30명 ~ 50명(신청자 60%, 추천받은 자 40%), 회장 1명 및 부회장 2명,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둘 수 있음
  - 대상 : 19세 이상의 마장동 거주자, 사업장이 있는 자, 학교·기관·단체의 장
  - 위원의 임기 : 2년, 연임 가능(자치회장은 1회만 가능)
- **(회의운영)** 정기회(월 1회), 주민총회(연 1회, 동 인구의 0.5% 이상 참여)
  - 안건은 재적위원의 1/2 출석, 출석위원의 1/2 찬성하는 경우 가결
- **(사무처리)** 사무국에서 자치회 사업기획, 예산, 회계, 주민총회 운영 등 수행
- **(재정)** 교부금, 수입금(자치회관 운영 중 수익), 찬조금, 회비(2만원), 특별회비(정기회의 시 의결로 징수), 회계 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

「충남 서천군 마산면」: 농촌형

- **(주민자치회 구성)** 30명 ~ 50명(신청자 70%, 추천받은 자 30%)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3명, 사무국장 1명(공개 선출), 고문(1명 이상, 전문 식견 또는 덕망 높은 자)
  - 자격 : 19세 이상의 마산면 거주자, 사업장이 있는 자
  - 위원의 임기 : 2년, 연임 가능(자치회장은 1회만 가능)
  - 회장이 마을 활동가 임명(1년 임기, 회의 시 의견 개진하나 의결권은 없음)
    ※ 자격 및 선정방법은 서천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따름
- **(회의 운영)** 정기회(월 1회)와 임시회(자치회장, 위원의 1/3 요청 시), 주민총회(연 1회)
  - 모든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야 함
  - 안건은 재적위원의 1/2 출석, 출석위원의 1/2 찬성하는 경우 가결
- **(사무처리)** 사무국장이 자치회 사업기획, 예산, 회계, 주민총회 운영 등 수행
- **(재정)** 교부금, 수입금, 찬조금, 회비(위원대상 징수), 특별회비로 충당

사례 : 서대문구 임원 선출(교육) 및 내규 수립

• 추진 배경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 공공성 있는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역할 합의 및 회의 문화 설계 지원
- 내규수립 및 임원선출 과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초기 합의 구조 마련
- 소통과 참여, 연대와 협력 기반의 주민자치회 공적 멤버십 형성 지원

• 추진 경과

2019년 2월	→	2월~10월	→	2020년6월	→	10월~12월
사전기획		2019 자치감수성		평가및기획		2020 자치감수성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협력		시범동 5개동 총 8회		평가워크숍(2회) 민주주의기술학교 협력		전동 주민자치회 2~3회차 실시 (총 34회 예정)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 멤버십 형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 시범동 5개동 주민자치회 맞춤형 과정 설계 및 실행(2019년 총 8회)
- 내규 수립 및 임원 선출 과정을 지원하는 2020 자치감수성 교육 추진 예정
-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회 초기 구성 및 민주적 운영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구 단위 기획 및 동별 실행 추진(11/9~12/19, 총 3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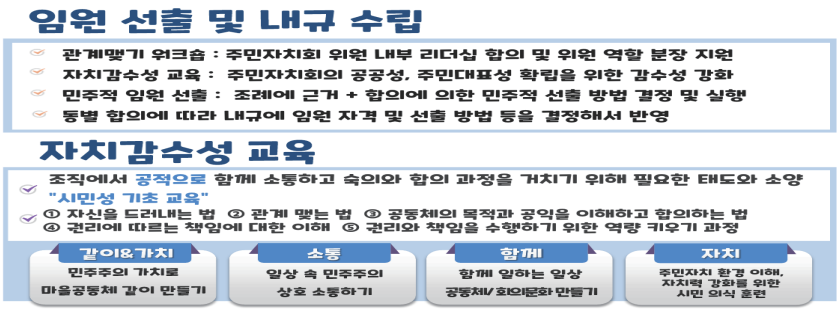

•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 주민자치회의 내부 민주적 소통 및 합의 초기 훈련 기회 제공
- 함께 일하는 공공성 있는 주민리더의 태도와 역량 강화
- 주민대표기구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임원 선출 문화 안착
- 예비자, 탈락자와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열린 참여와 소통 확보
- 다양한 주민과 경험,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운영방식 설계 지원

2019 자치감수성 (홍제1동)

2020 자치감수성 "소통" (북아현동)

2019 자치감수성 (남가좌1동)

2020 자치감수성 "함께" (신촌동)

사례 : 대덕구 임원 선출

- 사 업 명 : 민주적 절차에 다른 주민자치회 임원(회장·부회장) 선출과 새로운 리더십 개발
- 추진 기간 : 2019. 4.~현재
- 추진 주체 : 대덕구, 주민자치회 12개동(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협동조합 마을자치랩)
- 추진 배경 및 목적
  - 법적 근거에 의한 임원 선출 및 자치회 구성·운영
  -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출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논의와 결정
- 추진 과정
  -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온라인 설문투표, SNS 카카오톡 비밀투표 등/12개동 회장 12명, 부회장(남1, 여1) 24명 선출)
  - 임원(회장·부회장·감사) 선출 : 공개 모집 후 사전입후보 진행, 입후보자 정보를 위원들에게 발송, 임원 선출 시 입후보자의 정견발표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 간사 공개 채용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장이 선임하지 않고 공개모집 후 인사위원(자치회장, 자치지원관, 위원, 동장 등) 채용(2020.9.1.)
-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 주민자치회 간사의 공개채용에 대해 타 지역의 기관방문 및 자료 제공
  - 공정한 임원 선출로 자치회장의 리더십에 대해 존중,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결과로 안정적 운영

3.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계획 수립

• 진행 일정

자치계획 프로세스

10~12월	1월	2~4월	5월	6~12월	1~12월
주민모집 교육·워크숍 자원조사	의제발굴 분과구성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자치계획 결정	예산확보	실행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

☞ 보통 4~7월경 공모지원사업, 참여예산 반영 등 일정 고려하여 진행!!
주민 누구나 참여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분과단계에서의 주민 참여가 중요

• 자치계획단 구성-주민 모집 및 분과 구성

분과 구성 및 운영

주민모집 ▶ 교육·워크숍 및 지역자원 조사 ▶ 의제발굴 및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위 활동 및 본회 정례회 공유

* 분과 : 해당 분과 영역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위

☞ 자치계획은 분과를 중심으로 한 주민의 참여 활동이 총회개최까지 이어지는 것이 핵심으로 실정에 맞는 주민 모집 홍보계획이 중요!

- 자치계획단은 분과위원과 자치계획에 관심이 있고 자발적 활동 의사가 있는 주민으로 공개 모집 구성
- 기존에 구성된 분과를 포함하여 특정 의제의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분과 개설 가능
- 워크숍(인적·물적 자원조사 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여건에 맞는 분과 구성
- 자치계획 수립에 참여한 주민이 실행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

자치계획단 구성 예시

• 자치계획 구성 및 수립 과정

- 구성된 분과위원회 주도로 심층 마을자원 조사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자치계획을 수립, 본회의를 거쳐 총회 상정
- 당면 현안 문제 해결,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위탁사업, 공모사업 및 마을 비전 등

[자치계획의 구성]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 분과별 사업계획
-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자치계획 수립과정

- 자치계획은 분과 중심으로 수립한 분과별 계획을 구성하며 자치계획단 전체회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확정
- 민간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설계하여 행정업무 수탁 협의
- 수시로 지역 내 자생조직 및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 및 조정 이행

※ 예시 : 자치계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하여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을 자치계획단계에서 마련 후 총회에서 상정

사례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17. 11월 마을총회)

– 마을계획단을 구성, 주민주도로 다양한 의제 선정(16개 과제)

· 문화예술분과 4개, 교육안전분과 3개, 주거환경분과 4개, 동네복지 5개

– 단기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마을의 장기 발전 지향

〈 마을계획 발굴 의제 : 16개 과제 〉

- **(문화예술/4)** 노송동 천사예술단 만들기, 노송동천사가 내려앉은 이야기 지도와 천사기자단, 문화거점 공간 조성 및 얼굴 없는 천사 알리기, 천사축제 전주대표 지역축제 만들기
- **(교육안전/2)** 펫티켓 지키는 마을, 노송동 유료주차장
- **(경제분과/2)** 축제밥상, 울엄매 김장김치사업
- **(주거환경/2)** 특화거리조성(천사가 내려앉은 전봇대 디자인), 노송동 골목길 조성사업
- **(동네복지/6)** 경로당 복지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대문문턱낮추기사업, 우리동네 택배보관소, 장수사진(영정사진) 찍어주기, 어르신 보행안전을 위한 유모차 대여, 얼굴없는 천사 법인화 추진

[서울 광주 북구 양산동]

• 신생동('13.3.18. 신설)으로써의 운영인력 체계 및 자치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16.4월)

– 마을의 미래계획 도출의 기반이 되는 마을의 자원 조사 및 결과 공유

· 마을의 자원 조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결과 공유, 의견수렴 등

– 워크숍, 견학 등을 통해 마을 만들기의 의미와 방법 학습

* 마을자원 파악 ▶ 조사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의제 발굴 및 선정

〈 마을계획 발굴 의제 : 12개 과제 〉

- **(문화예술/6)** 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양산기적의 놀이터, 따순다방(카페), 따순 마을책방, 양산호수연꽃마을카페, 양산호수 연꽃마을축제, 따순마을놀이터·도서관
- **(교육안전/1)** 양산·건궁 119 안전센터
- **(경제분과/1)** KT&G 연초제조창 재상 프로젝트
- **(주거환경/2)** 따순마을 산책길, 따순마을 문화의 거리
- **(동네복지/2)** 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반상회·웃음강좌·밥상공동체

참고 2-2 자치계획 분과활동 사례

① 서울 도봉구 쌍문1동
우이천 가꾸기 분과 –
“제3회 우리 동네 우이천 그림그리기”

②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복지환경분과 – 반찬나눔봉사
“스마일 만남 스마일 맛남”

③ 울산 북구 농소3동
교육분과 –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④ 서울 강동구 천호3동
복지분과 – “닿아서 이웃 나눔 바자회”

참고 2-3 자치계획 주요 의제 사례

지역	자치계획 발굴 사례
연희동 (서울)	▪ 마을공방 예술 주민을 만나다. 굴다리 보행환경 개선, 연희마을사랑의 음악회, 사람읽다 마을 잇다 연희피플, 아티스트로 채운 연희, 연희동 밤길 밝히기, 2021년 의제개발을 위한 예산 승인
길동 (서울)	▪ 기리울 건강교실, 수강생작품전시발표회, 어르신안부살피기, 도농교류 활성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장학사업, 공고도서관, 처사대회, 경로잔치, 선사문화퍼레이드, 김장나누기, 일일찻집, 합동송년회
동대신3동 (부산 서구)	▪ 마을텃밭 가꾸기, 호호신문발간, 출산축하선물지원, 아이조아 공유센터, 봄봄행복키퍼, 모자이크봉사단, 시원한 여름나기 쿨박스 전달, 구덕골 호호마을 어울림축제, 찾아가는 빨래터
금호1동 (광주 서구)	▪ 호동이네 별밤캠프, 학교별 마을총회, 금호1동 주민총회&어울림한마당 축제, 마을살이 뒷담화, 호동이네열린소통방, 호동이네 마을뉴스기자단, 동네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 마을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남양읍 (경기 화성)	▪ 도로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상시 주민의견 수렴창구 마련, 민·관이 함께하는 납양읍 축제단 발족, 청소년 공간사용에 협력하는 민간업체 발굴, 재능나눔 주민네트워크 구축, 특색있는 남양 토요장터 만들기, 청소년이 가기 편한 자율공간 마련
동탄4동 (경기)	▪ 동화(化)선정, 특색 있는 마을 꾸미기, 아파트 단지 내 주민자치 프로그램 외부 공개, 한자 및 예절 교육 '청계학당' 운영, 남는 식자재를 필요한 이웃과 공유하는 신선박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축제, 소소퍼레이드 축제, 인문학콘서트, 소소콘서트
당진2동 (충남 당진)	▪ 독거팔순잔치, 대덕산에서 배우는 문화예절 학교, 경로당 소방교육 및 투척용 소화기 비치, 당진천 벚꽃길걷기, 당진천 가꾸기 사업, "배움을 나눔으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순회건강돌범교육, 생태교육 및 체험, 테마영화 상영, 당진고-탑동초 멘토링, 수변공원 야외 힐링 체조
덕연동 (전남 순천)	▪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덕연동 마을축제, 다시 시작하는 세대공감 주민자치대학, 우리동네 공감외상 프로그램 운영, 마을자치 멘토링 사업, 덕연동 테마마을 만들기, 부영초담장벽화 사업, 쓰레기 없는 청정도시 정원로드 조성,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연항골 개구쟁이 동내풀장 운영

사례 : 인천 연수구 자치계획 수립

• 자치계획 개요
  – 자치계획이란?
    ·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함
  – 대상 : 연수구 14개동 주민자치회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포함)
    ·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 자치계획 결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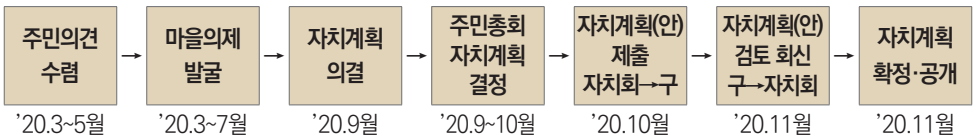

• 자치계획 검토 결과
≪ 옥련1동 ≫

연번	사업(의제)명		검토결과
1	2021년 주민자치회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 교육, 워크숍 계획,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실행 계획 등 → **적 정**
2	2021년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 분과회의 운영, 2020년 선정 참여예산 사업 추진, 마을의제 계획 수립 등 → **적 정**
3	2021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자매결연지 교류,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추진 등 → **적 정**
4	동 계획형 참여예산 사업	청룡공원 「사계절 숲속 음악 산책」	•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적 정**
5		『장수사진 찰칵!찰칵!』 어르신 장수 사진	• 대상자 선정 시, 소외계층 등 우선순위로 사업 추진 필요 → **적 정(사업 진행 시 보완)**
6	동 참여형 참여예산 사업	불법주정차 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검토부서 예산 산정 오류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에서 사업예산 증액 예정(3,000천원 → 30,000천원) → **수 정**
7		옥련동 청룡공원 야외 무대 및 관람석 설치	• 주민총회 투표 전 사업부서 검토 완료
8		청량산 등산로(둘레길) 야자매트 설치	
9		미끄럼 방지 점자블록 교체	
10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감시 카메라 설치	
11	동 협치형 참여예산 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양심화단설치』	• 인천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시 참여예산 총회 통과 사업
12		옥련1동 『달빛음악 축제』 개최	
13		축현초 정문 벽면 벽화그리기 『걷고 싶은 통학로 만들기』	

주민총회 개최

주민총회 프로세스

자치계획(안) 수립 (주민자치회, 자치계획단) ▶ 주민설명회 사전투표 현장투표 ▶ 자치계획 결정 (주민자치회) ▶ 행정기관과 협력

☞ 주민총회가 공론장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① 사전 마을축제 분위기 조성 등 홍보 ② 사전투표를 통한 참여율 제고

- **(기능)** 자치계획의 공론화를 통한 민주성 제고
- **(개최)**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사전투표 등 진행
- **(내용)** 분과별 제안설명 및 자유로운 공론을 통해 총회 의견 확정
  * 예) 주민자치회에서 상정한 자치계획의 우선순위 등
- **(후속조치)**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자치계획 추진을 위한 시·군·구청장, 동장 등 행정기관 협력
  * 필요 시 MOU 체결

사례 : 서울 금천구 시흥동 MOU 협약

'2020년 시흥○동 자치계획 추진을 위한 공동추진협약서'

시흥○동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고 결정한 2020년 자치계획을 금천구청과
주민들이 함께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 협력 지원할 것을 상호 협약합니다.

2020. 0. 00.

금천구청장 주민자치회장 시흥○동 동장

• **(공개)** 읍·면·동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사례 : 주민총회

[인천 연수구 송도2동]

- 만 14세 이상 참여, 마을축제와 함께 진행하여 참여율 높임
- 사전 주민참여 유도 활동 : 120인 원탁 숙의토론회, 정책마켓(정책을 마켓처럼 전시하고 투자)
- 투표방법 다양화
  - 찾아가는 방문투표 : 포스코교 등 학교와 상가 등을 방문 후 투표 진행
  - 사전 현장 투표 : 24개소 아파트와 행정복지센터 설치
  - 모바일 투표 : 모빌(아파트 어플) 활용, 전자 사전투표 실시
- 투표결과 : 사전투표 2,888명, 모바일투표 994명, 현장투표 601명
  총 4,483명(29,678명 유권자 중 15.1% 투표 참여)
- 주요 선정 사업

사업유형	사업명
동참여형 : 6건	당신의 손에 든 담배는 아이의 눈높이에 있습니다, 송도 자동집하시설(1-1), 주변환경 개선, 송도 자동집하시설(1-1), 주변환경 개선 송도 할인마트 앞 차선분리대 설치, 스마트폰 스테이션으로 누구나 free 하게 365일 민원서류 OK 공공식수대로 생수병 아웃(Out)
동계획형 : 3건	송도 낮두꺼비 밤두꺼비 장마당 3R로, 쓰레기 발생 ZERO 동네 만들기, 어울림 한마당

[금천구 독산3동]

- 일시 : 2019.5.11.(토) 16:00 ~ 18:00 (사전행사 15:30 ~ 16:00)
- 대상 : 15세 이상 독산3동 주민 ※ 개최 정족수 : 124명(인구수 24,781명의 0.5%)
- 사전 투표 : 2019.4.25. ~5.8.(반영률 오프라인 100%, 온라인 50%)
- 참석 인원 : 총 940명
  - 총회 당일 인원 : 250명(투표인원 : 169명)
  - 사전투표 인원 : 총 690명(온라인 11명, 오프라인 679명)
- 투표결과
  - 2019년 주민세환원사업 : 49,000천원

사업명	예산액 (단위:천원)	사전투표		총회당일	투표결과	선정여부
		온라인	오프라인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49,000	8	489	119	612	선정
재활용 정거장 환경개선	49,000	3	190	50	241.5	

- 2020년 주민세환원사업 : 49,000천원

사업명	예산액 (단위:천원)	사전투표		총회당일	투표결과	선정여부
		온라인	오프라인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49,000	5	199	48	249.5	
재활용 정거장 환경개선	49,000	2	175	55	231	
안전한 보행길 만들기	49,000	4	305	65	372	선정

- 2020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 20,000천원

사업명	예산액 (단위:천원)	사전투표		총회당일	투표결과	선정여부
		온라인	오프라인			
독산극장	5,000	2	218	24	243	선정
산사랑 물사랑축제	10,000	3	245	52	298.5	선정
주민맞춤형 교육	5,000	6	132	57	192	선정
다문화와 함께어울림	5,000	0	84	32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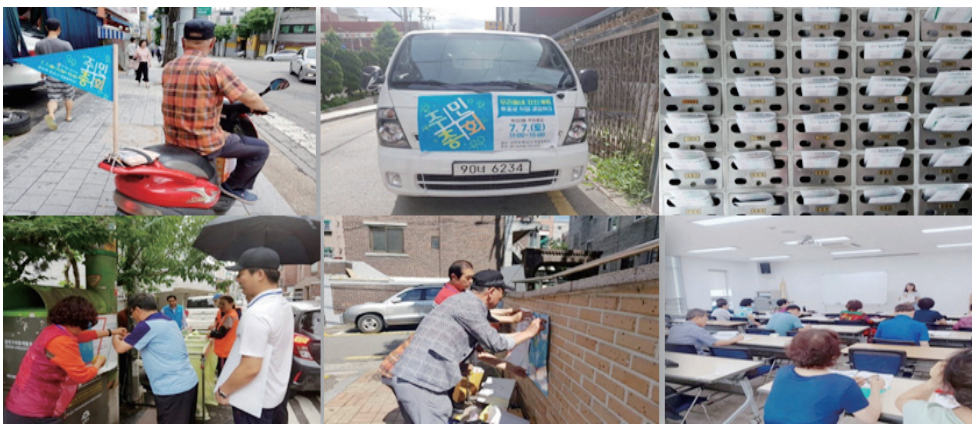

〈주민총회 홍보 현장〉

- 독산3동 골목길 6개 지점 현수막 게시
- 전단지 4천장 인쇄 및 배포, 포스터 200장 제작 및 배포
- 찾아가는 주민총회 홍보 실시
- 차량용 홍보 현수막 및 오토바이용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게시

〈주민총회 현장〉

- 원탁토의형, 투표형, 부스형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 찾아가는 총회 진행(고등학교, 전철역 앞 등)

사례 : 주민중심 주민총회 운영을 위한 의전

- 내빈 모두 한 번에 앞에 나와서 사회자가 직책과 이름만 소개
- 구청장, 의원 등 소개된 내빈은 인사말 없이 인사 후 총회 참관
- 총회 마지막 개표 전에 남아 있는 내빈이 있다면 총평 등을 물어 볼 수 있음

사례 : 온라인 주민총회

[서울 금천구]

- 사 업 명 : 언택트형 주민총회(주민투표) 개최
- 추진 기간 : 2019.6.18.~7.15.
- 추진 주체 : 마을자치과·주민자치사업단·각동 주민자치회
- 추진 배경 및 목적
  - 2018부터 3년 연속 연 1회 주민총회 개최로 익년도 주민자치회 사업 의제 선정 필요
  -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 발생하였으나 2021년 주민자치 사업 의제 선정을 위해서 동별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필요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쉽고 빠른 주민참여를 위해 온라인 투표 중심의 언택트형 주민총회 기획·실행
- 추진 과정 및 내용
  - 2020.2. : 2021년도 주민자치 사업 희망동 서울시 제출
  - 2020.2.~5. : 2021년도 사업 의제 발굴
  - 2020.6.~7. : 사업의제 선정 : 주민투표 총 5,869명 참가 65개 의제 선정
    - 온라인 및 소규모 상설투표 실시 후 결정(7개동)
    - 주민자치 정례회의에서 사업의제를 선정하되, 사후보고 총회 개최(3개동)
    - 방법 및 내용(전년도와 비교)

구분	방법	내용
2018~2019년	온 · 오프라인 사전투표+오프라인 총회	자치계획 승인, 사업의제 선정, 부대행사
2020년	온라인 투표 중심, 상설투표 병행	사업 의제 선정(21년도 동단위시참 및 주민세)

  - 2020.6.~7. : 주민투표 홍보
    - 온라인 홍보 : 금천구 홈페이지, 블로그 및 디지털 사이니지 홍보
    - SNS 홍보 : 밴드 및 단체카톡 활용 홍보, QR코드 제작 배포
  - 온라인 주민투표 홍보

[주민투표 홍보]
온라인투표창 제작
- 구 홈페이지
- 마을센터홈페이지
- 카카오채널
(7개동 온라인 투표창)

사례 : 온라인 주민총회

[대전 대덕구]

- 사 업 명 :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참여 인프라 확충
- 추진 기간 : 2019.4.~현재
- 추진 주체 : 대덕구, 주민자치회, 대덕구 동자치지원관, ㈜빅픽쳐랩,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자치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플랫폼 구축
  - 마을의제 선정과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프로그램 마련
- 추진 과정
  - 온라인 참여 플래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
    - 2019년 시범 3개동 블록체인 기반 주민투표 APP 도입·활용 : 잇닷
    - 개인정보보호 및 투표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자치구에서 블록체인 주민투표 APP 활용 지원(개발업체 : 빅픽쳐랩 연구소)
  - 2020년 12개동 온라인 주민투표(Google·Naver 설문폼 활용)
    - 마을의제 발굴 후 12개동 주민자치회에서 온라인 주민투표 준비(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 고민)
    - 온라인의 접근성 및 단점을 보완하여 찾아가는 주민투표소/행정복지센터 앞 상설투표소 병행 운영
-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 온라인 주민투표 참여 2019년 3개동 3,377명 / 2020년 12개동 13,340명
  - 개인정보보호 및 투표결과의 투명성을 제고 하였으며,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특정인 누구도 알 수 없는 관계로 소신투표 할 수 있음
  - 주민총회와 의제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뿐만 아니라 일상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편리성과 용이성을 제공.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바일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속 가능한 참여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례 : 온라인 주민총회

[인천 연수구]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주민공론장 운영
  –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주민총회 개최

• 주요 내용
  – 운영 방식 : 온·오프라인 투표 실시 및 온라인총회 개최

9.25.(금)	9.26.(토)	10.6.(화)
옥련1동, 송도3동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송도1동, 송도4동	송도2동

  – 참석자 : 각 동 주민자치회장 및 위원, 관계 공무원 등
    ※ 일반주민 대상으로는 온라인 방송 송출 (유튜브, 네이버 밴드 활용)
  – '20년 주민자치회(자치센터) 운영실적 보고, '21년 주민자치회(자치센터) 운영계획 보고
  – 주민참여예산사업(동 참여형/계획형/협치형) 투표 결과 발표 등
  – 총회 결과 * 숫자로 본 주민총회

개최 지역	14개동	의제 발굴 건수	252건
총회상정안건	121건 (2,445,486천원)	최종선정사업 (참여예산)	102건 (2,146,061천원)
투표참여인원	36,300명 (총 선거인 수 : 334,941명)	최종투표율	10.8%
온라인투표	14개동	오프라인 현장투표	11개동

• 주민총회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
  – 온라인매체, 언론매체, 행정매체, 생활밀착형 홍보 실시
  –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한 온·오프라인 주민투표 실시
    · '19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카카오 모빌"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투표 도입
    · '20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네이버 폼 온라인 투표 도입, 무인 투표함 다양한 형태 투표 실시
  – SNS 투표 참여 이벤트 실시('20년 주민총회 투표 참여자 중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 증정)
  – 현장 행사 최소화한 비대면 온라인 주민총회(동별 네이버밴드, 유튜브 채널 활용, 스튜디오 총회 영상 송출)

연수구, 인천 최초 주민자치시대 열었다

인천 최초 주민자치시대 열어

• 동별 추진 결과

≪ 옥련1동 ≫

옥련1동 온라인 주민총회

• (총회일시) : 2020.9.25.(금) 15:00 * 유튜브 “옥련1동 주민총회”
• (투표기간) : 2020.9.14.(월)~24.(목) / 11일간
• (투표방법) : 온라인(네이버폼) 및 현장 투표
• (투표인원) : 2,206명(온라인 : 1,159명, 현장 : 1,047명)
• (투 표 율) : 11% *총 선거인 수 : 20,005명(기준 : 주민 전체)
• (선정사업) : 총 10건(소요예산 : 133,000천원)
• (주요내용)

주요내용	비고
▶ 개회선언	자치회장
▶ 유공자 표창, 구청장 인사말씀	구청장
▶ 내빈인사(동영상)	국회의원, 구의원 등
▶ 2020년 주민자치회 운영 및 감사 보고 2021년 자치계획 발표	자치회장, 감사, 분과장
▶ 실시간 댓글 답변	
▶ 최종 개표결과 발표 및 폐회 선언	자치회장

≪ 옥련2동 ≫

옥련2동 온라인 주민총회

• (총회일시) : 2020.9.26.(토) 16:00 * 네이버밴드 “옥련2동 주민자치회”
• (투표기간) : 2020.9.14.(월)~26.(토) / 13일간
• (투표방법) : 온라인(네이버폼) 및 현장 투표
• (투표인원) : 1,932명(온라인 : 863명, 현장 : 1,069명)
• (투 표 율) : 10.3% *총 선거인 수 : 18,796명(기준 : 만 13세 이상)
• (선정사업) : 총 5건(소요예산 : 213,510천원)
• (주요내용)

주요내용	비고
▶ 주민총회 개회선언 및 투표집계 안내	회장, 사회자
▶ 내빈인사(동영상 송출)	
▶ 주민자치회장 인사	회장
▶ 2019년 공연 스케치	동영상
▶ 2020 주민자치 운영 보고, 2021 자치계획 발표 등	동영상, 사회자
▶ 댓글 소통 및 자치회장과의 대담	사회자, 회장
▶ 2020년 총회 스케치	동영상
▶ 주민총회 투표결과 발표	사회자, 회장
▶ 총회 유공자 표창 및 구청장 축하말씀	구청장
▶ 최종 개표결과 발표 및 폐회 선언	사회자, 회장

참고 2-4 자치계획·주민총회 절차 및 일정(예시)

절차	주요내용	핵심내용	일정
자치계획 활동 주민 모집 홍보	• 주민 공개모집을 위한 홍보, *** 분과의 자치계획 수립·이행·주민총회 개최 등 전반에 참여**	주민모집 기획회의 주민공개모집(전략홍보)	2개월
▼			
교육·워크숍 자원조사	• 모집 주민 대상 교육·워크숍 실시 • 마을자원 기초조사 *** 인터뷰, 문헌, 사진, 지도표시 등**	관계 맺기/분과워크숍 동네탐방	1개월
▼			
의제발굴·분과구성	• 분과원들에 의한 분과장 선출 • 마을에 필요한 분과구성 및 의제발굴 *** 기존분과 + 신규분과 구성**	분과구성 및 분과장 선출 분과별 과제 찾기	1개월
▼			
계획수립	• 분과별 계획수립 및 의제 공유 • 조정회의 및 계획 심화 • 분과 계획 및 주민총회 안건 정리	분과별 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조정회의(의제공유) *** 임원진회의, 전체워크숍 등**	2개월
▼			
주민총회	• 주민총회 홍보 • 자치계획 우선순위 등 의견 수렴 (사전투표 가능) *** m-voting, 현장투표 등 여러 방법 가능**	총회 준비 및 실시	1개월
▼			
계획확정 예산확보 계획실행	• 실행 세부 계획 작성 • 지자체 협의·협력 • 총회 결정사항 실행	실행 세부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실행	6개월 1년
▼			
준비	• 주민 모집·분과 구성 재정비 • 자치회 자치계획 준비 • 자치계획 실행 평가	재정비 평가 및 계획 준비	3개월

참고 2-5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활용 사례(춘천시)

춘천시 주민총회

주민총회 개요

- 주민들이 직접 마을 현안 사업을 찾고 우선순위를 투표로 결정
- 투표방식은 현장 투표, 온라인 사전투표, 오프라인 사전투표
  - 특히 온라인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시스템*을 활용

*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서 및 전화번호 취합 후 투표시스템에 입력

※ 업무협약체결('19.8.8.) : 춘천시, 춘천선거관리위원회, 8개 시범주민자치회 회장

구분	일시 / 장소	투표인 수(명)				회의개최 (회 / 명)
		계	현장	사전	온라인	
계	8개 읍·동	2,401	1,029	1,313	59	145 / 1,480
후평2동	9. 3.(화) 19:00 / 행정복지센터 2층	409	115	294	-	14 / 112
근화동	9. 7.(토) 10:00 / 행정복지센터 4층	136	136	-	-	25 / 220
석사동	9. 18.(수) 18:30 / 월드스타뷔페 3층	665	102	550	13	15 / 190
신북읍	9. 19.(목) 10:00 / 주민자치문화센터	510	199	311	-	17 / 217
퇴계동	9. 23.(월) 14:00 / 미래웨딩홀	183	183	-	-	13 / 118
신사우동	9. 23.(월) 16:00 / 북부노인복지관	186	140	-	46	30 / 219
강남동	9. 25.(수) 16:00 / 행정복지센터 4층	231	73	158	-	17 / 206
후평1동	9. 25.(수) 19:00 / 행정복지센터 2층	81	81	-	-	14 / 198

주민총회 결과

구분	결과 (우선순위 결정)
후평2동 (9. 3.)	1. 우리 동네 초록마을 만들기 2. 후평2동 행복 돗자리 장터
근화동 (9. 7.)	1. 근화 행복 버스 운영 2. 경로당 많이 나와 주세요 3. 기분 좋은 향기에 취해 걷고 또 걸어요 4. SRL-소양강편지를 연계한 “주민공감방송국” 5. 춘천 보물을 찾아라 6. 모범 주민자치회 견학 7. 보고, 듣고, 즐기는 붓돌공원
석사동 (9. 18.)	1. 석사천변 조명 설치(공동) 2. 벌말공원 화장실 설치(공동) 3. 석사천 모래 제거 4. 초·중학교 안전교육 실시 5. 애막골 주차문제 해소 6. 어린이 물놀이장 7. 행복동네 꽃동네 만들기 8. 행복동네 주민 한마음 음악회 9. 어르신 박물관 프로그램 참여 10. 5월 어린이날 행사 11. 초등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신북읍 (9. 19.)	1. 영농폐기물 안심수거사업 2. 우리가 만드는 ‘작은 숲’ 3. 마을 홈페이지 제작
퇴계동 (9. 23.)	1.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2. 우리 동네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신사우동 (9. 23.)	1. 우두 낭만꽃길 조성 및 걷기대회 2. 마을쓰레기 배출함 설치 홍보사업 3. 안전한 소양2교 하부공간 만들기 4. “주민이 주민을 돕다” 우리마을 복지활동가 5. 찾아가는 정리수납 119
강남동 (9. 25.)	1. 찾아가는 복지센터 (더불어 행복한 강남동 만들기) 2. 행복더하기 생신잔치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 4. 강남 마을 축제 5. 강남시장 6. 100년 후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남
후평1동 (9. 25.)	1. 태극기 사랑 나누기 2. 주민 야간 개방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3. 어린이공원 개선사업

주민총회 온라인투표를 위한 업무협약

춘천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춘천시선관위"라 함), 춘천시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함)는 공동 협력 하에 주민총회 참여 활성화와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춘천시, 춘천시선관위,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투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협력한다.

2.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세부 추진사항은 다음의 원칙하에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가. 춘천시, 춘천시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서비스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주민의 참여 활성화 등 선거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나. 주민자치회는 각종 정책이나 의사 결정 및 임원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다. 춘천시선관위는 주민자치회의 정책·의사결정 등을 위한 온라인투표 시 인력지원 등 공익적 참여를 통해 주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투표관리가 되도록 협조한다.

3.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업무에 관한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정한다.

4. 각 기관은 이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서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8월 8일

춘 천 시
시 장
이 재 수
(서명)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성 지 호
(서명)

신북읍 주민자치회
회 장
오 진 호
(서명)

근화동 주민자치회
회 장
유 원 표
(서명)

후평1동 주민자치회
회 장
김 종 학
(서명)

후평2동 주민자치회
회 장
이 경 자
(서명)

석사동 주민자치회
회 장
진 재 환
(서명)

퇴계동 주민자치회
회 장
김 만 기
(서명)

강남동 주민자치회
회 장
성 길 용
(서명)

신사우동 주민자치회
회 장
신 영 길
(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안내

온라인투표서비스란 ?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스마트폰·PC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과 웹 환경에서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지원하는 서비스

특징

-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수료 없이 실비(문자발송비, 본인인증비 등)만 부담하여 저렴하게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이용신청 승인
- 기존 인증방법 외 ARS 인증 등 보안성이 향상된 본인인증제도 도입

서비스 제공 대상

-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여야 하는 기관·단체 및 정당(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 지원 대상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하급기관 포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기관

다.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라.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위탁이 가능한 단체

마. 정당(「공직선거법」제57조의4·「정당법」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정당의 당내경선)

바. 그 밖에 위 단체에 준하는 단체로서 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한 단체

※ 지원대상 외 민간기관·단체(공동주택, 기업, 직능단체 등)에서는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 (http://www.kvoting.go.kr) 사용

온라인투표서비스 장점 등

- 스마트폰으로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손쉽게 투표·설문 참여

  ※ 스마트폰 외에 PC, 문자 등 다양한 투표·설문 참여 채널 운영

- 찬반투표, 선택투표, 점수투표 등 이용자 맞춤형 투표방식 제공
-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후보자별·안건별 득표수 집계 등 통계 처리
- 투·개표 과정의 무결성 보장, 비밀투표·중복투표 방지 등 보안기술 적용

서비스 이용 절차

-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pub.kvoting.go.kr)에서 이용신청서 작성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신청 승인 및 관리자 ID/PW 발급
- 투표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 받고, 연락처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입력
- 이용기관 관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거개설 후 선거인명부 등록, 후보자정보 입력, 안내문자 발송, 투·개표 등 전 과정 진행
- 선거종료 후 정산된 수수료(문자발송비, 본인인증비 등 실비) 납부

이용기관 관리자 이용 절차

선거인 이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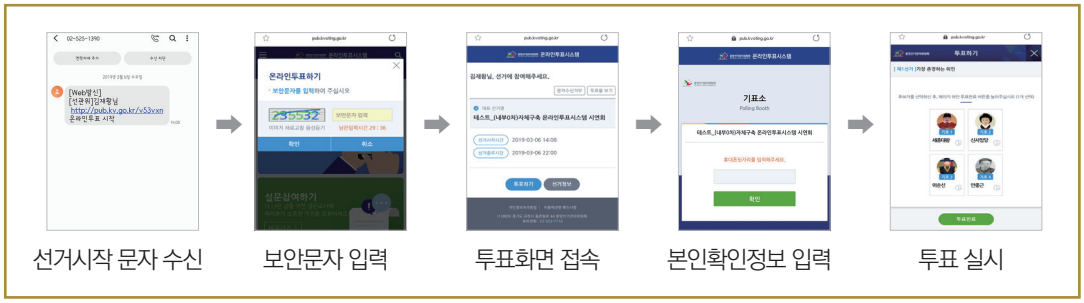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은 개인 URL과 보안문자를 입력 후 선거정보를 조회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수수료

구분		금액	비고
서비스	수수료		
선거시작안내 투표독려문자	문자발송비	SMS : 건당 12.1원 LMS : 건당 35.2원	▸ 선거시작 시 선거시작 안내 문자 발송(필수) ▸ 투표독려문자는 이용기관에서 발송 여부 선택
선거 보안방식	본인확인정보	무 료	▸ 생년월일 등 (선거인명부 기재 필요)
	인증번호	문자발송비(SMS)	▸ 인증번호 수신 후 입력 (실명인증과 무관)
	휴대폰 본인인증	건당 55원	▸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번호 수신·입력 (실명인증 절차 실시)
	I-PIN 본인인증	무 료	▸ I-PIN ID/PW 필요 (실명인증 절차 실시)
	ARS 본인인증	건당 25.3원	

자치계획 실행

자치계획 실행 프로세스

자치계획 숙의 (민·관 협력) → 예산확보 → 사업시행 → 사업성과 평가 (자치회) → 주민총회 보고

- **(자치계획 숙의)** 주민총회 결정사항 시행을 위한 민·관협력적 숙의 진행
  - 주민총회 결정 의제의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실행 주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 마련
  - 주민자치회와 자치단체가 해당 의제에 대한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
  - 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

사례 : 자치계획 실행 숙의

[양천구 구 단위 정책공유 수다회]

① 자치구추진지원단, 마을사업담당자, 전문촉진자가 논의를 통해 동별 의제 취합 및 소관부서별로 분류 후 자치구 마을팀에 전달

② 마을팀이 소관부서에 의견 청취 후 서면검토 의견서 전달

③ 마을팀 주관, 1차 의견 수렴 예비모임 진행(① 참석자, 소관부서 담당자)

④ 마을계획단 주민, 의제 소관 부서 담당자 등이 의제 검토 및 협의

양천구 정책공유수다회 포스터

정책공유수다회 진행모습

※ 자료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 **(예산확보)** 자치계획의 실행을 위해 주민자치회 자체 예산,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Ⅱ.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참조), 민간위탁, 공모사업 연계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실행)** 주민자치회 직접 수행, 자치단체 직접 수행으로 구분됨

- 민간위탁, 민간단체보조금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직접 수행과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구분

사례 : 서울특별시 동별 마을계획 의제 실행 주체 및 예산 계획

('17년 9월 기준)

동	의제 (건)	실행 주체(건)			전체 예산 대비 예산 확보 현황 및 계획 비율						
		주민 주도	민·관 협력	주민 제안	예산 (단위 : 백만원/%)		실행비 지원	참여 예산	공모 지원사업	자체 부담	기타 예산
춘향동	16	10	2	4	3,931	100%	89%	2%	6%	0%	3%
몽룡동	26	10	8	8	2,116	100%	0%	14%	1%	0%	85%
견우동	18	9	9	0	285	100%	4%	11%	85%	0%	0%
직녀동	17	9	7	1	220	100%	3%	89%	0%	7%	1%
장화동	10	2	8	0	107	100%	7%	93%	0%	0%	0%
홍련동	21	12	4	5	76	100%	10%	66%	23%	2%	0%
우치동	8	0	6	2	58	100%	13%	87%	0%	0%	0%
길동동	14	8	4	2	38	100%	20%	79%	0%	1%	0%
…	…	…	…	…	…	…	…	…	…	…	…
합 계	498	220	168	80	10,583	100%	43%	19%	17%	0%	21%

* 실행비 지원 : 지자체에서 지원

** 공모사업 지원 : 지자체에서 공모한 사업

*** 기타 예산 : 정부 부처 지원 등

사례 : 금천구 자치계획 실행

- 사 업 명 : 주민자치회 사업(동단위시민참여예산, 주민세사업) 실행
- 추진 기간 : 2020.3.~2020.12.
- 추진 주체 : 동주민자치회·마을자치과·동주민센터·주민자치사업단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민관협력문화 형성
  - 주민의 예산편성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복지 향상
  -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동별 특성에 맞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2017~, 3년 연속)
- 추진 과정 및 내용
  - 2019년 주민총회 개최(2019년 사업의제 결정) : 2019.5.
  - 서울시 보조금 사업 신청(금천구 → 서울시) : 2019.8.~9.
  - 자치회별 세부실행 계획서 제출 : 2019.10.
  - 보조금 교부(서울시 → 금천구) : 2020.2.
  - 보조금 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금천구 ↔ 동주민자치회) : 2020.3.
  - 보조금 사업 추진 : 10동 65개 의제(632,244천원)

구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의제 수	33개(경상 26, 자본 7)	32개(경상 30, 자본 2)
예산액	200,000천원	432,244천원

-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 의제발굴(기획), 주민총회(의결)의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의 최종 단계로서 실천과 함께 주민자치 활동의 결과 경험의 기회 제공
  - 계획서 작성 사업실행 예산 집행 등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의 실무역량 강화
  - 구·동·자치회의 역할 분담을 통한 민관협력 및 소통 증진
    - 구행정은 의제 및 세부실행계획서 검토 및 서울시 보조금 신청 지원
    -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사업부서에서 실행
    -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동행정과 주민자치회가 협업하여 사업 실행

독산4동 전신주 정비

독산1동 골목 조성

시흥4동 마을축제

비대면 주민축제

시흥2동 안심하교길 사업

시흥1동 비대면 버스킹

사례 : 대덕구 자치계획 실행

- 사 업 명 : 주민참여예산 연계 및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실행을 위한 주민자치예산 확보
- 추진 기간 : 2020. 6. ~ 현재
- 추진 주체 : 대덕구, 주민자치회, 대덕구 동자치지원관,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자치팀, 대전광역시청 자치분권과
- 추진 배경 및 목적
  - 주민자치회에 권한부여를 통해 위원들의 참여동력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사업을 주민자치회가 논의·결정,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
  - 주민세균등할분의 활용을 통해 자치계획실행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 추진 과정
  - 區와 주민자치회장 정기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예산사용 권한과 주민세 환원에 대한 요청
  -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실행하는 단계를 넘어 대덕구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을 기반으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이 결정한 마을의제를 실행하는데 주민참여예산(주민세 균등할분) 사용을 계획하고 추진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연계 활용 – 대덕구는 주민자치회가 의제실행사업 예산으로 활용
    - 주민참여예산(협치형) : 주민자치회 12개동 48건, 8억 5천만원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사업 : 주민자치회 12개동 마을의제 32건, 1억 8천만원
  - 자치구 동 주민제안공모사업비 : 마을의제 15건, 1억 2천만원(동별 1천만원)
  - 주민참여예산제(동 참여형) : 마을의제 6건, 7천 2백
  - 주민자치회 전 동 추진을 위한 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
    - 1단계 시범 3동 : '19년 4억 6천 8백/'20년 3억 3천 6백(재원 : 시 특별조정교부금/구비)
    - 2단계 시범 9동 : '20년 8억 6천 4백/'21년 4억 2천 3백(재원 : 시 특별조정교부금/구비)
    - 공동체마을계획사업비 : 9천만원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주민참여예산 제출 기간과 주민총회 개최 기간을 연결하여 실행하지 못하여, 의제 제출은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추후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투표결정 방식으로 진행
-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 마을의 주인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조직의 권한을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결정하고 권한 사용(대표성과 자치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을 연계 활용함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의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민주성과 권한 강화)

사례 : 연수구 자치계획 실행(송도2동 온라인 주민축제)

• 추진 배경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친 주민에게 활력과 힐링 제공을 위한 온라인 주민축제(어울림 한마당 및 랜선 플리마켓) 개최
• 주요 내용
  – 일시/장소 : 2020.10.31.(토) 14:00~17:00 / 송도2동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
  – 참여 방법 : 유튜브 “송도2동 주민자치회” 채널
  – 참여 대상 : 송도2동 주민 및 연수구 관내 중·고등학생
  – 행사내용
    1. 송도2동 온라인 플리마켓 〈함께가치, “살까요? 팔까요?”〉
      · 모집 대상 : 송도국제도시 거주민
      · 운영 방법
        – 유튜브 “송도2동 주민자치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및 온라인 경매 방식 운영
        – 접수 물품 중 일부를 선정, 온라인 생중계 경매 방식으로 판매
    2. ZOOM-IN(주민) 랜선 합창단
      · 모집 대상 : 송도국제도시 거주민
      · 운영 방법
        – 노래 : ‘슈퍼스타’, ‘꼭 안아줄래요’
        – 각자의 공간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합창영상 제작
    3. 청소년 방콕 퀴즈 왕(온라인 퀴즈대회)
      · 모집 대상 : 연수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 운영 방법
        – 유튜브 “송도2동 주민자치회” 채널을 통한 생방송 퀴즈 진행
        – 총 20문제(16문제 : 자치분권 및 각종 정책, 4문제 : 이벤트 문제)
        – 출제 문제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

위수탁 업무 수행

위탁업무 운영 프로세스

추진계획(조례) 의회 동의 ▶ 협약(계약) 체결 ▶ 위탁대상시설 인수·인계 ▶ 시설운영·관리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적극 발굴
  - 시·군·구와 주민자치회가 위·수탁사무 협의를 통해 위탁사무 내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
    * **(제외사무)** 지도·단속·규제·감시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 조사 업무와 같이 행정책임이 발생되는 사무
- 민간영역의 공공성 확대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재정지원 차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위탁사무 확정·시행

[위·수탁 가능 업무(예시)]

- 시설·장비관리, 서비스 제공 사무
  -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관리
  - 마을 휴양지, 유적지 등 관리,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등 자원봉사 활동 지원
-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인 사무
  -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 개방시설 관리
-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보조 등을 통한 관리가 효율적인 사무
  - 각종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지원

〈지자체 위탁 업무 사례〉

-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을탐방 안내, 마을자율 청소, 생활안전 활동, 마을 안전지도 제작, 경로·어버이날·노인의 날 행사 운영, 작은도서관 회원관리·도서구매 등
- **(경기 수원시 행궁동)** 시민자전거 대여
- **(세종 부강면)** 노인대학 운영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전재민촌 안심마을 희망공원」 운영

사례 : 광주 서구 주민자치회 위수탁

• 추진 배경
  – 자치분권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등에 발맞추어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개선·확대
  –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도모

• 주요 내용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 사무 위·수탁 추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주민자율청소(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및 신고, 캠페인 실시 등)
    · 공원유지관리(공원시설물 점검 및 신고, 화장실 관리 등)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이면도로 및 소도로, 주택지역 등)
      ※ 주민자치회가 처리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여 위탁구역 협의·지정
  –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위·수탁 사무 처리절차 등 실무 위주 내용 수록
  –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협의회 운영
    · 위·수탁 사무의 범위조정 등 효율화 방안 논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향후 계획
  – 주민생활 밀접사무 단계적 사무이관(구 → 동) 계획과 연계 위탁 범위 확대 검토
    · ('21년~'22년) 주민편의 제고 사무 : 경로당 등 시설관리, 교통, 도시환경 등
  – 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 추진성과 평가 실시('21년 하반기)
    · 8개 주민자치회 위·수탁 협약기간이 동시 만료('21.12월)됨에 따라 그간 수탁사무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추진 방향 재검토
      (1안) 기존 위탁사무(주민자치센터운영 등 4개 사무) 협약 지속 추진
      (2안) 주민자치회 공익형 사업수행법인(협동조합 등) 설립 등을 통한 수익창출모델 강구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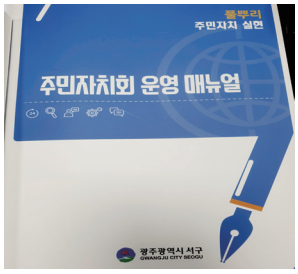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 제작

사례 : 창원시 주민자치회 위수탁

• 현황

구분	마을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주민복지관	체육시설	실버카페
개소	4	2	2	1	1
주 민 자치회	의창구 북면, 의창구 용지동, 성산구 성주동, 진해구 풍호동	의창구 용지동, 성산구 성주동	성산구 성주동, 성산구 웅남동	성산구 웅남동	성산구 성주동

※ 주민자치센터 위·수탁 운영 제외

• 실버 북&카페 운영(성산구 성주동)

- 민원센터 내 주민소통공간 실버 북&카페 조성 및 주민자치회 위탁 운영
- 어르신 바리스타 채용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수익금 일부 지역사회 환원
- 위탁주체 :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주민자치회
- 위탁대상 : 성주민원센터 실버 북&카페(25㎡)
- 위탁기간 : 1년 단위 협약 체결(2017.11.~)
- 운영인력 : 4명(사무국장 1, 어르신 바리스타 3)
- 운영방법 : 커피 등 음료 판매

  * 별도 예산지원 없음 / 시설 : 창원시 무상임대

운영 지원

- 주민자치회에 위탁예정인 사무의 처리비용,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인력, 사무공간 등)등 행·재정적 지원

  * 사무공간은 청사, 자치회관 내 유휴시설 등 활용을 원칙으로 하여 검토

- 자치계획 실행에 따른 참여예산 확보, 컨설팅, 교육, 홍보 등 지원
- **(민·관 정기협의체 운영)**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 간 사업추진 방향, 사업진행 일정, 협조 및 지원 사항, 현안사항 등 협의 창구 개설
-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단체 등 주민자치 관계자 간 정보 공유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형성

사례 :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합계			1,995.2
개방형 읍면동장 도입		• (신청) 도내 시·군(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 (선정) 2개소 • (지원기준/개소당) 2.5억원(2년)	500
혁신 모델 공모 사업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 (신청) 시범공동체 101개소 및 주민 모임 등 • (선정) 20개소 • (지원기준/개소당) 2백만원	40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 (신청)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전환 예정 주민자치위원회 포함 • (선정) 25개소(신규 9, 후속 지원 16) • (지원기준/개소당) 30백만원(3년)	750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	• (신청) 운영기반이 구축(총회, 분과, 사무국 등)된 주민자치회 • (선정) 10개소 • (지원기준/개소당) 1~3천만원	225
역량 강화	주민자치회 컨설팅	• (지원대상) '20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9개소 • (운영주체) 2개 컨설팅 전문기관 • (주요내용)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전반 지원	90
	상설주민자치학교	• (지원대상) 기존 충남형 주민자치회 16개소 중 희망지, 주민자치회 전환 예정지 등 • (운영주체) 컨설팅 전문기관 • (주요내용)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전반 지원	18
	주민자치 아카데미	• (교육방법) 시·군(자체, 위탁) • (교육대상) 5,000여명(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 (교육내용) 주민자치 이론, 심화, 실무교육 등	140
발굴·확산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비 지원	• (신청) '19년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 추진 시·군 • (선정) 4개 시·군 • (주요내용) 주민세 활용 우수 시·군 사업비 지원 • (지원기준) 최우수 1(20), 우수 2(30), 장려 1(10백만원)	60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연대회 인센티브	• (개최시기) 동네자치 한마당 행사 시 선정 • (선정) 5개소(동네〈마을〉, 아파트 등 모든 공동체) • (지원기준) 혁신모델 인증 2, 우수사례 3	70
	사진 공모전	• 주민참여형 자율사업 발굴·추진 모습 등 사진 공모	18.1
	동네자치 한마당	• (개최시기) 2020.12.3. • (주요내용) 토크,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연 등	40.9
	사례집 발간	•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 우수사례 공유	16.2
	기획 보도	• 지역 언론사를 통한 6회 보도	27

사례 : 담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 추진 배경

–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 및 인구감소 등 사회적 구조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상향식 주민자치 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문턱 제거 및 민관 소통 기회 제고

·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 단위의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모색 등 진정한 자치 실현

• 주요 내용

– (주민이 주민자치조례 발의) 이장연합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례 제정 청구

·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 : 2017.12.

※ 전국 최초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자치 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 기반 마련

– (지역의 반발 해소) 군의회, 기존 자생단체 권한 축소 우려 등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반발을 권역별 주민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쟁정사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해소

– (주요 내용) 담양군 주민자치연합회, 읍면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갈등조정위원회 등 규정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 : 2018.2.

· 담양군 주민자치연합회 구성 및 운영 : 2018.2.~

– 읍면주민자치회 회장 및 간사로 구성, 매월 1회 회의 개최

– 주민자치 교육 및 정책 수립, 지역 주민자치 사업 건의 등 역할 수행

· 담양군 갈등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8.9.~

– 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마을자치회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결

·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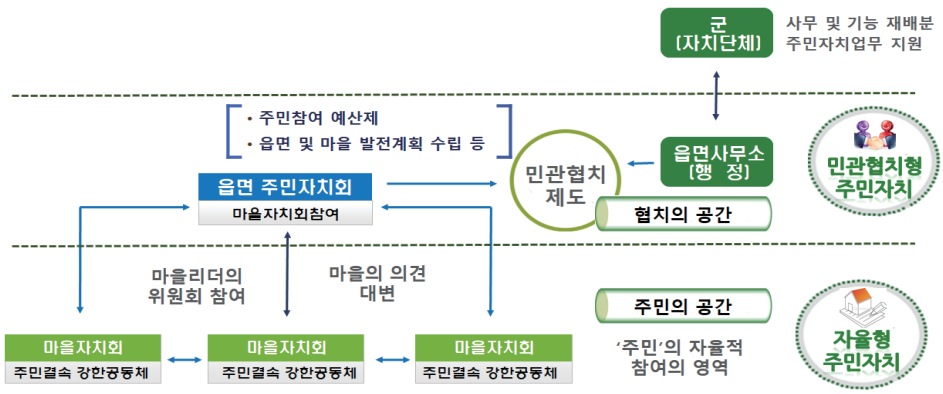

〈담양식 주민자치시스템 기본 모형〉

•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주민자치' 원리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담양식 농촌형 주민자치 추진
• 행정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권 보장」등 주민참여의 실질화
  – 지역발전토론회, 주민총회,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특화사업, 마을계획 수립 등
•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공무원, 주민 등 역량강화을 통한 자치인력 육성
  – 주민자치대학, 역량강화교육, 주민자치 배달강좌, 온라인 교육센터 구축 등
  ⇒ 보조금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총회를 의제 설정, 정책 발굴, 발전 계획 승인 등 공공성 높은 의사결정체로 전환

마을자치회 구성 및 지원	**마을단위 자치회로 농촌형 주민자치 모델 제시** • 마을단위에 자생적 마을자치 공동체 구성 – 마을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사업 ⇒ 마을자치회 회의 운영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18) 16개소→('19) 44개소→('20) 64개소→('21) 104개소 – 마을자치회 선도마을 지원사업 ⇒ 소규모 주민자치사업 실행 지원으로 실행력 강화 ('19) 15개소 → ('20) 25개소 / 시범운영 후 선도마을 신청 가능	 마을자치회 회의
읍·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연합회 운영	**전 읍·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읍·면별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 구성 –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개발계획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 등 논의 – 지역 주요사업 예산 및 주민 자치활동사업 추진 •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 및 간사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 구성 –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사항 공유 – 군 주민자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안건 논의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행정과 주민의 협력 및 소통체계 구축** • 읍·면사무소를 열린공간으로 활용해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자치 사업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체계 구축 • 행정에 대한 신뢰감과 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 실시** • 주민자치대학 운영 및 주민 역량강화교육 실시 • 찾아가는 배달강좌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지역발전 토론회 개최	**지역발전토론회를 통한 안건 발굴 및 의견수렴** • 지역발전토론회 결과 주민참여예산 반영 – 지역 현안 문제를 주제로 주민자치회 주관 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개방형 토론회 개최 – 지역발전토론회 개최 : 11개 읍·면 / 2020. 7.~11.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정책사업) 13건, 364백만원 반영	 수북면 지역발전토론회
주민세 환원사업 실시	**주민대표기구 역할강화 및 주민자치 실행력 확보** • 주민세 환원사업 주민자치회 공모에 의한 실시 – 주민세 개인균등분 2억 9백만원의 57%인 1억 2천만원을 주민자치 사업비로 지원 – 12개 읍·면 공모 참여→심사를 통해 10개 읍·면 선정	 주민자치회 소식지
주민총회 개최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 관심과 참여 제고** •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확산 실시 –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마을발전계획 주민 의결 및 사업 평가 등 주민참여 제도화 * 주민총회 개최 ('18) 2개소 → ('19년) 5개소 → ('21년) 8개소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총회 미개최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지원	**지역에 사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 계획** • 주민이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020. 7. ~ 2021. 2. – 대 상 : 6개소(읍, 월산, 봉산, 가사문학면, 대덕, 월산) – 주민참여 보장 등 주민중심 지역문제 해결 기반 조성 – 주민이 참여한 마을계획 수립으로 농촌형 주민자치 모델 제시 * 마을계획수립 ('19년) 2개소 → ('20년) 6개소 → ('21년) 3개소	 마을계획 추진단 온라인 발대식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유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참여 방안 확대** • 읍·면별 자치활동 및 우수사례 공유로 자치의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읍·면별 자치활동 추진에 따른 우수사례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유, 2021년도 운영계획 발표 등 *'19년은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진행, 시상금 지원(다음년도 예산 반영),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수사례 공유회로 진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 경기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업 발굴·추진

• 주요 내용

– 사업 기간 : 2020.4월~6월

– 지원 대상 : 28개 시군, 40개 주민자치(위원)회

– 사업비 : 300,000천원(전액 도비 : 주민자치 시범사업)

・시·군당 1~2개 선정(단, 시·군별로 동일한 사업유형을 신청한 경우 1곳만 선정)

・주민자치(위원)회 당 7,500천원씩 지원

– 사업 내용 : 코로나19 예방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예방사업)	소상공인 지원(경제활성화)	취약계층 대상 지원
면 마스크·손세정제 제작	동네 소상공인(시장) 이용캠페인 – 동네식당 가이드북 제작 등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 –면마스크(세정제) 제작·배포 등
면봉, 항균필터 설치사업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 설치)	소상공인 방역지원사업 (방역기 대여, 안심식당 푯말)	

사회적 거리두기(예방사업)	소상공인 지원(경제활성화)
취약계층 지원(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경비원 등)	동네식당 가이드북 제작, 심리방역 화단조성 등

사례 : 김포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

- 사 업 명 : 학교급식 식재료 꾸러미 사업
- 기 간 : 2020년 3월~4월
- 대 상 : 관내 농식품 농가와 식품업체(대상 인원 100여명)
- 사업 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 꾸러미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배부를 맡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 모니터링단 학부모, 마을기업, 자원봉사자가 꾸러미를 구성하여 지역화폐로 결제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례 : 진주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주민자치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개설)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면 휴강에 따른 강사 생계 어려움 발생 및 기존 수강생들의 생활 활력 감소
  - SNS(카카오톡, 밴드 등)를 통한 온라인 강좌 개설로 강사에게는 생계 지원을, 수강생들에게는 문화·여가 서비스 제공을 장기화되는 상황에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 주요 내용
  - 프로그램별 자체 강의계획서 수립 후 온라인 강좌 실시(2020.4.1.)
    - 진주시 30개 읍면동, 115명 강사, 209개 프로그램 개설
    - 강의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읍면동별 담당자)
    - 강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계획 강의량 70% 이상 충족 시 강사료 지급
  - 총 15,192차시 프로그램 진행, 강사료 약 3억원 지급(2020.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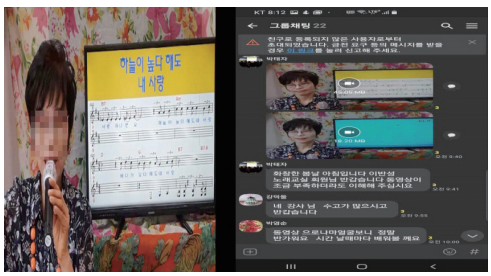

창원일보
2020년 04월 08일 (수)
진주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시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료 온라인 192개 강좌 개강

4. 주민자치 재정 강화

〈1〉 주민세 환원

추진목적

- 주민세 징수분 상당액을 지역 환원 차원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 사업 재원으로 활용,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추진방식(안)

- 주민세(개인균등분 등) 징수분 상당액을 차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 등으로 교부받아 주민자치 사업비로 집행

① 주민세 환원사업 예산 편성 ▶ ② 대표성 있는 주민자치회에 보조금* 또는 위탁금** 교부 ▶ ③ 사업 시행 ▶ ④ 사후 정산 등

* 관련 조례 제·개정 필요

** 법률에 규정된 국가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의제의 실행(공모방식)예산 및 주민자치회 특정 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

주민자치회 지원 관련 근거 법령 및 기준

- **「지방재정법」(제17조 ①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지방분권법」(제28조①항)**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 **「202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추진전략 2-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 읍·면·동 주민 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 수립 계획(자치계획 등)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강화로 공공성 및 지속성 확보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현장 보건복지인력 확충 추진

참고 2-6 지자체별 주민세 환원 주요 사례

서울시(광역형)

• **(개요)** 주민이 낸 주민세를 지역으로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활동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

- 주민자치회의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주민세 사용 권한을 주민에게 환원

• **(대상 및 지원액)** 4개 구 26개 동, 10억원(2017년 세입 결산 기준, 동별 징수액)

- 2020년~2024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설치동 단계적 지원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행동	81	126	307	351	424

• **(사용 주체)** 주민자치회

- 방법 :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간주, 주민들이 함께 지역 문제 공유·숙의·실행의 전 과정을 담은 연간 자치계획(예산계획 포함) 수립
- 내용 : 실행분과별 의제 발굴·결정을 위한 숙의·토론, 주민총회 운영, 동 단위 주민대표 조직 네트워크 파티, 자치계획 실행(연속·계속사업 포함)비로 사용
  - 사업비 : 사업 의제 실행비
  - 사업수행을 위한 기타경비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원액 50% 이내, 2천만원 상한

※ 사업수행을 위한 기타경비 중 30%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 편성

전남 담양군(기초/농촌형)

• **(개요)** 주민세 징수분 상당액을 지역 환원 차원에서 해당 읍·면 주민자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여 마을자치 활성화 재정확보 및 읍·면 단위 지원사업 활성화

• **(추진체계)**

사업비 확보 (추경)	사업계획시달 및 읍·면계획접수	읍·면계획 심의·선정 및 보조금 교부	사업실행	성과평가 분석
2019. 3월 (군)	2019. 4월 (군, 읍·면)	2019. 4월 (군)	2019. 4.~ 10. (군, 읍·면)	2019. 11월 (군, 읍·면)

• **(대상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 관련 사업 실행

- 주민화합형 : 공동체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만남의 장 마련

- 생활개선형 : 마을가꾸기, 마을신문 제작, 마을환경개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 간 분쟁해결 활동
- 보육교육형 : 자녀 돌봄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내 공동 학습방을 운영하는 등 아이돌봄 활동

충남 당진시(기초/도·농복합형)

• **(개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자치사업 지원예산 편성☞ 위원회 직접 지원 : 민간경상보조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문 신설
- (제17조) ②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교육 및 행사와 공동체 사업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를 추진한다.
- (제25조) 시장은 위원회가 제1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공모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주민이 직접 읍·면·동 단위 이하 자치계획(마을사업)을 수립, 주민총회를 통해 시행사업을 결정 → 시는 시행예산 지원

• **(추진경과)** '15년 주민세 연계 사업 50백만원(주민세 인상 前) → '16년 200백만원(주민세 인상 : 3천원 → 1만원) → '17년 250백만원 → '18년 300백만원 → '19년 400백만원 → '20년 500백만원(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 '21년 650백만원 전액

• **(대상사업)** 주민세 활용 읍·면·동 자치사업
-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갈등 해소(축산농가-아파트 입주민 상생협약)
- 마을토론회 활성화로 주민갈등 예방(이통 방문 사랑방 토론회)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 **(개요)** 주민세 균등분 전체(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를 해당 읍·면·동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사업으로 전액 환원

• **(추진체계)** 주민세 수납액 읍·면·동별 배분, 읍·면·동별 예산협의회*를 거쳐 대상사업 발굴, 타당성 검토 후 예산반영 및 사업 시행(지자체)

* 읍·면·동장 + 시의원 + 시민참여예산위원(그 지역) + 일반시민

• **(대상사업)** 주민숙원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다수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

* 배정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123억 원), 주민자치사업(14억 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5억 원) 등

관련 기사

세종시, 전국 첫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18.10.28. 경향신문)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이 마을 관련 사업을 결정해 집행할 수 있게 주민세를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행정력 일부를 시민에게 나눠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 달 12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그동안 충남도 등이 주민세 일부를 주민자치 예산으로 전환한 사례는 있었으나 주민세 전액을 주민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종시가 처음이다.

내년 세종시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159억원 규모다.

관련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환경개선, 주민자치사업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된다.

그동안 주민세는 지자체가 도로포장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해 왔다.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세종시가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종시는 주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한다.

시민주권대학은 이·통장 등 시민이 마을발전을 위한 적절한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치분권 특별회계 시행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내실화 ※ 행안부 재정정책과-1466호('20.3.27. 시행) 참고

추진목적

- 주민참여 범위를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의 전국 확산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촉진

추진방식(안)

- 자치계획형 제도 확대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18.3.27.)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확대(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

- 읍·면·동 주민세 재원 등을 활용하여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 추진·결정권한 부여, 사업설계·집행·평가 등 단계별 주민참여 강화 등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도 운영절차(예시)

읍·면·동별 실링 통보	→	사업 선정*	→	사업 심사	→	예산안 편성
시·도/시·군·구/주민참여예산기구		주민자치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자치단체 장

* ① 지역/마을 자원 조사 ② 지역의제 도출 ③ 우선순위 결정 ④ 지역/마을계획 수립 ⑤ 마을총회 운영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제15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
2.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 · 면 · 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19.4.11.]

• 기존 지방제도와 연계 강화

-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생활 SOC사업*, 예산낭비감시단 등 관련 연계·협력 강화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주민제안형 생활SOC사업 추진절차(예시)

주민제안형 생활 SOC 추진과정

생활 SOC 관련 지자체 등 수요조사(2월)	부처 예산 관련 협의 (3월)	정부안 마련, 확정 (5~8월)	
사업추진 ('20년, 각 부처)	의제발굴 및 선정 (12월)	**주민 숙의 및 제출 (10월~12월)**	**통합공모 추진 (9월, 국조실 통합)**

-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제도(주민자치회, 예산낭비감시단 등)와 연계·협력 강화

※ '20년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9.7.)에 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편람」에 주민참여 개념 등 제도 현황 추가('19.7.)

주민자치회 운영 시스템(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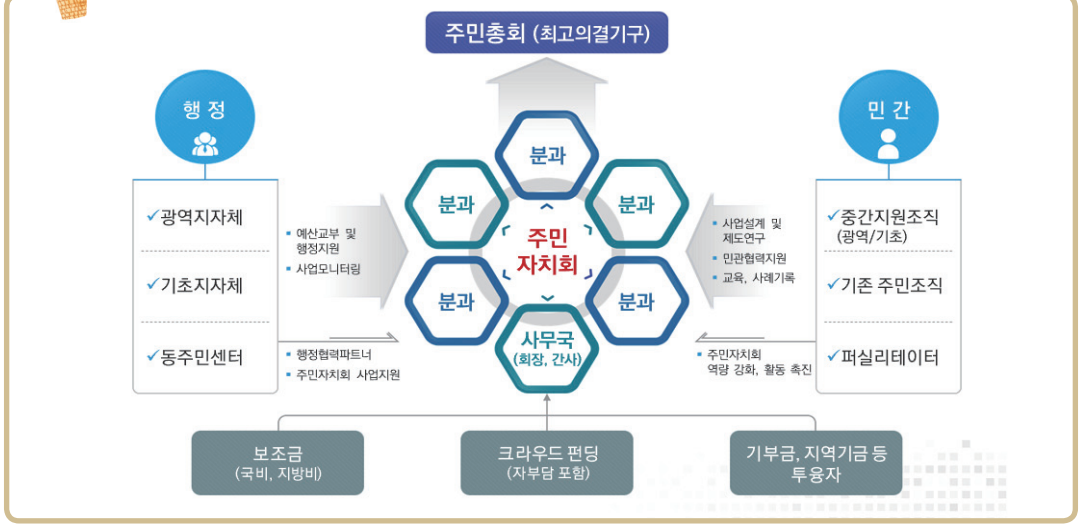

• 全 예산과정과 사업에 주민참여 활성화

- 모든 예산과정(집행·결산·환류)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20.3.3.) : 예산편성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자치단체별 계획 수립·추진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

모든 예산과정 주민참여 절차·방법 예시

사업제안	사업선정	예산편성	예산집행	예산결산
주민	자치단체 + 주민	자치단체 + 주민	자치단체 + 주민	자치단체 + 주민
공모·공모 외 (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	추진 사업 선정 (사업부서→부서+주민)	선정 사업의 예산편성 (사업부서→부서+주민)	선정 사업의 예산집행 (사업부서→부서+주민)	선정 사업의 결산 (사업부서→부서+주민)
〈주민참여 방법〉 ▸**(주민주도형) 공모방식** • 예산설정/미설정, 주민참여 예산기구·주민총회에서 사업을 결정 ▸**(주민참여형) 공모 외 방식** • 예산설정/미설정, 주민참여 예산기구에서 사업결정 제한	〈주민참여 방법〉 ▸주민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선정하던 것을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선정 및 정보공개 예1)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 회의 예2) 온라인·모바일 주민참여 예산 선정 투표 등	〈주민참여 방법〉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정보 공개 예1)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회의 예2)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커뮤니티 등	〈주민참여 방법〉 ▸**자치단체에서 집행은 하되,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 및 집행과정·결과 정보공개** 예1)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집행을 위한 주민참여 회의 예2)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집행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커뮤니티 등	〈주민참여 방법〉 ▸**자치단체에서 결산은 하되, 결산과정에 주민 참여 및 결산과정·결과 정보공개** 예1)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결산을 위한 주민참여 회의 예2)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결산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커뮤니티 등

환류(주민의견 반영·제도개선)
〈주민참여 방법〉 예)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회의, 온라인·모바일 모니터링 커뮤니티 등

- 주요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실질적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20.3.3.) :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 → 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주요사업으로 한정하던 용어 삭제)

참고 2-7 읍·면·동 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제 사례(수원시)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운영방향
  - 지역문제 해결 및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주민제안사업 발굴과 선정
    - 주민 공론장 운영, 제안내용 보완 등 사업 구조화 진행
  - 주민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동 단위 주민의견 수렴 구조 활용
    - 주민자치회 시범동 연계 운영, 주민참여예산 동네 한바퀴 운영 강화
- 대상 사업

다수 주민 수혜의 공공성 있는 사업 ▶	•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 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 주민참여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 정책적 결정 등 중·장기 계획에 의한 시 자체 추진 사업
- 행정내부 운영 예산, 시설 운영비 증액 사업
- 일반 민원성 제안(대중교통 이용, 환경정비 등 즉시 추진 사업)
-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 특정 단체의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 타기관(경찰서 등)에서 이행할 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시범동 연계 운영(시 주관)

- 대 상 : 주민자치회 시범동(8개동) * 송죽동, 율천동, 서둔동, 호매실동, 행궁동, 인계동, 매단2동, 광교1동
- 주 관 : 동 주민자치회
- 사업범위 :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발굴·제안한 사업
- 운영기간 : 6~8월(회의개최 : 3회 이상, 주민총회 1회 포함)
- 운영방법
  - 동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 운영원칙,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지역의제 발굴, 주민 의견 숙의 과정 진행
  -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심의 프로세스 적용, 교육 운영, 컨설팅 지원
  -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 선정

※ 주민총회 구성 요건 : 30명 ~ 50명(일반 주민 공모 30% 이상)

〈3〉 기타 재정 강화 사례

(서울 중구) 주민 중심 예산 편성 체계 운영

• 기본 방향

– 동의 재정적 권한 대폭 확대 ※ 구에서 동으로 예산 및 회계 주체 이양

– 주민의 권한과 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정부 예산 편성 체계 운영

※ 주민참여로 동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 편성

• 추진 실적

주요과제	실적		
	2019	2020	2021
동정부 예산편성 체계 구축	동정부 예산편성 매뉴얼 마련	동정부 예산 편성 매뉴얼 운영	동정부 예산 편성 매뉴얼 운영
동정부 예산편성액 (15개 전동 합산)	73억	280억	295억

• 주요 내용

– 구 중심의 예산편성권 및 회계구조를 동으로 이양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서울중구규칙 제691호)에 따라 동별 자체예산 편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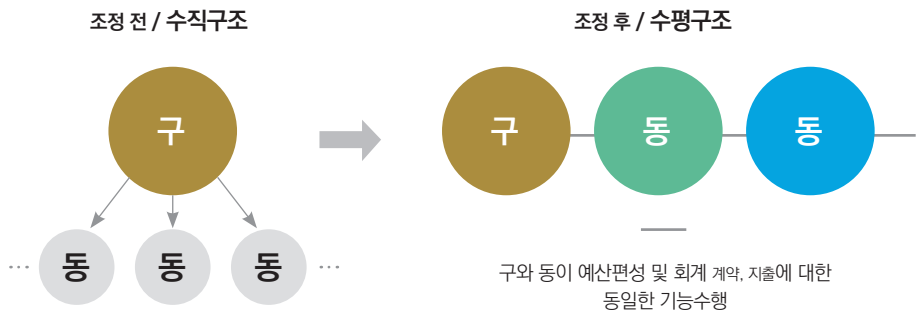

–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의 경우도 동 예산으로 편성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 동별 예산편성 체계 운영

➡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편성 추진

※ 2020년도 참여예산 규모 : 24개 자치구 4억~50억 〈 서울 중구 동예산 280억 중 122억

(서울 중구) 동으로 권한 이양

• 기본 방향

– 구에는 최소 필요 기능*만 남기고 모든 기능과 권한을 동으로 이양

* (연결) 중앙정부·시와 동을 연결, (지원) 총무, 의회, 감사, 공보, 인사, 교육 등, (기획) 사업 기획, 추진 등

– 이관으로 인한 조직규모의 변화 : 구는 大과 → 小과, 동은 小동 → 大동

※ 사무와 인력 이관으로 구는 규모가 축소되고 동은 규모 확대

• 추진 실적

주요과제	실적		
	2019	2020	2021
사무 이관에 따른 구 : 동 업무 비율	80 : 20	77 : 23	74 : 26

• 이관 사무 발굴 절차

2019. 7월	8~10월		10월말	11~12월	2020.1월~	2~4월
준비	이관 사무 발굴		최종 확정	사전 작업	사무 이관	모니터링
• 수요조사 대상: 중구민, 동주민센터 • 이관계획 수립	• 이관 대상 사무 발굴	• 다방면 검토 회의	• 이관 사무 최종 확정	• 인력 및 공간 재정비 • 인계인수 • 관련법 개정	• 정착 노력	• 모니터링 • 지속적 피드백 • 이관 조정 (필요시)
동정부과	전부서		최종 결정회의	전부서	동주민센터 +전부서	동정부과

5. 주민자치회 고도화

〈1〉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고도화

- **(추진배경)** 지역 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안착 단계를 지나, 강화된 위상과 역할 수행에 대한 필요성 증가
  - 고도화 의제 설정, 정책발굴, 발전계획 승인 등의 공공성 높은 의사결정체로 전환
- **(추진내용)** 정밀한 방식의 1) 지역현황조사 프로세스 진행 및 2) 고도화된 마을의제 발굴 및 3) 발전(비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운영

① 정밀한 방식의 지역현황조사 프로세스 진행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최대 다수의 주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의 자원 조사 및 의제 발굴 진행

  ※ 지역자원조사 ⇒ 소규모 주민 워크숍(욕구조사) ⇒ 의제발굴 공론장 ⇒ 의제분석
- 전문가 분석과 더불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사전기획 단계부터 주민참여 설계 강화
- 마을자원조사, 의제발굴, 공론장 운영 등 리빙랩, 로컬랩 관련 전문가 활용

② 고도화된 마을 의제 발굴

- 소규모 활동형 사업(주민세, 주민참여예산) 위주의 의제에서, 실질적인 지역의 숙원 과제, 정책과제와 연결될 수 있는 의제에 대한 고민 및 발굴

현재		미래
보조사업 발굴 및 사업 실행 〈예시〉 '19년 ○○구 주민총회 결정 사항 – 참여예산 : 34개 사업(동별2천만원) – 주민세 : 40개 사업(동별2천~7천만원)	⇒	**정책 의제 결정, 발전계획 수립** 〈예시〉 – 읍·면·동 발전(비전) 계획 수립 및 승인 – 핵심 정책 의제 발굴 및 확정 * 체육관 건립, 특수학교 신설, 축사 허가, 골목 안전강화, 마을인프라, 교복지원 등 – 참여예산, 주민세 사업결정은 별도 프로세스로 운영 가능 * 보조사업은 주민공모사업운영 및 주민참여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

③ 마을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지역현황조사와 발굴된 의제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향점(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 의제해결을 위한 발전(비전)계획 수립 후 주민자치회·행정이 의무성을 가지고 실행

※ 의제해결을 위한 고도화 방식 : 조례청구, 민간위탁, 공모사업 연계, 자체 예산편성,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화 등

전체 프로세스 개요 (예시)

① 추진 체계 구성	② 마을조사, 의제발굴	③ 의제 선정/비전 의결	④ 발전(비전) 계획 수립	⑤ 사업 시행	⑥ 모니터링
- 주민자치회 내 실무 협의체 구성 - 총괄기획자 선정	- 마을자원조사 - 의제발굴 워크숍 (4~5회 이상)	- 의제선정 및 비전 수립 - 주민총회를 통한 비전의결	- 의제해결을 위한 발전 (비전) 계획 수립	- 민관 협력 실행 협의체 구성 - 계획에 따른 실행	- 결과 공유

사례 :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고도화

[대덕구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자치계획 수립]

- 추진 배경
  -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동 단위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 강화
- 추진 과정
  - 심층 워크숍 과정 진행

1차	2차	3차
마을 비전 수립	마을 의제 발굴	마을 계획 수립
우리 마을 이해하기 마을비전 찾기	우리마을 비전과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연계	발굴 의제에 대한 여론 수렴 함께 만드는 마을계획 기획과 분과 구성

• 추진 성과
  - UN이 정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마을의제 발굴
  - 기후위기, 먹거리, 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의제를 찾아 지속가능성 제고
  - 마을의제 100여 건 발굴

[청양군 청양읍 회전교차로 도입 여부 주민투표]

• 추진 배경
  - 마을에서 진행되는 행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총회 과정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근린 단위 주민자치 실현

• 추진 과정
  - 주민총회 안건 분야 구분(찬반투표/사업별 우선순위)
  - 찬반투표 안건의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사업 건이 해당(십자로 회전교차로 설치, 쌈지주차장 유료화, 원앙공원 주차장 전환)

• 추진 성과
  - 회전교차로 설치와 주차장 전환 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결과를 관련 실과에 전달하였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
  - 주민 다수결 투표에 의한 의견이 사업 진행에 반영된 실질적인 근린 단위 주민자치 실현 성과

참고 2-8 업무 프로세스(예시)

업무 세부 프로세스

* 서울시『로컬랩 추진 프로세스』재구성

절 차	내 용
❶ 사업 추진 체계 구성	**〈절차〉 참여전문가 선정, 계약 → 사업홍보, 민관참여단 구성 → 공동학습 → 동 실무협의체 구성** - (읍면동, 주민자치회) 총괄계획, 자문, 사업 주체 간 소통 - (참여전문가) 마을조사, 의견수렴, 워크숍, 공론장 등 운영전문가 구성 → 자치구에서 자율 선정 → 읍면동과 자치구 간 협의로 배정 - (홍보) 일반 주민 대상 해당 사업 홍보, 참여단 모집 등 조사 병행 - (민관참여단) 공모신청단 중심으로 구성, 필요시 주민과 공무원 추가모집, 15~30명 규모, 행정 20% 이하
❷ 의제 발굴	**〈절차〉 지역자원조사 →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 → 의제발굴을 위한 공론장 운영** ※ 민관참여단 중심으로 수립하되, 주민 설문조사 등 병행 - (내용)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하지 못한 의제 찾기, 공론장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지역문제 제안에 그동안 소외된 주민들의 참여 유도 - (의제 발굴 공론장) 3회 내외 - (운영 모델) 민관참여단 직접운영제, 운영진 주민기수제, 민간위탁운영 등
❸ 의제 선정	**〈절차〉 의제 취합 → 전문가 자문 → 발굴된 의제 대상 주민총회 선정** - (내용) 지역현황과 다양한 의제 분석 및 구조화 후 지역 전문가와 의제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의제 선별, 이후 주민총회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 - (주민총회) 기존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일정과 내용에 맞춰 본 사업 내용을 추가 안건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
❹ 계획 수립	**〈절차〉 의제에 관한 심화 자원 조사 → 사용자 리서치를 통한 심층 발견 → 이해 관계자 지도, 전문가 자문, 실행주체 및 협력자원 확인 → 실행계획 수립 → 주민 공론장** - (내용) 문제 발전과 심화를 통해 얻은 심층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과 실행과제를 수립 - (실행방안) 자체 예산 확보, 동 또는 시·군·구 단위 정책사업과 연계, 민간위탁사업화, 의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조례발안 추진 등
❺ 운영	**〈절차〉 실행 협의체 공동 구성(운영 협약) →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계획에 따른 실행** - (내용) 운영진의 자율관리 이행, 주민자치회의 협력, 행정(자치구, 동)의 지원, 회계/행정처리 등

참고 2-9 주민자치회 고도화 사례(서울시 도봉구)

사업명 :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지역사회 비전수립 및 도봉형 주민자치회 운영」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비전수립을 통한 중·장기 의제 발굴 필요
  -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되는 의제는 단순 민원해결 의제가 대부분으로 실질적 의제 발굴을 위해서는 동별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 설정 필요
- 자치와 마을공동체의 융합을 통한 주민주도적 주민자치의 제도화 추진
  - 마을계획단에서 실행한 숙의와 주민공론장 운영 등 마을공동체사업 영역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공공성의 경험을 주민자치와 통합함으로써 주민이 주도하는 동 단위 주민자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 위탁가능 행정사무의 발굴 및 위탁 필요성 증대
  - 주민 교류공간인 자치회관을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역량 축적으로 추가 행정사무의 위탁 및 특화사업 운영 등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 마련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민자치제도 실행 필요
  - 관 주도의 주민자치제도 실행보다는 주민자치위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실질적인 권한 증대 및 민관협력 강화 도모

추진과정 및 내용

- 효과적인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욕구조사 실시(2019년 5개동)

2019년 주민자치회에 교부된 주민세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지역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자치계획 발굴·수립을 위한 양적·질적 지역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9. 4월 ~ 2020. 1월
- 참 여 자 : 자치마을과,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5개동 주민자치회, 전문기관

- 추진절차

구분	사업제안	의제설정 (총회)	욕구조사 TFT 구성	조사설계 (전문업체 선정)	설문지작성	설문진행	분석	보고서 (공유회)
					FGI운영 (주민실행단)			
일정	4월	6월	7~8월	8월	8~9월	9~10월	11월	12월
사업 주체	자치마을과, 사업단	주민자치회 (총회 의결)	주민실행단 구성	TFT 및 전문기관	TFT 및 전문기관	주민자치회	전문기관	주민자치회

  - 외부용역은 최소화하고 설문진행 및 조사설계를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추진하여 주민자치회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
  - 전문화된 세부 프로세스는 전문기관(노원구사회투자재단,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원구원)과 연계하여 협업 추진
  - 동별 TFT(주민실행단)를 구성하여 조사설계 기본계획 수립, 정량적(지역설문조사)·정성적(FGI 및 주민 워크숍) 지역욕구조사 실시
  - 조사과정 중 도봉구 구정연구단과 협업을 통해 조사설계 등 전문성 강화
- 추진실적 : 욕구조사, 소규모 공론장, 공유회 등 26회 진행, 1,450명 참여
- 추진효과
  - 수요자 중심의 의제발굴을 통한 효과적인 자치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중심의 문제해결능력 강화 및 실행동력 강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협치연구 모델 구현

• 공공성과 효과성 있는 의제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비전수립 추진(2020년 3개동)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숙의·공론장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비전을 수립하여 동 지역사회가 나아가야할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합의하고, 동 비전에 기반한 효과적인 전략 의제를 도출하여 주민자치회 주도 민관협력을 기반한 지역사회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동 단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지역의제를 동 지역사회 비전수립을 통해 상호연계 및 융복합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 강화
  - 서울형 주민자치회 2기 출범과 본격적인 주민세 교부 국면을 맞이하여 소수 한정된 경험에 근거하여 산발적으로 수립되는 자치계획의 공공성과 구체성을 강화

· 지역사회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장기 동 지역사회 전략 과제를 도출(자치활동 선명성 강화)

· 주민자치회 주도 민관 협력적 지역문제 해결기반 마련

- 추진기간 : 2020. 6월 ~ 12월

- 참 여 자 : 자치마을과,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자치회, 동주민센터, 전문기관

수행주체	주요역할
도봉구청 자치마을과 자치지원팀	• 예산 교부 및 관련 세부운영지침 마련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자치팀	• 주민자치회 예산 교부 및 추진인력 간담회 • 연구기관 섭외 및 현장지원
동주민센터 자치마을팀	• 관련 행정 정보제공 및 비전워크숍 참석 • 담당 실무자 배치(1명)
주민자치회	• 민관 비전수립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참석
전문기관	• 지역사회 데이터 취합 및 정리, 동 SWOT 분석 • 비전 워크숍 진행 및 결과 도출, 과정 기록

- 운영방법 : 동단위 민관 비전수립위원회와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협력적 사업 추진

- 추진절차

단계	절차	핵심내용	추진일정
Ⅰ	기반조성	• 비전수립 자치구 민관 TFT 구성 및 운영 – 사업단, 자치마을과, 동 민관 관계자, 연구기관 ※ 연구기관 섭외 및 TFT 사업설명회 사전 진행 • 총괄 운영계획 수립(자치구 행정) – 사업계획서 및 민관위탁금 교부 • 동 비전수립 사업설명회 – 사업취지 안내 및 사업 공감대 확인 – 1단계 6개동 중 3개동 주민자치회 공모 진행 • 비전수립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 동행정의 적극적 참여 요청(설명회 및 간담회) – 비전수립 실무자 업무분장(민+관 각 1명) – 비전수립위원회 구성(동행정,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시·구의원 및 지역주민 등 30명 이상)	4월~ 11월
Ⅱ	동 비전수립 워크숍	• 비전수립 워크숍 운영(6회기 이상) – 지역사회 데이터 및 자료 취합 및 정리 – 참여 주민 교육 및 간담회 – 핵심관계자 인터뷰 및 소규모 공론장 운영 –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취합	11월~ 12월
Ⅲ	비전수립 공유회	• 비전수립위원회 중간보고회 – 전략과제 도출 및 핵심의제 수립 및 합의 • 비전수립위원회 최종보고회	
Ⅳ	비전수립 선포식	•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비전수립 선포식 • 차기년도 의제수립에 핵심의제 반영	

- 기대효과

  · 동비전 수립을 통한 자치계획의 공공성과 구체성 강화

  · 주민자치회 위상과 권한 및 대표성 증대

  · 민관협력적 문제해결 능력강화 및 동단위 주민참여기반 활성화

• 주민주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도봉형 주민자치회」 모형 구축

구분		기존 주민자치회	도봉형 주민자치회
의제	의제수	• 10 ~ 16개 (분과별 평균 2개)	• **3 ~ 8개** (분과별 평균 1~2개)
	의제 발굴	• 환경개선 사항, 주민 민원사항 등을 조사하고 단년도 의제개발 • 기존축제를 의제 사업으로 전환 • 예산 상한액에 맞춰 의제개발	• **마을의 비전수립** – 의제개발비, 운영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용역, 주민 욕구 조사 등을 실시하고, 마을의 비전과 목표 수립 • **체계적인 중·장기 및 단기의제 발굴** – 비전실행을 위한 중·장기 및 단기의제 구분 – 단순 행사(축제)성 사업 지양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 신청
	의제 유형	• 단순 민원해결 사업, 단기 사업, 축제성 사업 등	• 주민세 환원금 : 마을비전 수립 및 중·장기 의제 • 시참여예산, 구참여예산 : 단기 의제
분과	분과수	• 5 ~ 8개	• **3 ~ 4개**
	분과 구성	• 마을계획단에서 운영하던 분과가 주민자치회 분과로 승계 • 한번 생성된 분과는 관습적으로 다년간 유지 • 주민자치회 내 소규모 그룹이 형성되어 분과 간 칸막이 현상 발생	• **핵심의제 실행 분과** – 핵심의제별로 분과 수를 축소하고, 인력 및 예산 선택과 집중 • **격년제 분과** – 숙의과정을 갖기 위해 격년제 분과운영 – 분과원 중 1/2은 1년 동안 의제개발, 분과원 중 1/2은 1년 동안 의제실행에 역량 집중, 내실있는 사업 추진 ※ 상기(안)은 예시 사항으로 동별 특성 고려 복수선택 및 별도분과 운영 가능
총회	시기	• 6 ~ 7월	• **6 ~ 7월 또는 9월**
	추진 방법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서울시 제출시기(8월)에 맞춰 6~7월 주민총회 개최	• 6 ~ 7월 개최 – 마을비전 수립기간 단축 등으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참여 가능 시 6 ~ 7월 개최 • 9월 개최 – 마을비전 수립을 위한 역량집중을 위해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미참여 가능(주민세 환원금만 신청) ※ 주민세 환원금 서울시 제출 : 10월

- 기대효과
  -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 사업실행형 주민자치회에서 의사결정형 주민자치회로의 형태 발전
  - 소규모 다수의 분과 운영이 아닌, 핵심의제 위주, 공론장 운영 위주의 고도화된 분과 구성 운영

•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회-자치회관 민간위탁 추진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위탁사무 : 자치회관 공간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관 공간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시설 유지관리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신규, 폐지, 변경 등) • 강사모집, 계약, 만족도 조사 등 • 수강생 모집, 등록, 관리 등 • 수강료 징수·집행, 사용내역 공개 등

- 기대효과
  - 주민 교류공간인 자치회관을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도모
  - 자치회관 위탁 시범운영 역량 축적을 통한 추가 행정사무의 위탁 및 특화 사업 운영으로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 마련

〈2〉 주민자치회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추진 배경

- 지역 인구 감소, 지역경제 쇠락, 지역 간 불균형 등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할 필요성 지속 제기
- 주민자치회의 지역 내 위상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혁신 및 경제 활성화 역할 기대
- 지역 내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공적 자산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필요 증가
  - 도시 및 지역재생, 생활SOC, 공공공간 운영, 마을돌봄, 마을기금 등 포괄적이고 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지역 대표성을 가진 공적사업주체 필요성 대두

추진 방안

- **(추진 방향)**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의사결정기구로써 상위 역할을 수행하고, 연계 사업 수행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수행
  - 주민자치회 연계 조직으로서 주민총회로부터 운영 및 설립에 대한 승인을 통해 공적인 기반 확보
  - 법인정관 및 주민자치회 내규상 주민자치회와의 구조적 연결성 확보
- **(추진 절차)** 주민 참여 기반 지역조사 및 의제 발굴, 주민총회 절차
  - **(의제 발굴 및 선정)** 지역 내 의제 중 하나로써,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에 대한 설립 필요 및 역할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주민 총회를 통한 주민 동의 과정 필요
  - **(지역 자원 조사)** 지역 내 사업실행법인의 필요성과 역할,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작업 필요
  - **(법인 설립 절차)** 법인 모델 결정, 설립 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 창립 총회, 설립인가 신청 등
  -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변경)** 연계 법인에 대한 정의, 인정 기준 등에 대한 규정 반영

① 의제발굴 및 선정	② 지역자원조사	③ 법인설립절차	④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 지역 의제로 발굴 - 주민총회 안건 상정 및 동의	- 마을자원조사 - 연계 법인의 역할 정의 - 비즈니스모델 발굴	- 법인 모델 결정 - 설립동의자 모집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 설립인가 신청	- 연계 법인 정의 - 연계 방안 규정 - 인정 기준에 대한 규정

사업실행법인의 활동 범위와 지역혁신주체로서의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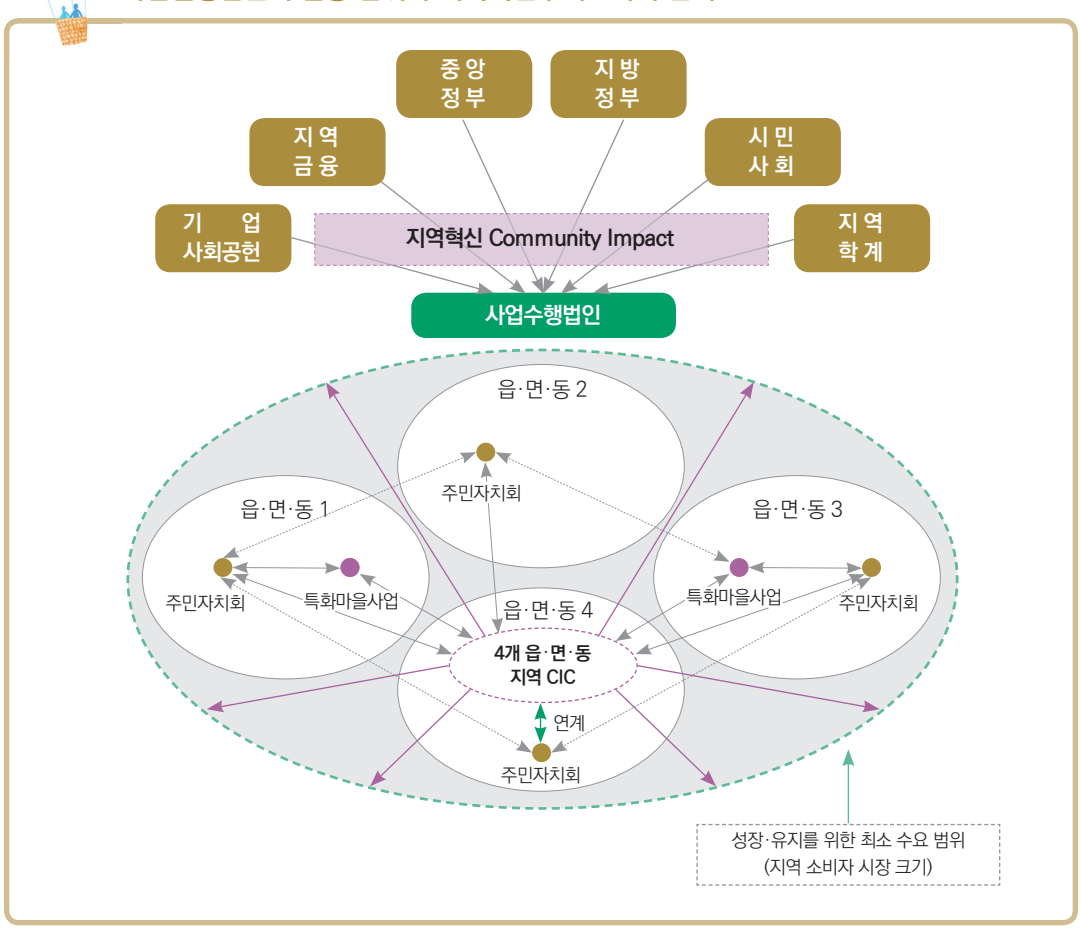

최소 1개 읍·면·동 지역 활동 범위를 시작으로 성장과 유지를 위한 최소 수요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범위까지 확장하여 조직의 사업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활동함. 향후 외부 자원(기업후원, 지역금융, 정부지원, 시민사회, 학계)들과의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활성화 사업 수행

사업실행법인의 법적, 제도적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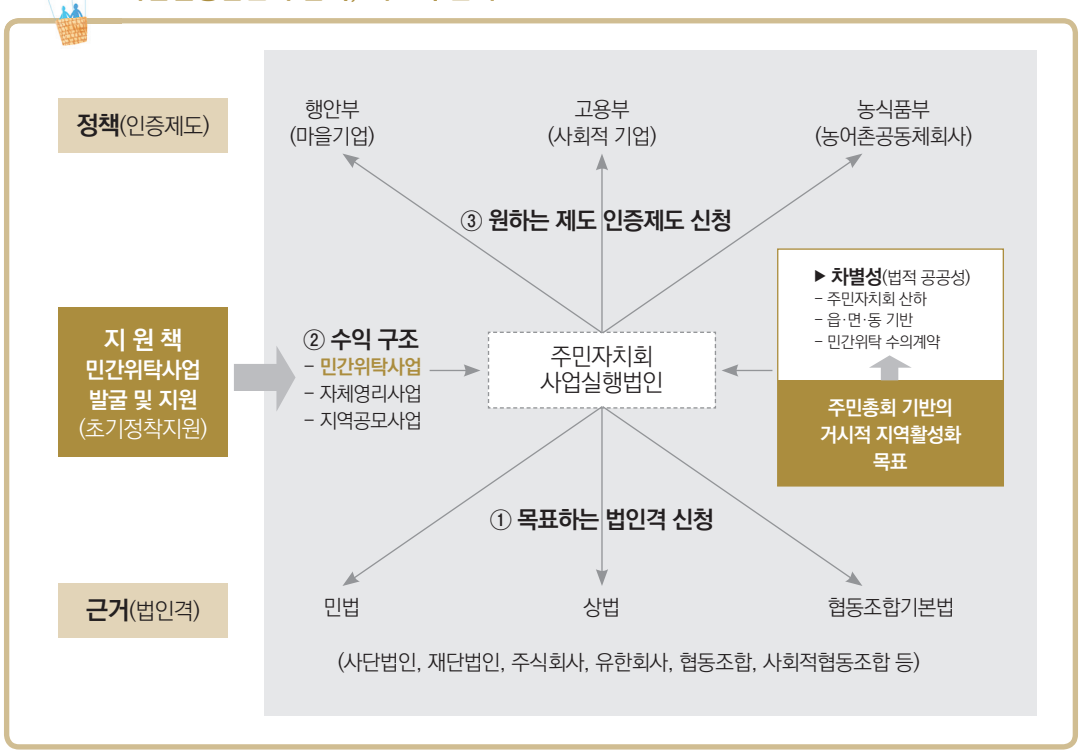

추진 가능 사업

- 지역의 환경 및 물적, 인적 자원의 상황에 따라 지역별 추진 가능 사업은 상이할 수 있음
- 보편 적용 가능한 사업 아이템이 아닌, 다양한 지역 사례 분석 및 지역 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아이템 발굴 필수

공동체·복지 분야	도시·지역 재생 분야	사회경제적 분야	지역금융 분야 (마을기금)
• 마을택배사업 • 커뮤니티케어서비스 • 일상 돌봄 서비스 • 공공서비스	• 마을 태양광발전사업 • 소규모 주거지 재생 • 사회임대주택 관리 • 커뮤니티센터 관리 • 지역거점개발사업 • 지역 유휴공간 개발	• 마을카페·식당 운영 • 지역특산품 판매·유통 • 지역생산자협동조합 • 공동구매·판매	• 지역개발 투·융자 • 지역상권 활성화 융자 • 생활SOC 민간 투자 • 금융복지상품 운용 • 지역주민 금융교육
•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 시흥시 동네관리소	• 서울 CRC •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 행안부 마을기업 • 농식품부 농촌공동체회사 • 고용부 사회적기업	• 지역금융중개기관(CDFI)

사례 : 경기도 시흥시 동네관리소

• 추진 배경
-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즉각적·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 기능
- 노후 일반주택지역의 마을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
  ·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주택지역은 마을관리 거점이 없어 안전, 노후주택, 쓰레기, 복지서비스 등의 사각지대로 존재
- 독거노인, 장애인 등 대상으로 간단 집수리 등 주거복지 지원
  · 원도심 내 일반주택지역에서 수도꼭지, 전등, 방충망 교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단집수리 수요는 많으나,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 배제
- 폐가·공가, 유휴공간을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으로 전환
  · 주민들이 운영주체 형성과 공간 발굴 + 최소한의 시 재정지원(리모델링비, 사업비, 운영비) ⇒ 주민주도 공간 및 사업운영

• 사회적 가치 구현 주요 성과
- 동네의, 동네 사람들에 의한, 동네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
  · 폐·공가, 유휴공간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재탄생과 함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선도모델로 평가
- 주민 주도의 공유경제 기틀 마련
  ·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한 간단집수리를 비롯해 공구무상대여, 무인택배, 봉사단운영, 환경정비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주민이 직접 발굴·운영
-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장' 마련
  ·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동네관리소 사업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

- 사업시행 전후 비교

시행 전	시행 후
• 일반주택지역 안전, 쓰레기 등 주거환경관리 사각지대 방치 • 간단한 고장 방치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취약하고 고립생활 •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진 원도심 노후 일반주택지역 주민 • 일할 능력 있지만 일자리(일거리)가 없는 경력단절여성과 60대 기술보유자	• 주민주도 마을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원도심 일반주택지역 • 주민주도 간단집수리를 매개로 한 방문 돌봄으로 주거복지 증진 • 마을공동체 활동과 돌봄, 공유경제 위한 작은 거점 운영으로 활력 증진 • 간단집수리, 마을환경개선, 돌봄사업, 주민공간운영 등 공공서비스 통한 마을 일자리(일거리) 창출

참고 2-10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설립 사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 **(법인명)** 당진시 주민자치 꿈꾸는나무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 동기)** 주민자치 고도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고 소비하는 모델 구축에 대한 필요 존재
  - 신평면은 공동육아에 대한 지역 니즈가 절실했고, 당진시 여성·청소년 자치센터와 연계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 설립 필요
- **(사업 모델)** 지역주민 권익 및 복리증진사업(공동육아, 교육, 공공서비스 등), 지역재생사업(집수리, 주택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너지 자립지원 등)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 **(법인명)** 창평면 주민자치사회적협동조합
- **(설립 동기)** 창평면 주민들의 화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해당 주민총회 의제를 담양군에 제안, 담양군 차원에서 생활SOC사업과 연계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인 설립 필요
- **(사업 모델)**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위탁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다함께 돌봄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 **(법인명)** 농소3동 주민자치사회적협동조합
- **(설립 동기)** 노령인구 증가율이 울산 내 1위 지역,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 거주자, 젊은층과 노년층과의 마을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결속할 사업 필요
  - 달천지역에 있는 편백나무숲을 활용하여 지역 수익 사업화하자는 필요 존재
- **(사업 모델)** 숲체험 프로그램 사업, 편백나무 가공 및 판매, 로컬푸드 활성화 및 식품제조·판매 사업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 **(법인명)** 매화클러스터 주민자치사회적협동조합
- **(설립 동기)** 원도심 낙후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동네관리소와 주민자치회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마을관리 기업(공공서비스 실행체계)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 모델)** 시흥동네관리소 사업 법인화, 매화산단 관리위탁 운영, 구도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위탁

6. 주민친화형 주민센터 공간 개선

추진목적

- 주민 주도 및 숙의과정(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센터 유휴공간 중심으로 공동체 공간을 조성 (주민 자율관리방안 병행수립)하여 마을자치 거점 마련

〈서울 성동구 응봉동 사례 : 사용하지 않는 지하 직원식당을 활용하여 주민 카페 공간으로 조성〉

기존 청사 리모델링과의 차별성

자율관리

워크숍

"공간이 필요한 주민이 설계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 공유공간 기획자 등이 촉진자 역할 수행"

추진방식

- 기획·설계부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사전기획 및 주민참여 강화
- 전 과정에 걸쳐 주민·공무원·전문가(건축가, 공유공간 기획자* 등) 협업
  * 복합문화공간,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공유공간 직접 설계 및 운영 경험자
- 자율운영계획 수립 후 공간설계 또는 병행 추진

역할분담(안)

시·도	시·군·구/읍·면·동	전문가
- 공간개선 총괄 - 가이드라인 제시 -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등	- 공간설계 추진계획 수립 - 참여전문가 선정·계약, 공사 발주 - 민·관참여단 운영, 모니터링 등	- (MP) 공간설계 기획, 이해관계자 의견조율, 시공감리 등 - (공간기획자) 기초조사, 공간기획, 운영체계/자율관리방안 마련 등 - (건축가) 기초조사, 공간기획 및 구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업무 프로세스(안)

☞ 주민 수요에서 시작, 주민 자율운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 숙의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
- 주민 발굴 및 학습, 주민 필요에 맞는 공간설계, 주민 자율운영방안 마련

단계	내용	착안사항	비고
[1] 자치계획 수립	- 공간의제	-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공간의제로 마을활력소 사업 제안	주민 수요
[2] 추진체계 구성	- 민·관참여단 구성 - 전문가 선정 (건축가, 공유 공간 기획자, MP) - 실무협의체 구성	- 민·관참여단(사업의 핵심주체) 구성 시 자율운영 희망자, 읍·면·동 주민센터 내 타 시설 입주자, 프로그램 이용자 등 포함 - 참여전문가 과업 주요내용 ※▲**(공통사항)** 기초조사(주민센터 현황, 관계자 요구 등), 공간 기획(용도, 프로그램 등) ▲**(공유 공간 기획자)** 운영체계 및 자율관리방안 (인력, 비용, 역할, 이용규칙 등) ▲**(공간설계 건축가)** 공간 구성, 인테리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민 발굴 및 공동학습
[3] 계획 수립	- 자율운영계획 수립 (운영진, 운영 규약 및 제도개선 논의 포함) - 공간개선방향 설정 - 공간 기획 및 설계안 확정 - 기본 및 실시 설계	- 자율운영(안)*과 공간설계(안) 도출을 위해 각각 수차례 워크숍이나 사례탐방 등을 실시하고, (안) 마련 시 주민설명회 시행 * 운영주체, 운영방식, 운영시간, 운영프로그램, 비용조달 방안 등 포함 - 주민자치회 연석회의를 통해 운영진과의 관계 설정* 등을 논의하고 필요 시 주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주민 아이디어 수렴 * 마을활력소가 공간적으로 자치회관과 거의 일치하고 자치회관 운영권한은 주민자치회에 있으므로 주민자치회의 운영진에 대한 권한 위임이나 공유를 제도화할 필요 **(사례 – 방학3동)** 주민자치회 내 마을활력소 분과를 설치, 마을활력소 대표가 주민자치위원이자 분과장	민·관참여단 워크숍, 착수보고, 주민설명회 등
[4] 사업 시행	- 최종도면 납품 - 공사 발주 및 계약 - 시공 및 감리	- 설계방향에 맞게 시공되는지에 대해 행정기관·건축가·민·관참여단 공동감리 시행	
[5] 운영	- 운영협약 - 개장식	- 운영협약 내용으로 운영진의 자율관리 이행, 주민자치회 협력, 행정(시·군·구, 읍·면·동)의 지원, 회계·행정처리 등 포함 - 자치회관 운영세칙에 마을활력소 운영방안 등 포함	

사례 : 경상남도 경남형 생활 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

• 추진 배경
- 주민자치센터 시설 노후화 및 복합 커뮤니티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를 반영한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소통공간 마련 및 주민 편익 도모
- 기존 민원행정 처리 공간인 주민센터를 주민 중심, 주민자치·주민자치 중심 공간으로 혁신

• 주요 내용
- 민원행정 처리 공간에서 주민(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로 개선
  · 업무 절차와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공간 배치
  · 작은 도서관, 열린 카페, 공동 육아방, 주민 회의실 등 주민 중심의 열린 공간 및 언제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조성
  · 협소한 민원대기 공간과의 분리를 통한 독립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의 주민 친화적 쉼터 마련으로 주민과의 소통 확대
- 주민자치 중심 공간 조성
  ·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
  · 주민총회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공간
  ·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자치공간 자율 운영·관리
- 주민복지 중심 공간 조성
  · 귀농·귀촌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복지·보건·일자리 사업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지역복지 중심 공간으로 개선
  ·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 찾아가는 복지 업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공공건축가 도입으로 주민친화형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익 도모
  · 기획·설계부터 감리, 시공, 준공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 주민, 공공건축가, 읍면동 협업하여 참여
  · 주민 수요에 맞는 공간 설계,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반영, 주민 자율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 직접 참여
  · 주민 수요에 맞는 공간 설계를 위하여 사업별 공공건축가 지정하여 사업 시행 전부터 주민친화형 공간 조성을 위한 협의(자문) 추진

※ 사업별 5회 이상 간담회, 주민이 직접 설계·배치에 참여

민원행정 처리 공간	▶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공간** – 작은 도서관, 열린 카페, 공동 육아방, 주민 회의실, 커뮤니티 시설 등
민원 대기 및 유휴공간 (공간 협소·노후화 등)	▶	**주민자치 중심 공간**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주민복지 중심 공간** – 사회복지 인력 증원, 간호사 배치 등 – 귀농·귀촌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일반 건축가 시공	▶	**공공건축가 도입하여 공간 개선** – 도민·전문가·공무원 협업체계 구축 – 주민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간 개선

내용(예시)	사례	
	변경 전	변경 후
• **민원행정 처리 공간에서** **⇒ 주민(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로 개선** – 업무 절차와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공간 배치 – 작은 도서관, 열린 카페, 공동육아방 등 주민 중심의 열린 공간 및 공유 공간 조성	 밀양시 초동면 양산시 양주동	 밀양시 초동면 양산시 양주동
• **민원 대기 및 유휴공간을** **⇒ 주민자치 중심 공간** – 주민자치(위원)회 사무 공간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공간 조성 **⇒ 주민복지 중심 공간으로 개선** – 지역복지 중심, 주민친화형 쉼터로 개선	 김해시 장유1동 고성군 마암면	 김해시 장유1동 고성군 마암면
• **기획·설계부터 감리·시공·준공까지 전 과정에 주민, 공공건축가, 읍면동 협업** – 주민 수요에 맞는 공간 설계, 주민 설명회 개최, 설문조사, 자율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 주민의 직접 참여	 진주시 명석면(전) 진주시 상봉동(조감도) 고성군 회화면(협업회의)	 진주시 명석면(조감도) 거제시 능포동(협업회의) 산청군 단성면(협업회의)

사례 : 인천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 추진 배경
- 주민들이 자유롭게 지역현안을 고민하고 소통할 공간 부족
  · 읍·면·동 단위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는 대부분 민원응대 및 자치프로그램 교실 등으로 역할 중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등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따라 주민 참여형 자치공간 조성 필요

• 주요 내용
- 사업 기간 : 2020.1.~12.
- 사업 대상 : 10개 군·구,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250백만원, 군·구비 250백만원)
- 사업 과정

민관협의체* 구성 및 숙의 ⇒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확정 ⇒ 설계 및 공사 ⇒ 사업종료 및 정산

* 민관협의체란? 민(주민자치회, 일반주민 등)과 관(동장,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임시협의기구

- 주요 내용 :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재배치 및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공용공간(사무공간, 교육공간, 소통공간) 마련
- 사업성과 : 주민공용공간 29개소 마련
  · 주민사무공간 18개소, 교육(회의)공간 7개소, 소통공간 4개소

[참고] 주민참여형 공간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사업 추진

(기존) 市계획에 따라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던 '탑-다운(Top-down)' 방식

(변경)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채택

☞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목표 달성

*탑-다운(Top-down) vs. 바텀-업(Bottom-up) 사업방식 비교

구분	탑-다운(Top-down)	바텀-업(Bottom-up)
개념	市 계획에 따라 매뉴얼대로 군·구(읍·면·동)에서 사업 추진	市 지원범위 내에서 군·구(읍·면·동) 현장 여건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체 숙의과정을 통해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장점	- 사업 추진 속도가 빠름 - 사업 담당자 계획에 따라 일률적 성과 도달	- 현장여건에 따라 유동적 대응 가능 - 사업결과에 따른 현장의 만족도 향상
단점	- 사업 중간에 계획 변경이 어려움 - 현장 여건 고려 없이 추진 시 결과에 따른 만족도 저조 우려	- 단계별 검토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림 - 숙의과정에서 민·관 입장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 발생 우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공간 지원〉

-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참여예산 제도 확대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 조성
- 단순 공간 조성의 의미를 넘어 컴퓨터 등을 배치, 실질적인 사무공간 기능 강화

전			
후			
내용	주민사무공간	주민교육공간	주민회의공간

〈유휴공간이 '주민사랑방' 등 주민공용공간으로 탈바꿈〉

- 사무/교육공간 외 옥상정원, 숲속카페, 공유부엌 등 주민 공용공간의 환경개선 및 '주민사랑방'을 조성하여 주민 누구나 지역 현안을 고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전			
후			
내용	옥상정원(1)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4동]	옥상정원(2)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공유부엌 [인천시 계양구 작전2동]

• 향후 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주민공용공간 72개소 조성 완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추진계획	20개소 (실적 29개소)	25개소	27개소	총 72개소

※ 인천시 주민자치센터 내 유휴공간 확보 문제 및 노후 자치센터 신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추진

참고 2-11 주민친화형 주민센터 공간 개선 사례

개선 내용	사례	
	변경 전	변경 후
1.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적 공간 개선으로 주민 공유 공간 마련 • 활용성이 떨어지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공간으로 개방 * 사례 : 성동구 성수1가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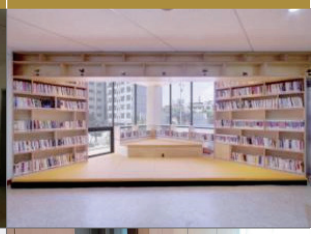
2. 참신한 아이디어의 적극적 채택 • 동장실 개방, 주민회의 공간 제공		
3. 주민, 전문가의 참여와 협업 •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전문가와 주민, 공무원이 함께 참여		
4. 마을 인프라와 연계하여 공간 확장 • 인접한 마을공원과 동 주민센터를 연계하고, 연결공간에 갤러리 조성 * 상단 사례 : 노원구 공릉2동 • 인근 폐가와 공터를 장기 임대하여 마을문고 조성 * 하단 사례 : 구로구 오류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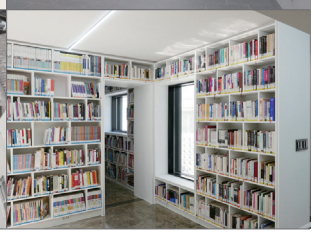

참고 2-12 주민친화형으로 개선된 공공 유휴공간 사례

※ 주민센터를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개선 시 참고

개선 내용	사례	
	변경 전	변경 후
1. 민주주의 플랫폼 「금천 1번가」(서울시 금천구) • 유휴건물(舊 소방서 건물)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공간으로 재구성 • 플랫폼 온오프 공간, 협치 오픈테이블 개설, 경청마루·도서관 등		
2. 예술을 공유하다 : 1797 Co-Art 팽나무 하우스(부산시 동래구) • 방치된 유휴 건물을 지역 청년예술가와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Co-Art 공간 창출과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 • 공유주방,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영화·공연·전시 공간 등		
3. 소소한 일상생활 속 혁신을 꿈꾸는 「도시민청년리빙랩」(경기도 시흥시) • 비어있는 종교시설(교회)를 활용하여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구축, 청년 소통 및 지역 문제 해결공간으로 활용 • 개방형 협업공간, 북카페, 쉼터, 회의공간 등		
4. 아름다운 둥지, 책으로 만나는 미래 (강원도 동해시) • 방치된 유휴 건물(구 주민센터 → 고래화석 박물관)을 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문화예술창작공간,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공간, 도서관 등		

2 주민자치 지원 체계 개선

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및 역할 강화

기본방향

-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읍·면·동장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
- 지역주민, 이·통장, 지역 자생조직 등 민간과의 소통역량 강화

기본방향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역량이 우수한 자가 읍·면·동장에 배치됨으로써 민·관 협치와 사업 시너지 효과 창출
- 읍·면·동장 공개모집 후 주민이 신청자 심사 및 적임자를 추천하고 자치단체장이 이를 반영하여 임명
  - (직위 공모)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관내 공무원을 읍·면·동장으로 충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주민추천제로 추천받은 읍·면·동장의 경우 인사고과 상 인센티브 부여 가능

사례 : 고성군 고성읍

- 임명 절차 : 내부 공모(관내 6급 대상, 6명 신청) ▶ 고성읍장 주민추천대표인단 구성* ▶ 온라인 투표(선관위 제공) ▶ 고성군수 임명
- 선출 절차 : 후보자 설명회 ▶ 후보자 홍보물 배포 ▶ 모의 온라인 투표 ▶ 후보자 정견발표 ▶ 온라인 투표**

* 200명 모집 1,950명 신청(약 10:1), 무작위 추첨 선정(청년 40명, 성비율 반영)

** 핸드폰 문자메시지 방식, 최다 득점자는 투표자 133명 중 49표(35.51%) 획득

사례 : 충남 논산시

- 임명 절차 : 내부 공모(관내 5급 대상, 4개 面 11명 신청) ▶ 읍·면·동장 시민추천위원회 구성* ▶ 시민추천위원회 개최 ▶ 논산시장 임명
- 선출 절차 : 후보자 공모 ▶ 시민추천위원회 구성 ▶ 후보자 결정 ▶ 시민추천위원회 개최 ▶ 후보자 정견 발표 ▶ 시민추천위원회 투표

* 각 읍·면·동별 50명 내외 모집, 320명 신청, 공개모집(성비율·연령 반영)

- (개방형 공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 인력을 읍·면·동장으로 충원

사례 : 의성 안계면

- 응시자격 :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 등에 1년 이상 경력자 ※ 성별 및 주거지 무관
- 임용직급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개방형5호)
- 시험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시험 → 주민심사*

  * 직무수행계획서를 주민에게 발표 후 심사
- 최종선발 : 주민 심사평가 → 의성인사위 순위 결정 → 군수 대상 결정('19.7월)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읍·면·동장 직렬 다양화 및 임기 보장

- 읍·면·동 지형, 특성에 맞는 자치계획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렬(농업직, 사회복지직 등) 배치
- 안정적인 주민자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임기 보장

2.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임기 보장

기본방향

- '주민자치회' 구축과 운영 지원을 위해 전국 읍·면·동 당 1명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 및 최소 임기 보장

  * 전문직위 지정(전문관),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주요내용

- 전문직위(전문관) 선발·우대
  -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직무능력, 전공,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정절차 : 전문관 공모·신청, 심의위원회 선정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 지정
  - 전문관 지정 : 3년 이상(필수보직 기간)
  - 전문직위 수당 지급, 능력개발 우선권, 가산점*, 성과상여금 우대, 향후 희망전보, 포상 등

    * 2년 초과부터 1년 단위로 0.6점 가산되어 최고 2.4점까지 부여(6년)

전문직위(전문관)·임기제공무원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분야별 보직관리/전문직위 운영/임기제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 채용 · 기간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

    * 기준인건비 증액분 활용
  - 근무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사례 : 임기제 공무원 채용

- 당진시
  - ▶ 임용 분야 : 마을자치지원관
  - ▶ 인원 : 15명(총괄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읍·면·동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 임용 기간 : 최초 2년 계약(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전시 대덕구
  - ▶ 임용 분야 : 주민자치 전문가
  - ▶ 인원 : 1명(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 임용 기간 : 최초 2년 계약(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서울시 서대문구
  - ▶ 임용 분야 : 주민자치
  - ▶ 인원 : 12명(주민자치사업단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1, 라급1, 마급1/읍·면·동 마급 9)
  - ▶ 임용 기간 : 최초 1년 계약(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인천시 연수구
  - ▶ 임용 분야 : 주민자치
  - ▶ 인원 : 2명(주민자치사업단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1, 라급1)
  - ▶ 임용 기간 : 최초 1년 계약(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교육지원 체계 확립

사례 : 담양군 주민자치회 교육지원

• 추진 배경
- 자치분권시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주민의 자치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지역특색 및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주민자치 이해 확산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상하반기 2회)
  · 대상/예산 : 500명(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자치연합회)/2,000천원(군비)
  · 내용 : 주민자치의 필요성, 주민자치회 역할 등 공동체 활성화 가치공유, 주민자치 사례 및 우리 군 적용 방안 교육 등
- 주민자치대학 운영(2020.3.~12.)
  · 주민자치위원, 주민, 공무원 등 대상 주민 기본 교육과 전문가 육성 교육 추진
  · 운영 개요
    ▸ 대상/예산 : 300여명 * 주민자치회 위원, 통합강사, 공무원, 지역주민 등/18,400천원
    ▸ 교육 방법 : 교육과정별 자체 및 위탁교육
    ▸ 주요 내용 : 주민자치대학(기본/심화), 배달강좌 등 운영
- 주민자치 온라인교육 플랫폼「주민자치 온라인 교육센터」
  · 구축일 : 2020.8.~
  · 대상 : 주민자치 위원 및 주민, 공무원 등
  · 구축 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내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센터 구축
    * 이러닝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한 무상임대
  · 교육 내용 : 행안부 등에서 제공하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및 교육강좌 등
  · 운영 방식 : 회원가입을 통한 이용으로 진도 및 교육이수 현황 관리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자치의식 확산 및 역량 강화** - 상반기 : 2020.1.30. / 주민자치 필요성과 이해 - 하반기 : 2020.11.4.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의 의미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대학 및 배달강좌	**대상자 맞춤형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주민자치 캠페스 운영** - 일시 : 2020.6.12.(금) /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 주민자치 배달강화** - 봉산면 : 2020.1.9. /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 - 대덕면 : 2020.11.17. / 자치분권의 비전과 과제	 배달강좌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센터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교육센터 구축** - 담양군 홈페이지 내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센터 구축 - 담양군에 맞는 주민자치 교육영상 추가 제작 : 8편 - 기초교육, 실무교육, 심화교육 등 세분화	 온라인 교육센터

사례 : 금천구 주민자치회 교육지원

- 주민자치 실무자 교육
  - 일시 : 2019.7.9.(화) 14:00 ~ 17:00
  - 대상 : 동별 간사 주민자치 담당 주무관, 사업제안자 및 참여자 55명
  - 내용 :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소개 및 예산편성 지침 보조금시스템 활용법
  - 효과 : 동주무관과 주민 대상 교육으로 실무능력 및 소통 · 협업 능력 향상
- 주민자치위원 보수교육
  - 일시 : 2019.7.16. ~ 7.20. 기간 중 3시간 3회
  - 대상 : 금천구 주민자치위원 312명
  - 내용 : 자원조사방법, 주민자치회 지속발전 방향 모색 등
  - 효과 :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심화고찰
- 주민자치 분과교류회
  - 기간 : 2019.7.23. ~ 25. / 8회차 125명 참가
  - 대상 : 동별 사업제안자, 분과장 및 주민자치위원
  - 내용 : 분야별 사업 정보 교류, 의견교환
  - 효과 : 타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 사업 정보 교환
- 주민자치학교
  - 기간 : 2019.11.4. ~ 11.16. / 8회차 167명 이수
  - 대상 : 만 19세 이상 금천구 주민
  - 내용 : 주민자치회 이해, 활동사례, 자치계획수립 워크숍 등
  - 효과 :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들에게 주민자치회 이해도 제고
- 감사실무교육
  - 일시 : 2019.1.29. 14:00 ~ 16:00
  - 대상 : 동별 주민자치회 감사, 간사, 동행정 주무관 동자치지원관 50명
  - 내용 : 감사대상과 기법,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 효과 : 주민자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규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찾아가는 조례교육
  - 일시 : 2020.1.13 ~ 1.30. 중 10회
  - 대상 : 각 동 주민자치위원 261명
  - 내용 : 대한민국 법체계 이해 , 주민자치 조례 내용 설명
  - 효과 :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이해 제고

사례 : 도봉구 주민자치회 교육지원

• 추진 배경

–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내용(주민자치회 사업의 취지와 역할, 동 현황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가 초청특강으로 주민자치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장하는 주민자치회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기본교육 : 주민자치학교

· 교육 기간/대상 : 2020.11.9.(월)~11.21.(토) / 주민자치회 신규동(洞) 위원 희망자

순서 (시간)	주제	세부내용
1강 (120분)	주민참여 정책의 흐름과 의미	• 마을(자치)활동 경험 나누기 • 마을 주인으로서 주민의 권한, 주민자치 •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취지와 배경
2강 (120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이해	• 주민자치 1단계 프로세스 이해 • 각 단계별 주요역할 안내 • 1단계 주민자치회 추진과정 공유
3강 (120분)	주민자치회와 사람 등	•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이해 •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책무 • 주민자치회 위원의 태도, 관점 및 역량 이해

– 보수교육 : '찾아가는 자치분권특강'(왜 자치이고 분권인가?) 운영

· 교육대상 : 주민자치회 기존동(洞) 위원

연번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1	2020.11.5.(목) 19:00~21:00	도봉1동 주민센터 강당	도봉1·2동 주민자치회 위원
2	2020.11.10.(화) 19:00~21:00	방학3동 주민센터 강당	쌍문1·방학1·2·3동 주민자치회 위원
3	2020.11.17.(화) 19:00~21:00	창5동 주민센터 강당	창2·4·5동 주민자치회 위원

사례 : 부천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 추진 배경
  – 정기적 주민자치 교육 과정 운영으로 주민참여 기반 생활 자치 활성화
  – 상황에 부합하는 분야별 맞춤교육으로 주민자치회 저변 확대

〈단계별 자치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기본교육	심화교육	직무교육	현장교육
주민(마을)자치회 위원 위촉 전 사전교육 및 일반 주민 교육	주민(마을)자치회 위원 맞춤형 심화교육	주민자치 공모사업 진행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직무역량 향상교육	주민자치회 위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 주민자치 의미·역할 • 주민자치 운영 실무 문제발굴과 대안탐색	• 회의운영기법, 지역 리더십 교육 • 주민과 소통·갈등 관리방법	• 주민공모사업 회계·운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계·운영	• 주민자치회 우수 지자체대상 벤치마킹

• 주요 내용
  – 주민자치 교육시스템 정기적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정기적 주민자치 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자치분권 활성화 도모
    · 권역별·시간대별 교육으로 주민의 '주민자치' 접근성 확대
    · 시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양방향 소통형 교육 지향
  – 실제 활용 가능한 단계적 역량 향상 교육 실시
    · (기본교육)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한 6시간 필수 사전교육
    · (심화교육) 주민자치회 맞춤형 주민자치 역량 향상 교육
  – 위드 코로나19 시대 교육 환경을 대비한 다양한 교육 방법 운영
    · 코로나19 확산 대비 생활방역체제 연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진행
      ※ '화상회의(zoom 등)' 앱 또는 온라인 영상교육(G-Seek*, 자체영상 등) 운영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사이트(https://www.gseek.kr/main/intro)

〈추진 계획 : 4개 과정 단계별 진행〉

• (기본교육) "주민자치 Walking(걷다)" 과정 : 분기별
  – 주민(마을)자치회 위원 위촉 전 사전교육(6H) : 분기별 1회
  – 분기별 1개 기수 운영 / 각 기수별 3회~4회 교육
  – 주민자치 의미와 역할 등 주민자치 알아가기 기본과정
• (심화교육) "주민자치 Flying(날다)" 과정 : 상황별
  – (공무원) 주민자치 정책 배경 및 방향, 직무 이해 및 역할 : 1회
  – (자치회장) 회의진행, 갈등해결 등 최고 리더의 역할 및 의무 : 1회
  – (자치임원) 현장 리더십 교육, 주민과 소통·갈등 관리 방법 등 : 1회
    ※ 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실제 운영 교육은 주민공모사업 예산으로 개별 진행
• (직무교육) "주민자치 Knowing(알다)" 과정 : 상반기
  – (간사, 분과장) 주민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보조금 관리 회계 교육 : 1회
  – (간사/마을자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분야 회계 교육 : 1회
  – (임원) 주민자치사업 진행 및 다음 연도 사업 발굴에 대한 중간 컨설팅 : 1~2회
• (현장교육) "주민자치 Looking(보다)" 과정 : 하반기
  – 주민자치 선진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 : 1회
  – 거점장소 탐방 후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활용 가능한 자치역량 강화

사례 :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회계 교육

• 추진 배경

– 주민자치센터 회계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 도모

– 업무처리 기준 정립을 통한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 주요 내용

– 주민자치센터 운영 회계실무

· 회계실무 전체적인 흐름과 수입·지출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 집행품의 및 지출·반납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안내

– 회계처리 사례별 업무 처리기준 마련

·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자 처리, 수강료 환불, 카드수납 등

·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하여 Q&A의 형식으로 안내

– 회계 결산 및 검사(감사), 각종 장부 기재 요령 안내

· 결산의 종류(일일·월별·반기), 회계감사 확인사항

·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각종 회계장부* 기재 시 유의사항 안내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물품관리대장, 수입·지출결의서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회계실무 교육〉

- (일시) 2019.6.20.(목) 16:00 ~ 17:00
- (장소)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
- (인원) 97명(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 (내용) 주민자치센터 회계실무 매뉴얼 교육

※ 만족도 조사결과 : 78% 만족(회계실무 도움)

사례 : 금천구 주민자치회 감사 교육

• 추진 배경
  - 2020년 동 주민자치회 감사 실무교육을 통해 사업 및 회계 감사의 역할 및 감사의 범위 등을 이해, 감사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 개요
  - 일시 : '20.1.29.(수) 14:00~16:00
  - 장소 :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1층 경청마루
  - 참가 대상 : 50여명(각 동별 감사 및 간사, 동행정 주무관, 동자치지원관)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 감사의 대상과 기법,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 감사 준비 관련 사항 공유

• 교육 내용
  - 감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 감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감사의 절차 및 방법
  - 사업감사 및 회계감사 내용 및 예시
  - 감사보고서 작성

시간	주요내용	담당 및 강사
14:00~14:10	인사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14:10~15:40	주민자치회 감사의 실제 - 감사의 역할과 감사대상 - 질의응답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과장
15:40~16:00	주민자치회 감사 준비사항 공유	주민자치사업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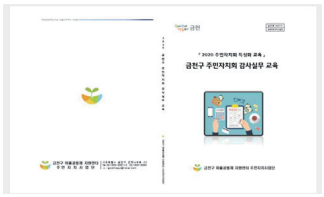

사례 : 대덕구 마을활동가 전문인력 육성

- 사 업 명 : 전문인력 육성
- 추진 기간 : 2019.2.~현재
- 추진 주체 : 대덕구, 동 행정복지센터(협력기관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추진 목적 : 주민자치회 2단계 9개동 확대 추진에 따른 마을자치 활동가 양성, 대덕의 주민자치회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자치 활동 역량의 고도화
- 추진 과정
  - 마을활동가 및 자치인력 pool 확대를 위한 마을자치활동가학교 운영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와 구청이 기획 회의를 거쳐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총 3회)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자치팀에서 교육 진행, 대덕의 공동체 마을활동가 인력풀 확충, 마을과 자치에 대한 융복합교육 추진
  - 주민자치 민간전문가 채용 후 배치(區 일반임기제 1명, 洞 자치지원관 12명)
  - 전 동 확대 추진을 위한 마을활동가 및 자치인력 pool 확대를 위한 마을자치활동가학교 운영(10회 241명)

포스터

마을자치활동가 수료식

마을활동가 자치학교

※ 마을자치 활동가학교 일정

회차	일시	장소	교육내용	강사
1	2월 5일(수) 19:00~21:00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왜? 주민자치가 필요한가?	대학 교수
2	2월 7일(금) 19:00~21:00	구청 중회의실	대덕형 주민자치 운영과정 및 실무① – 자치회 구성부터 분과활동까지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3	2월 10일(월) 19:00~21:00		대덕형 주민자치 운영과정 및 실무② – 의제발굴부터 자치계획실행까지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4	2월 12일(수) 19:00~21:00		동 행정과 주민자치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5	2월 14일(금) 19:00~21:00		숙의공론과 종합토론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6	2월 17일(월) 19:00~21:00		마을자치활동가 비전 발표회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4.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공가' 적용

추진배경

- 자치분권 종합계획('18.9.)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추진
- 지역 내 자치활동 장려, 주민자치회 활동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가' 적용 필요

  * 주민자치회 위원 중 근로자 비율 3.6%

근로기준법 유권해석 결과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주민자치회 및 분과의 공식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공(公)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가 적용 가능 여부

  - 참여 보장 : '공의 직무'에 해당하여 공가 요청 가능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는 바(근로기준과-139, 2010.3.8. 참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법 제28조에 의한 공식업무를 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음

  - 유급 여부 :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적 의무는 없음

'임금 지급'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근로기준과-2328, 2004.5.12. 참조)

조치방향

- 자치분권 종합계획('18.9.)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공가 시 유급으로 하도록 유도

  * '19. 7월 당진시에서 12개 기관 간 근로자의 주민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MOU 체결

    - 행안부, 당진시청, 당진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현대제철 등

공가 사용 사례

-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시 공가 사용(4회, '20년 8·9·10·11월)
  ※ 직장 : ○○연합회 당신시지부
- (경기도 화성시) 동탄7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시 공가 사용(1회, '20.9월), 향남읍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시 공가 사용(1회, '20.10월) ※ 직장 : ○○출장소, ○○어린이집

참고 2-13 '공가' 확산을 위한 노·사·민·정 업무협약 체결

행사개요

- **(행사명)** "주민중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일시/장소)** '19.7.23.(화) 10:00 / 당진시청 대강당
  *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행사 일환으로 추진
- **(참석자)**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당진시장, 당진시의회 의장, 당진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장, 현대제철 대표이사,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논공단지연합회장, 당진시여성기업인협의회장,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장,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장 등 12개 기관 대표
- **(주요내용)**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소속원들이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 및 이와 관련한 공적 활동 시 공가(公暇) 보장 노력

향후계획

- MOU 체결 이후 주요 사례 발굴 및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지원
- 다른 지자체에 사례 전파 및 참여 유도

행사사진

서울신문

2019년 07월 23일 화요일 014면 공공정책

직장인, 주민자치회 활동 공가 인정

고용부 '공의 직무 해당' 유권해석 내놔
행안부, 유급휴가 여부 노사협약 따라
자치회 위원 구성 때 추첨제 도입 권장

앞으로 직장인들은 회사에 공가(公暇)을 내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충남 당진에서 열리는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충청남도·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현대제철 등 12개 기관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교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자가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가할 때 공가를 보장하는 게 골자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한다. 보통 추첨 등을 통해 20~50명가량 선정한다. 하지만 지금껏 공가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은 근로기준법상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공의 직무를 위해 공가를 신청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다만 공가는 법적인 유급휴가는 아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할 때만 인정받는다.

현재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읍면동은 모두 214곳이다.

행안부는 또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할 때 추첨제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고 결혼이민자·귀농귀촌자·청소년 등 지역 내 소수자도 참여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현된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東亞日報

2019년 07월 25일 목요일 J18면 지방

당진시 '주민 자치축제' 열렸다

내달 2일까지 '주민참여 주간' 선포
행안부와 정책박람회 열어 참여 독려

주민자치 우수 사례 모은 전시관엔
벤치마킹 인파 몰려들어 화제

'주민은 참여로! 마을은 자치로!'

충남 당진시가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을 주민참여 주간으로 선포하고 주민자치 축제를 열고 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를 열어 주민자치 참여를 독려하는 업무협약 행사를 갖기도 했다.

가장 인기를 모으는 행사는 행안부가 꼽은 '당진형 주민자치' 우수사례의 하나인 주민총회다. 이 총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선정하는 일을 한다. 시는 주민들이 이 총회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억8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14개 읍면동에 각각 2000만 원씩 돌아간다. 이 예산은 주민들이 가구당 1만 원씩 내는 주민세 총액 6억5000만 원 가운데 일부다. 시는 주민세 총액 가운데 4억 원을 주민자치 사업비로 책정하고 이 가운데 2억8000만 원은 주민총회 사업비로, 남은 1억2000만 원은 주민을 위한 다른 공동 사업에 쓰고 있다.

평소 이렇게 운영되는 주민총회가 주민참여 주간 동안 당진을 찾는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단체 등을 위해 매일 시범적으로 열리고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필요한 각종 사업을 제안하고 이 가운데 토론과 투표를 통해 가장 긴요한 사업들을 결정해 나가는 열린 과정이 고스란히 연출되고 있다.

시는 행안부와 공동으로 23, 24일 주민자치 정책박람회를 열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특강을 하고 다양한 주제의 주민자치 포럼과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한데 모은 전시관에는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인파가 몰리고 있다.

행안부와 충남지역 기관과 단체, 기업들은 23일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공가(공적 휴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의거해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번 협약이 근로자의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분권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에서 주민자치의 큰 이정표가 될 주민 축제와 업무협약식이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주민자치 축제와 정책박람회가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당진시, 지역 기관 단체 기업들이 23일 오전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개막식'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보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 제공

붙임 2 업무협약서 사본

주민중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당진시여성기업인협의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는 주민중심 지방자치 운영체제 확립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국민주권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다음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활동과 근로자의 자치활동 참여 보장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조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측은 다음사항에 대해 서로 적극 지원한다.

가.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 협약 당사자 및 회원이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나.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당진시여성기업인협의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주민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최대한 협조하며,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소속원들의 주민자치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참여 및 이와 관련된 공적 활동 시 공가(公暇)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효력) 동 업무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때부터 발생하며,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4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부분은 당진시가 행정안전부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고 결정한다.

2019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代 정보면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도지사代

당진시
시장 김홍장

당진시의회
의장 김기재

당진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한국노총충남서부지부
의장

HYUNDAI STEEL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이영민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회장

당진시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문은숙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회장 배경열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회장 신대건

5. 행정 지원 체계 구축

시·군·구의 행정체계 개선 사례

• **【인천 연수구】** 마을자치과 주민자치팀에 “주민자치지원단” 구성·운영

구성현황

• **구 성 일 : 2020. 4. 22.**

• **운영인력 : 총 3명(사업단장 1, 단원 2)**

- 단장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1)
- 단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1), 행정9급(1)

• **주요 업무 및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주민자치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 구 및 동 주민자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체계 구축·운영 • 구와 동 주민자치회 간 정례 업무 협의 회의 •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와 구 간 협의체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주민자치학교 기획 총괄(기본교육, 심화교육 등 교육 전반) • 주민자치회 핵심 리더 및 동 관계자 간담회 •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 등
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이를 통한 제도개선 제안 • 주민자치회 사업 주요 자료 아카이빙 및 기록 • 주민자치회 정책(의제) 공유회 및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
주민자치회 지원	• 주민자치회 홍보 및 구성 지원 • 주민자치회 안건 협의, 회의 진행 • 주민자치회 분과 운영 관리 및 지원 • 자치업무 수행체계 기획, 참여예산 및 주민총회 개최 지원 • 동별 워크숍 및 예산·회계 실무 지원

• **【전남 해남군】**

- **(기존 행정적 한계)** 자치 업무와 공동체 업무가 분산되어 부서 간 협업 및 민·관 협치 미흡, 정부 정책의 일방적 수용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응 부족

→ **(조직개편)** “혁신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에 기반한 공동체 활성화 기틀 마련

*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농산어촌

→ **(성과)** 통합적 공동체 정책 마련 등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역량 강화

• **【충남 청양군】**

- **(기존 행정적 한계)** 자치, 공동체 지원 업무 및 농촌산업 업무가 분산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응 부족

→ **(조직개편)** "농촌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공동체 중심의 농산업 전문화 기틀 마련

* 주민자치, 공동체, 농촌개발, 공공급식, 푸드플랜

개정 전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4.1.] [충청남도청양군규칙 제1198호, 2018.4.1., 일부개정]

[별표 2]
군 본청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제5조 관련)

과	팀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팀	8. 지역공동체사업 총괄·기획·조정 9. 지역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운영 10. 지역공동체 현황 관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11. 어르신·아파트공동체 및 마을기업·마을공방 육성·지도감독 12.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 그 밖에 지역공동체·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장	행정팀, 서무팀, 인재양성팀, 전산정보팀	
	교류협력새마을팀	9. 주민자치, 분권정책
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정팀, 부자농촌팀, 원예특작팀, 유통가공팀	
	구기자특화팀, 로컬푸드팀	
건설도시과장	농촌개발팀	
	건설행정팀, 도로팀, 도시팀, 지역개발팀, 주택팀	

현 행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19.]
[충청남도청양군규칙 제1252호, 2019.12.19., 일부개정]

[별표 2]
군 본청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제5조 관련)

• 농촌공동체과장 분장사무

팀	분 장 사 무	팀	분 장 사 무
공동체기획팀	· 공동체정책 총괄 · 주민자치·사회혁신 · 농촌마을만들기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 농어촌 공동체 마을지원 사업 · 농촌 삶의 질 향상, 농촌마을 공동급식 · 과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및 그 밖에 농촌공동체과 업무에 관한 사항	푸드플랜팀	· 먹기리 공급체계 구축 ·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운영 ·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판로개척 ·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 로컬푸드 기획생산 농가조직 운영·교육 · 청양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 소규모농민가공센터 운영 및 로컬푸드 농민장터 관리
공공급식팀	· 학교급식 지원 · 학교급식 특별회계 운영 ·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 및 가격결정 운영 · 식재료 공급·배송 관련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 공공급식 지원 및 공공급식센터 운영 ·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시행 ·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지원 ·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 운영 · 식생활 개선 교육	농촌활력팀	· 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 도농교류 ·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 전통식품육성사업 · 6차산업, 장류·김장·향토 가공산업 · BI입주업체 및 창업업체 포장재지원 · 가공품 유통판로개척사업 · 농산물가공에 관한 사업 · 청양구기자 간기능 개별인정 기능성식품 연구 · 구기자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농촌개발팀	· 일반농산촌개발사업 (마을단위, 중심지)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 신활력 공모사업		

• 농촌공동체과와 사회적경제과 신설, 농업지원과 개편 (농산물 유통가공팀 사무를 농산물마케팅팀과 농촌활력팀으로 분할 개편)

→ **(성과)** 주민자치 및 공동체 강화 및 관련 지역 공동체 관련 농산업 지원 사업 활성화

6. 전문지원기관 운영

추진배경

- 민간전문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초기 주민자치회 안착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주민 대상 전문 교육 실행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민자치 관련 정책 기획 및 실행

추진방안

- 지역의 상황에 맞게 운영(기간·계약·인원 등)

① (유형 1) 전담기관 민간위탁 체계

- 전문지원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전반적인 주민자치 관련 정책, 교육, 평가 실행

추진 내용	지자체 예시
• 운영방식 : 위탁운영 – 민간단체가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받아 업무 수행 – 기간 : 중기 2년(성과에 따라 1년 연장) • 예산집행 : 위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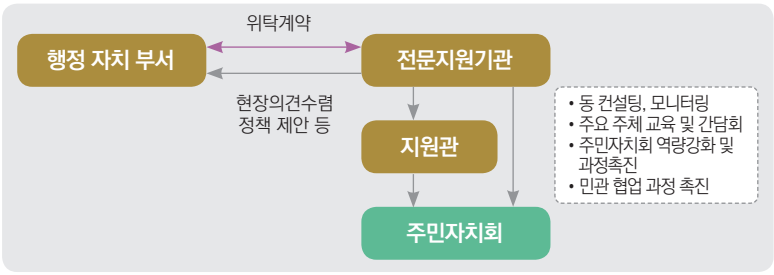	서울, 춘천, 세종, 인천 등

② (유형 2) 전담인력 직영 체계

- 주민자치 관련 사무 전담 인력을 자치구가 직접 채용 후 운영

추진 내용	지자체 예시
• 운영방식 : 전문가 채용 후 지원조직 구성 – 기간 : 중장기 2~5년(*임기제의 경우 성과에 따라 5년 연장) • 예산집행 – 전담공무원 : 임기제 채용(인건비 지급) – 지원관 : 기간제 채용(인건비 지급) – 간사, 강사 및 활동가 : 활동비 지급(기타보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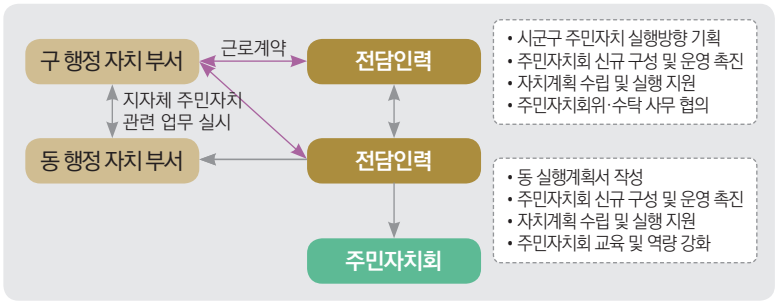	대전(지원관), 당진시, 연수구, 화성시, 해운대구, 논산시(임기제)

② (유형 3) 컨설팅 용역

- 지역현황조사 및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운영 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주민자치 관련 운영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진행

추진 내용	지자체 예시
• 운영방식 : 용역사업 – 민간단체를 주민자치 컨설팅 업체로 선정 – 기간 : 단기 1년(연장가능) • 예산집행 : 용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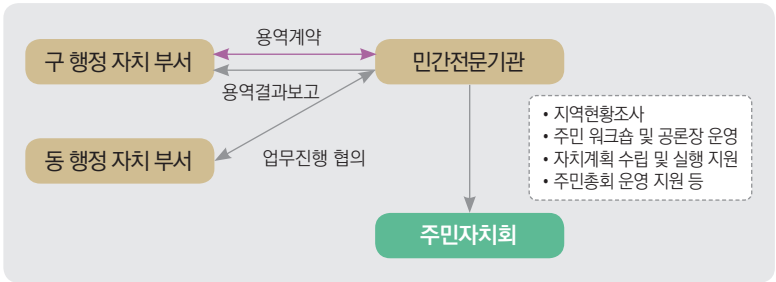	충남, 울산 북구 등

참고 2-14 타 지자체 인력 운영 사례

동 자치지원관 파견(서울시, 대전시)

-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 인력으로 공개 선발하여,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서울) 또는 자치구(대전) 소속으로 동당 1명을 전담 배치
  -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조력자이면서 행정과 주민자치회의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조정하는 촉진자, 중재자

동 담당 공무원과 자치지원관 역할

내용	동 담당 공무원	자치지원관
역할	• 동 실행계획서 작성 •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 지원 •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자치회관 운영관리 지원 • 주민자치회 위 · 수탁사무 협의	•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및 운영 촉진 • 자치계획 수립 및 결정 과정 촉진 • 행정사무 협의, 수탁 논의과정 지원 •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 • 주민자치회 간사 교육 및 역량 강화

동 자치지원관 운영 관련

구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채용형태	2년 계약	1년 계약
근무형태	주 5일 40시간	주 5일 40시간
소속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자치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당진시, 화성시, 부산시 해운대구)

-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 읍·면·동에 1명을 전담 배치
  - 근무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추가 연장
- 행정의 지도·감독이 용이하고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

* 채용 조건으로 주민자치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형태

구분	당진시	화성시	부산 해운대구
임용 직급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채용 인원	15명	11명	1명
근무 기간	2년 (근무 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연장	1년 (근무 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연장	1년 (근무 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근무 시간	주 5일 40시간	주 5일 40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부서	공동체새마을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업무	•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및 현장 지원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마을계획 및 주민총회 등 운영 • 읍·면·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 리통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 업무 기획 • 주민자치 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 주민자치회 회계 • 공동체 활동 지원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촉진 •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 업무 기획 및 협의 중재 • 주민자치 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 주민자치회 회계

참고 2-15 주민자치회 사무 인력 운영 현황

주민자치회 내 실무 인력(기간제근로자 간사 활용, 광주시 광산구)

- 주민자치회 간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주민자치회 실무를 수행

  * 위원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며 생활임금을 적용, 월 약 200만원 지급

- '19년은 한시적으로 구에서 직접 채용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동에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20년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채용*

  * '20년부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재원을 확보

- 전담 공무원과 간사의 체계적인 사무분장을 통해 효율적인 민·관 협력적 협업체계를 확보

타 지자체 간사 수당 지급 현황

지자체	간사수당	지자체	간사수당
서울특별시(전체)	월 100만원	대전 유성구	월 100만원
인천시 계양구	월 40만원	대전 대덕구	월 100만원
인천시 연수구	월 18만원	**광주시 광산구**	**월 약 200만원**
인천시 부평구	월 30만원	경남 창원시	월 약 35~40만원

※ 광주시 광산구를 제외한 타 지자체의 경우 시·도에서 간사 수당을 지원

사무 인력 운영 현황

운영 주체	지급형태	인력 유형	고용계약 여부	비고
지방자치단체[1]	인건비	공무직	○	충남 당진시 일부 지역
		단기 기간제	○	광주 광산구 시범지역 (신설 1년차 동 주민자치회)
	실비	자원봉사 등	X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주민자치회	인건비 (지방보조금[2]+ 주민자치센터 수익금)	특정사업에 따른 계약직	○	금천구 일부 시범지역
	민간위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행정사무 민간위탁)	위탁사업에 따른 계약직	○	광주 광산구 시범지역 (2년차 이상 동 주민자치회)
	인건비(지방보조금)	특정사업에 따른 계약직	○	충남 및 광주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실비지급(지방보조금)	자원봉사 등	X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1) '주민자치센터'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운영되는 경우 다수

2) 「지방보조금법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라, 주민자치회 세부 사업을 특정사업으로 해석하여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인력 연관 법령 및 규정해석 현황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지방보조금법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재정정책과-4065호(2014.9.16.))」「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분권과-2666호(2019.8.23.))」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혁신적 지원 사례

사례 1 : (광주 서구) 주민자치회 운영 및 동장업무 매뉴얼

-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 및 「동장 업무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2020.9월
  - 목적 : 동 행정기능에 관한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이해력 증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정착과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 내용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위·수탁 사무처리 절차 등 실무 위주 내용 수록
  - 수량 : 각 100부 → 18개 전 동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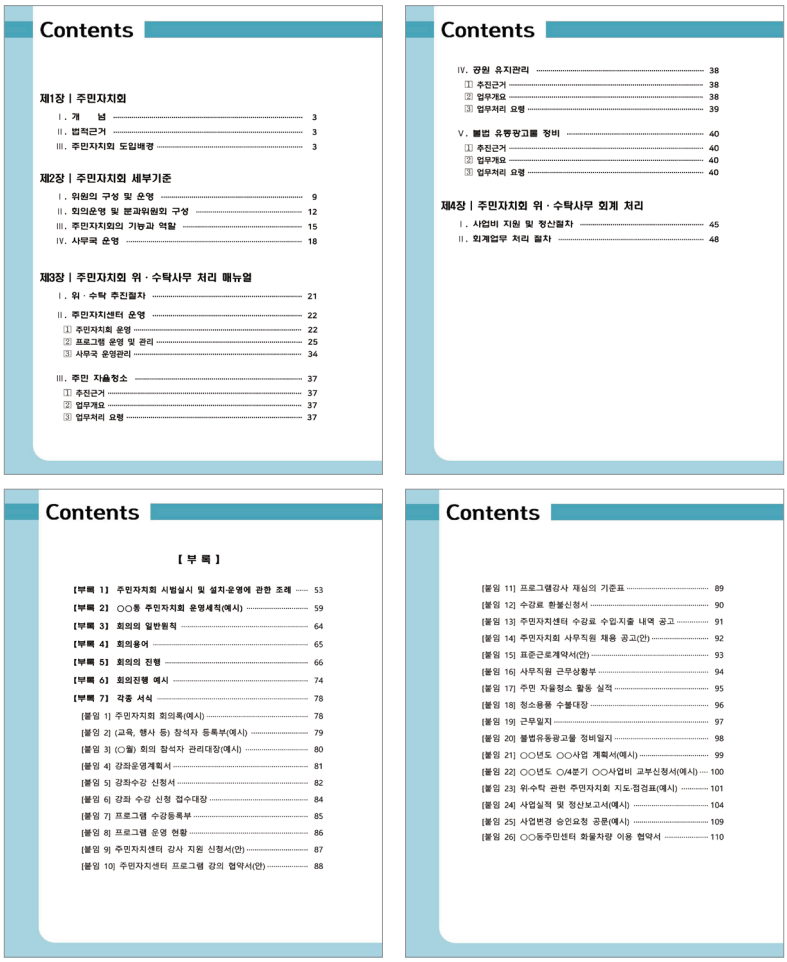

Contents

제1장 | 주민자치회

Ⅰ. 개 념 ····· 3
Ⅱ. 법적근거 ····· 3
Ⅲ. 주민자치회 도입배경 ····· 3

제2장 | 주민자치회 세부기준

Ⅰ. 위원의 구성 및 운영 ····· 9
Ⅱ. 회의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 ····· 12
Ⅲ.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 15
Ⅳ. 사무국 운영 ····· 18

제3장 | 주민자치회 위·수탁사무 처리 매뉴얼

Ⅰ. 위·수탁 추진절차 ····· 21
Ⅱ. 주민자치센터 운영 ····· 22
[1] 주민자치회 운영 ····· 22
[2]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25
[3] 사무국 운영관리 ····· 34
Ⅲ. 주민 자율정소 ····· 37
[1] 추진근거 ····· 37
[2] 업무개요 ····· 37
[3] 업무처리 요령 ····· 37

Contents

Ⅳ. 광원 유지관리 ····· 38
[1] 추진근거 ····· 38
[2] 업무개요 ····· 38
[3] 업무처리 요령 ····· 39
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40
[1] 추진근거 ····· 40
[2] 업무개요 ····· 40
[3] 업무처리 요령 ····· 40

제4장 | 주민자치회 위·수탁사무 회계 처리

Ⅰ. 사업비 지원 및 정산절차 ····· 45
Ⅱ. 회계업무 처리 절차 ····· 48

Contents

[부 록]

[부록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53
[부록 2]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예시) ····· 59
[부록 3] 회의의 일반원칙 ····· 64
[부록 4] 회의용어 ····· 65
[부록 5] 회의의 진행 ····· 66
[부록 6] 회의진행 예시 ····· 74
[부록 7] 각종 서식 ····· 78
[붙임 1] 주민자치회 회의록(예시) ····· 78
[붙임 2] (교육, 행사 등) 참석자 등록부(예시) ····· 79
[붙임 3] (○월) 회의 참석자 관리대장(예시) ····· 80
[붙임 4] 강좌운영계획서 ····· 81
[붙임 5] 강좌수강 신청서 ····· 82
[붙임 6] 강좌 수강 신청 접수대장 ····· 84
[붙임 7] 프로그램 수강등록부 ····· 85
[붙임 8] 프로그램 운영 현황 ····· 86
[붙임 9]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 신청서(안) ····· 87
[붙임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 협약서(안) ····· 88

Contents

[붙임 11] 프로그램강사 재심의 기준표 ····· 89
[붙임 12] 수강료 환불신청서 ····· 90
[붙임 1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고 ····· 91
[붙임 14] 주민자치회 사무직원 채용 공고(안) ····· 92
[붙임 15] 표준근로계약서(안) ····· 93
[붙임 16] 사무직원 근무상황부 ····· 94
[붙임 17] 주민 자율정소 활동 실적 ····· 95
[붙임 18] 청소용품 수불대장 ····· 96
[붙임 19] 근무일지 ····· 97
[붙임 20]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일지 ····· 98
[붙임 21] ○○년도 ○○사업 계획서(예시) ····· 99
[붙임 22] ○○년도 ○/4분기 ○○사업비 교부신청서(예시) ····· 100
[붙임 23] 위·수탁 관련 주민자치회 지도·점검표(예시) ····· 101
[붙임 24]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예시) ····· 104
[붙임 25] 사업변경 승인요청 공문(예시) ····· 109
[붙임 26] ○○동주민센터 화물차량 이용 협약서 ····· 110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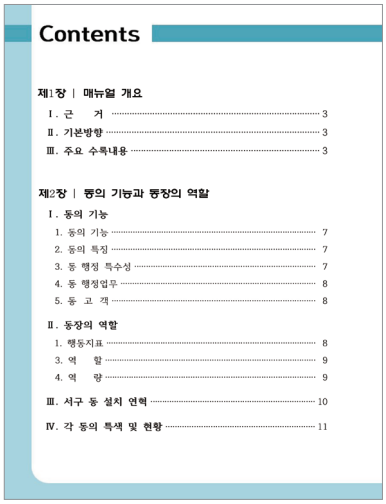

Contents

제1장 | 매뉴얼 개요

Ⅰ. 근 거 ····· 3
Ⅱ. 기본방향 ····· 3
Ⅲ. 주요 수록내용 ····· 3

제2장 | 동의 기능과 동장의 역할

Ⅰ. 동의 기능
1. 동의 기능 ····· 7
2. 동의 특징 ····· 7
3. 동 행정 특수성 ····· 7
4. 동 행정업무 ····· 8
5. 동 고 객 ····· 8
Ⅱ. 동장의 역할
1. 행동지표 ····· 8
3. 역 할 ····· 9
4. 역 량 ····· 9
Ⅲ. 서구 동 설치 연혁 ····· 10
Ⅳ. 각 동의 특색 및 현황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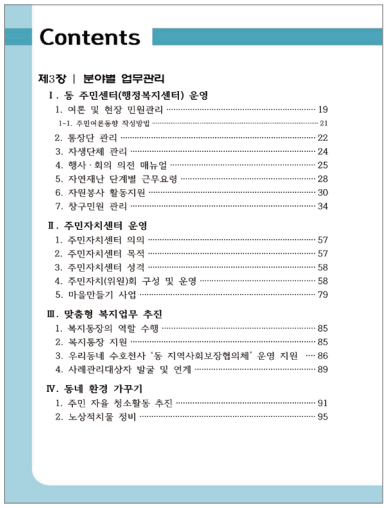

Contents

제3장 | 분야별 업무관리

Ⅰ.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운영
1. 여론 및 현장 민원관리 ····· 19
1-1. 주민여론동향 작성방법 ····· 21
2. 통장단 관리 ····· 22
3. 자생단체 관리 ····· 24
4. 행사·회의 의전 매뉴얼 ····· 25
5. 자연재난 단계별 근무요령 ····· 28
6. 자원봉사 활동지원 ····· 30
7. 창구민원 관리 ····· 34
Ⅱ. 주민자치센터 운영
1. 주민자치센터 의의 ····· 57
2. 주민자치센터 목적 ····· 57
3. 주민자치센터 성격 ····· 58
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8
5. 마을만들기 사업 ····· 79
Ⅲ.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
1. 복지동장의 역할 수행 ····· 85
2. 복지통장 지원 ····· 85
3.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 86
4.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연계 ····· 89
Ⅳ. 동네 환경 가꾸기
1. 주민 자율 청소활동 추진 ····· 91
2. 노상적치물 정비 ·····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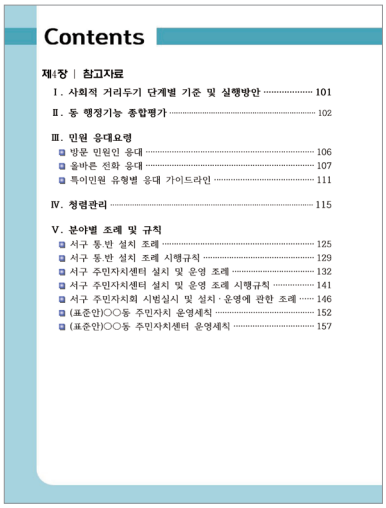

Contents

제4장 | 참고자료

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 101
Ⅱ. 동 행정기능 종합평가 ····· 102
Ⅲ. 민원 응대요령
- 방문 민원인 응대 ····· 106
- 올바른 전화 응대 ····· 107
- 특이민원 유형별 응대 가이드라인 ····· 111

Ⅳ. 청렴관리 ····· 115
Ⅴ. 분야별 조례 및 규칙
- 서구 통·반 설치 조례 ····· 125
-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129
-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132
-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141
-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146
- (표준안)○○동 주민자치 운영세칙 ····· 152
- (표준안)○○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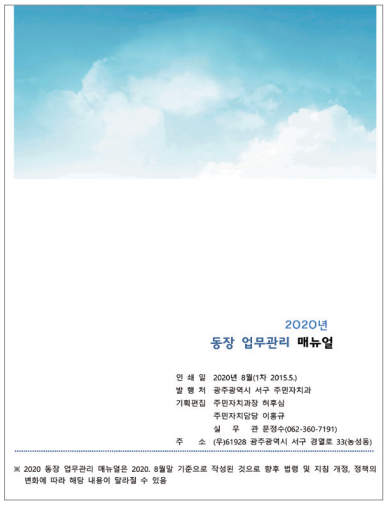

2020년

동장 업무관리 매뉴얼

인 쇄 일 2020년 8월(1차 2015.5.)
발 행 처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과
기획편집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주민자치담당 이종규
실 무 관 문정수(062-360-7191)
주 소 (우)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 2020 동장 업무관리 매뉴얼은 2020. 8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법령 및 지침 개정, 정책의 변화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동장 업무관리 매뉴얼 목차

사례 2 : (경기도) 온라인 교육 체계 구축

• 경기도인재개발원(http://edu.gg.go.kr)에 사이버교육과 모바일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도 교육 연속성 유지 관리

Global Inspiration 경기도인재개발원

주민자치 역량 파워 업그레이드 - 4 기

사이버교육 | 앱 병행가능

교육분류	직무공통/기획/행정/행정지원
학습기간	21.01.25 ~ 21.02.08
차시/인정시간	10 차시 / 5 시간
수료기준	진도율 : 90 %, 최종평가 : 60 점 이상
과정유형	사이버

모바일교육(9)

- 주민자치는 왜 하는가 2015.12.13
- 사업! 이제 주민자치로 하자. 2015.12.13
- 주민자치는 누가 하는가 2015.12.13
- 주민 행복의 실현 2015.12.13
- 예술로 안전마을 만들기 2015.12.13
- 정다운 골목길: 주민들의 대화와 소통의 장소 2015.12.13
- 500원의 행복! 재래시장을 살려라 2015.12.13
- 지역화폐로 지역의 소통을 사라 2015.12.13
- 한뼘공원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구축: 양평군 서종면 2015.12.13

교육대상	경기도 - 시,군 공무원/공공기관
학습목표	분야별 테마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및 주민자치의 근본정신 이해를 통해 균형잡힌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 갈등 관리
학습내용	1차시. 주민자치는 왜 하는가 2차시. 주민자치는 누가 하는가 3차시. 예술로 안전마을 만들기 4차시. 지역화폐로 지역의 소통을 사라 5차시. 500원의 행복! 재래시장을 살려라 6차시. 평생직장이 되는 마을기업 7차시. 정다운 골목길: 주민들의 대화와 소통의 장소 8차시. 한뼘공원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구축: 양평군 서종면 9차시. 사업! 이제 주민자치로 하자. 10차시. 주민 행복의 실현

사례 3 : 주민자치회 지원을 동장 사무로 조례 근거 마련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 행정사무에 주민자치회 지원 업무 명시 ➡ 동장의 주민자치회 지원 사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규칙 제880호, 2019.12.20., 일부개정]	개정 후[대전광역시대덕구규칙 제895호, 2020.6.19., 일부개정]
제16조(분장사무) 동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제16조(분장사무)** 동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동장의 분장사무(제16조 관련)	**동장의 분장사무(제16조 관련)**
분 장 사 무	분 장 사 무
1.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1.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29. (생 략)	2.~29. (현행과 같음)
〈신 설〉	30.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1. 주민총회 개최 지원
	32.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지원
30. 그 밖에 동 행정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동 행정에 관한 사항

–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광주광역시서구규칙 제840호, 2019.6.27., 일부개정]	개정 후[광주광역시서구규칙 제850호, 2019.12.24., 전부개정]
제24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3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6의2.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위원회)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하 (생 략)	1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5. 이하 (생 략)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986호, 2018.12.28., 일부개정]	개정 후[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1008호, 2019.8.2., 일부개정]
제15조(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5]	**제15조(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동장의 분장사무(제16조 관련)	**동장의 분장사무(제16조 관련)**
분 장 사 무	분 장 사 무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주민자치센터 운영
8. 이하 (생 략)	9. 이하 (생 략)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서울특별시금천구규칙 제537호, 2018.9.6., 일부개정]	개정 후[서울특별시금천구규칙 제545호, 2018.12.31., 일부개정]
제43조(동의 사무) ①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9. (생 략) 4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 41. 이하 (생 략)	**제43조(동의 사무)** ①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9. (현행과 같음) 40.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 41. 이하 (생 략)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전[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465호, 2020.4.1., 일부개정]	개정 후[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490호, 2020.7.15., 일부개정]
제44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생활민원 처리,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제44조(직무)** ①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생활민원 처리,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읍·면·동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주민총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사례 4 : (광주 북구) 온라인 운영 시스템 지원

- **(배경)** 북구는 교회, 생활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집단 대규모 감염 발생(광주시 전체 확진자의 49%)으로 상황이 엄중하여 주민들의 대면활동이 극도로 위축
- **(목적)** 비대면 소통 방법 발굴, 장비지원과 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언택트 활동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주민자치 활동 적극 지원
- **(과정 및 내용)**

장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활용
• 영상회의용 카메라 지원(28개동) • 전산 네트워크 설치(28개동) • 회의용 아크릴 가림막 지원(28개동)	• ZOOM 사용법 교육(2강) • 비대면 마을 활동 교육(10강) • 온라인 주민총회 컨설팅(3회)	• 온라인 주민총회(15개동) • 온라인 주민자치 회의 • 온라인 '우리동네 구청장실' • 랜선 미래비전 선포식

【① 장비지원】

- 주민단체회의 운영 아크릴 가림막 지원 ➡ 누구나 안심하고 모임활동 지속 가능

  * 28개 동 605개(동별 20~25개)

- 웹 카메라 및 전산 네트워크 설치 지원 ➡ 영상회의 환경 조성 * 지원 : 28개 동

【② 교육 및 컨설팅】

- 온라인 주민자치 영상회의 기법 교육 * 주민자치위원 등 40명 참여('20. 9. 21., 2강)
  - · ZOOM 가입, 회의방 개설, 회의 진행 방법 등 온라인 회의 교육 및 실습 ➡ 온라인 마을자치 회의 활용
- 비대면 마을공동체 활동 도움 교육 * 마을활동가 등 주민 350명 참여('20. 9.~10., 총 10강)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SNS를 활용한 마을 자원 조사, 마을 활동 홍보 방법, 유튜브 동영상 제작, ZOOM 온라인 회의 운영, 마을 총회(온/오프라인) 기획에 대한 교육 및 실습으로 비대면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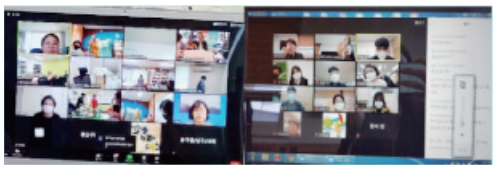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온라인 영상회의

- 온라인 주민총회 기획 컨설팅 및 공유회의 * 주민자치회장 등 30명, 전문 컨설턴트 참여('20. 9.~)
  - · 각 동별 여건과 상황(도·농 복합 지역, 청소년 등 학교 밀집지역, 노령인구 다수)에 맞게 효율적인 주민총회를 기획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추진 시 필요한 절차 및 많은 주민참여 방법에 대한 컨설팅
- 온라인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 주민 83명 참여('20. 5.~6.)
  - · 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maeul/) 內 주민자치 교육
  - · 기존의 현장교육에서 벗어나 교육방식 다양화 ➡ 교육 참여율 향상

【③ 적용 및 활용】

- 2020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 · 대상/방법 : 용봉동 등 15개 동('20.11.~12.) / 유튜브 생방송 중계 등
  - · 주민이 발굴한 마을의제에 대해 토론·숙의를 거쳐 공론화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온라인 방법으로 개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추진
- 구청장과 주민의 열린 대화 "우리동네 구청장실" 온라인 주민간담회
  - · 참여 : 28개 동, 275명('20.10.6.~10.13.)
  - · 생생한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현안, 생활 불편 사항과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온라인으로 실시
  - · 결과 : 7개 분야 180건(예산사업 120건, 비예산 60건) 건의 ➡ 170건 추진(중)
- 랜선 미래비전 선포식 추진 * 참여 : 28개동 400명('20.9.)
  - · "북구민의 날 기념식"과 "미래비전 선포식"을 각 동 주민과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

온라인 영상회의 기법 교육

온라인 주민총회

온라인 간담회 '우리동네 구청장실'

사례 5 :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주민자치 공론장 코디네이터 사업 운영

서울시 뉴딜일자리 활용 ➡ 동별 주민자치 행정인력(1인)을 배치하여 업무 지원

- 코디네이터 인원 : 10명
  - 기존 간사 → 코디 전환(7동) : 가산, 독산1, 독산2, 시흥2, 시흥3, 시흥4, 시흥5
  - 코디 추가배치(3동) : 독산3, 독산4, 시흥1
- 근무 기간 : 2020.4.13. ~ 12.31.
- 업무 분장

기존 간사 → 코디 전환(7동)	코디 추가배치(3동)
- 자치회관 총괄 운영업무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강사료·자원봉사활동비 지급, 강사료 원천세 신고 납부, 수강료 환불, 자치회관 입출금관리,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자치회관 운영계획서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수강생 간담회, 방학특강 체험학습 추진 및 관리) · **강사관리**(섭외, 채용, 계약, 강사 간담회) - 마을사업(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업무 -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준비 지원 - 회의록 작성 - 주민자치회 기금관리	- 지원관 업무 지원(주민총회, 자치계획) - 마을사업(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업무 - 회의 운영 지원 · **정기 및 임원회의**(회의자료 작성, 회의장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공유,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 **민·관협력회의**(회의자료 작성 준비, 회의록 작성 공유)

Ⅲ. 지원 정책

1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1. 교육 지원

추진배경

- 주민자치 관련 민간(강사, 회장, 활동가 등), 공무원 교육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 자치단체 주민자치 컨설팅 지원으로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정책 활성화 및 역량 제고

주요 내용

- 자치단체 주민자치 담당자 및 주민자치회 관계자 교육
  - (연 2회)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교육(상반기 권역별 설명회 등 2회)
  - (연 1회) 주민자치회 회장 교육, 자치단체 주민자치 담당 배치 증원 공무원 대상(지원기관 포함) 직무역량 교육, 읍·면·동 담당자 교육*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추진
- 주민자치 민·관 전문인력 양성(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 4기관 협력을 통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민·관 통합 역량 강화 및 정책 설계·실행
  - 시·도 및 시·군·구별 4명(공무원 2, 민간 2) 공동 신청, 30여 개 지자체 선발 예정

    * 시·군·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1년 행안부 및 자치단체 주민자치 교육 운영 〉

- 주민자치의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별 교육 심화 필요
- 행안부 간접 지원, 자치단체 직접 운영으로 역할 분담 필요

주체	역할
행안부 (자치팀)	• 주민자치 교육 체계 구성 및 총괄 지원 – (연 2회)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교육(상반기 권역별 설명회 1회 포함), (연 1회) ① 주민자치회장 교육, ② 읍·면·동 담당자 교육 – (연 1회, 6개월)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 관련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 명단 정리·공유 * 민관 대상 다양한 주민자치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설명회, 특강, 사례방문, 워크숍, 주민자치학교, 아카데미 등)
시·도	• 시·도별 주민자치 교육 및 시·군·구 지원 – 연간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 (민) 시·도 주민자치 강사 교육 (관) 시·군·구 관리자·담당자 교육 및 시·군·구 교육 설계 지원 – 시·도 주민자치 지원기관 내 교육 운영 또는 교육 위탁
시·군·구	• 시·군·구별 주민자치 교육 및 읍·면·동 지원 – 연간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 (민)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관) 읍·면·동장 및 담당자 교육 – 시·군·구 주민자치 지원기관 내 교육 운영 또는 교육 위탁
읍·면·동	•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교육 – 연간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 위원 및 일반주민 등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 * 시군구와 협력·논의하여 읍·면·동별 민간 교육 통합 또는 분리 운영

* 필요시 교육과정별 교육 수요조사 실시

〈자치단체〉

- 주민자치 활성화 단계를 고려하여 콘텐츠 및 주체별로 맞춤형 교육 기획
  - 지자체 컨설팅 지원, 주민자치회 관련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전국 주민자치 강사 Pool 포함) 활용*

    * 자료 : '풀뿌리 주민자치' 온-나라 커뮤니티(공무원)
  - 주민자치회 구성(사전 필수교육) 이후 체계적인 맞춤형 사후 교육 실시

(지자체 교육운영) 지자체 공무원, 주민리더, 주민 등 주민자치 교육(집합, 사례방문, 워크숍 등), 주민자치회 사전 6H 이상 필수교육(행안부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표준조례 및 지자체 조례)

주민자치 교육 예시

(콘텐츠)

조례 개정(주요 변경내용)
주민자치회 구성(모집, 교육, 선발 등)
주민자치회 운영(자치계획,
주민총회, 행정업무 위수탁 등)
공동체 공간 개선
읍·면·동장 역할 강화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 등

+

(주체)

시·군·구 담당/관리자
읍·면·동 담당(증원/기존)
읍·면·동장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 주민자치위원
일반주민
전문강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설명회, 워크숍, 주민자치학교 등)

과정 / 대상	교육과정(예시)		
	공통 역량(총론)	직무 역량(실천)	리더십 역량
공무원 (증원/기존 직원, 읍·면·동장, 팀장, 자치구 간부 등)	– 주민자치 정책 추진 배경 및 방향	– 주민자치 직무의 이해	– 읍·면·동 주민센터 변화관리를 위한 능동적인 리더의 역할
민간 리더 (자치계획단, 통반장, 유관기관 종사자 등)	– 주민 참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주민 주도형 자치계획의 이해와 촉진능력 향상	– 지역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 및 책임
전문 강사 등	– 행정혁신과 자기역할 탐색 등	– 현장 탐방 등	– 갈등관리 및 코칭 등

참고 3-1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필요성

-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행정과 민간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기획 및 통합 교육 부재

⇒ 자치분권·균형발전·주민자치·사회혁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교육 운영

⇒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문제해결 역량 향상 필요

'지역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주요내용

- **(주제)** 자치분권·균형발전·주민자치·지방자치·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민관 통합 역량 강화 및 정책 설계·실행
- **(기획·운영)** 4개기관 - 시·군·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 전문 교육기관 위탁 운영
- **(대상·선발)** 시·도, 시·군·구별 4명(공무원 2, 민간 2) 공동신청·선발

  - 참여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무원과 민간 인재양성자 함께 선발

    ※ 지자체별 민관 총 4명이 되어야 신청 / '20년 21개팀 84명 신청

  - 공무원 : 시·도 5급 및 시·군·구 6급 이상 지자체별 핵심 인재 2명

    * 행정직 공무원 중 해당 직무 장기근속 예정자(임기제 또는 전문관 포함)

    **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의지가 있는 자

  - 민간 : 시·도, 시·군·구별 지역의 사회혁신 활동가 2명

    *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NGO, 시민사회 등 다양한 활동 범위, 경력 보유자

    ** 해당 지역 및 관련 업무에서 네트워크가 넓은 대표, 임원, 고위관리자 등
- **(교육)** 4분기별 각 2박 3일 교육 ※ 코로나로 인해 변경 및 조정

  * 교육 장소는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분기별(4회) 진행
- **(과정)** 집체 교육 워크숍 및 지자체 선택 분야별 민관 합동 정책 설계·실행

  - 신청 자치단체별 자치분권, 균형발전, 사회혁신, 지방자치, 주민자치, 민관협치 등 지역 문제 및 과제 선 고민 후 신청

-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분야를 민관이 공동 계획, 공동 생산을 통해 해결 노력,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역에 필요한 정책 설계를 위한 전문적 지식 제공뿐 아니라 설계된 정책이 실제 실천되도록 지원하는 양성과정 운영

• **(추진체계)**

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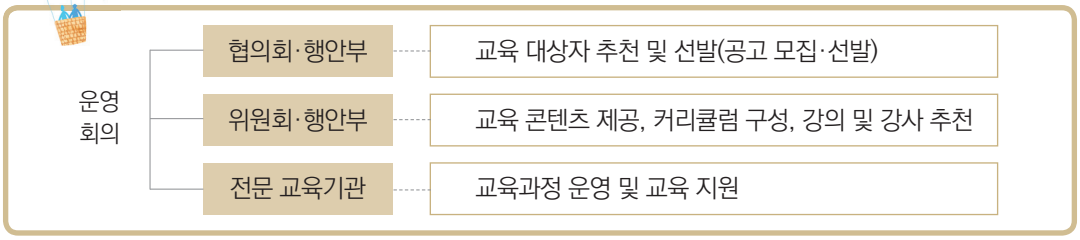

• **(인센티브)**

- 지자체별 계획 수립 및 해결 노력에 따른 포상

  * 4차 교육 시 경진대회 행사 포함

- 수료증 배부, 공무원 상시학습 시간 인정 등

향후계획

• 2021년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추진(3~11월)

2. 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추진배경

- 주민자치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실행하는 데 한계 존재
- 자치단체 주민자치 컨설팅 지원으로 자치단체의 정책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 제고

주요내용

- **(방향)**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운영 지원
- **(개요)** 자치단체 대상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사업 운영
  - 대상 :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25여 개 선정 예정 * 추후 변동 가능
  - 내용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현황 분석 및 조직, 인력, 사업, 예산, 거버넌스 체계 방향 제시 등 컨설팅
  - 운영 : 자치단체별 총 5회 컨설팅 진행

(주민자치 컨설설트 역할)

① 자치단체장 면담(전체 방향) 및 담당부서 컨설팅
② 자치단체 주민자치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보고서 작성)
③ 필요시 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한 컨설팅·교육 수행
④ 컨설팅 결과 지자체 공유 및 '22년 주민자치 정책 계획 수립 활용
* 해당 지자체 방문 컨설팅 및 자치단체장 면담 필수
* 컨설턴트 Pool 구성하여 지자체 선택 컨설팅(1명당 개별 컨설팅 및 보고서 작성)

- 진행 프로세스

계획수립 및 위탁공고·선정 ('21.1.~3.)	▶	컨설턴트 구성 및 워크숍 ('21.4.)	▶	자치단체 모집·선정 ('21.4.)	▶	컨설팅 시행 ('21.5.~10.)	▶	결과 활용 ('21.11.)
행안부		행안부 ↔ 용역 수행기관 * 컨설턴트 워크숍		행안부(용역 수행기관) ↔ 자치단체 * 선정 자치단체 교육 및 워크숍		행안부(용역 수행기관) ↔ 컨설턴트 ↔ 자치단체		지자체 등 전국 공유(성과 공유)

* 자치단체 선정·교육 및 자치단체-컨설턴트 연계 사전 워크숍 개최(4월) ※ 코로나로 인하여 향후 일정 변경 가능

- 자치단체 선정 :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개최하여 최종 결정

참고 3-2 자치단체 주민자치 컨설팅 분야 및 내용

분야	주요내용
주민자치회 조례	• 조례 제정 여부 및 개정 내용('18~'20년) 포함 사항 • 조례 제·개정 계획 및 준비사항 * 농촌의 경우 '농촌형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2018)' 참고 〈프리즘 등록〉 • 조례 제·개정 관련 지역단체 협의 및 의회 협력 사항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시·군·구 내 주민자치회 구성 등 자문 – 구성 인원, 위원 선정(추첨), 타 주민협의체 협력 등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구성 계획 및 절차·방법 • 주민자치회 운영 진단 및 활성화 방안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 주민자치회 현장 방문 등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재정적 지원	• 지자체 주민자치 예산 수립 및 향후 계획 – 시범 운영, 전환 지원, 역량강화 교육, 인력, 자치계획 지원, 공간 등 • 주민세, 주민참여예산, 주민지원금* 등 연계 활용 방안 * 농촌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화력발전소 등이 위치한 지역에 지원되는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
조직·인력	• 시·군·구, 읍·면·동 전담인력(팀) 배치 현황 및 계획 * '22년까지 시·군·구별 1명, 읍·면·동별 1명 (행정)주민자치 전담인력 배치 ** 자치단체, 주민자치회 인력 배치 사례, 지원기관 운영 등 • 주민자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 연계 •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및 위원, 주민 등 교육 현황 및 계획
교육	•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지역단체 교육 • 읍·면·동 주민자치 행정 담당자 교육 • 시범 주민자치회 임원 및 위원 교육
위탁사무 및 공간 개선	• 위탁사무 발굴 및 주민자치회 위탁 • 사무국 설치 운영 활성화 • 주민소통·자치공간 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우수사례	• 타 시·군·구 및 해외 주민자치 우수사례 제시
기타	• 주민 참여, 분과 구성, 운영 활성화 등

3.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추진배경

- 최근 급격한 주민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심화 방향 제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총괄적 지역혁신 필요 증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주민자치회로의 재도약 필요

주요내용

- 핵심 의제 발굴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총회 역할 강화
  -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프로세스 고도화(1~2개 읍·면·동 대상)
    - (수행 과제) 정밀한 방식의 지역현황 조사 프로세스 진행 및 비전(발전)계획 수립 등 고도화 컨설팅 수행 : 양질의 주민워크숍 + 공론화 과정 + 고도화 의제 추출 과정 + 계획 수립 등
    - (수행 결과물) 읍·면·동 비전 및 3개년 이상의 동지역 발전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회복·강화하고, 위탁 및 보조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민자치회 연관 실행 법인 도입 지원
  -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구축(1~2개 읍·면·동 대상)
    - (수행 과제) ① 법인에 관한 주민 대상 교육 및 의견 수렴 과정 진행 ② 법인 설립 또는 사업고도화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지역조사(자원, 공공서비스 현황, 사회적 경제+마을생태계), 사업모델, 사업전략 등
    - (수행 결과물) 법인 설립(주민자치회) + 위·수탁 사업 발굴(지자체)

      * 주민대표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지역재생, 사회적부동산, 지역주체육성, 지역금융 등 포괄적 범위의 지역사업 수행

추진일정

- 고도화 및 사업수행법인 공모사업 공고 및 실행 : '21.2월
- 고도화 및 사업수행법인 교육 및 컨설팅 운영 : '21.3~11월
- 공모사업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 : '21.11월

4. 포럼 등 공동 주최 및 후원 지원

자치단체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운영 지원

- 주민자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등 공동 주최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포럼 공동 추진('18년, 4회) : 주민세 활용방안 토론회(5월), 주민자치 법제도 개선(7월), 지역재생과 주민자치 융합 모색(9월), 농촌형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12월)

- 지자체 공무원, 주민자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 후원

  * 행안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19년, 4회) : 춘천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3월),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7월),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9월),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10월)

행안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

- 근거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행안부 예규 제84호)
-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 행안부 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단체 또는 행안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시상되는 행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후원명칭 사용 절차

  ① (후원명칭 사용기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공문으로 후원명칭 사용 신청

  * 행사 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행안부) 신청 대상 해당 여부, 행사 목적, 행안부 소관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③ (후원명칭 사용기관)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공문으로 제출

참고 3-3 행안부 후원명칭 사용 신청 관련 서식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주최(주관) 기관	명칭	전화	FAX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주소(우편번호포함)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목적		
	주요행사내용		
	타후원예정 기관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명	인원: 명(추정)

위 행사에 대한 귀 부처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토	➡	결재	➡	통보
기관 또는 단체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주최(주관) 기관	명칭	전화	FAX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소재지(우편번호포함)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목적		
	주요행사내용		
	타후원 기관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명	인원: 명

후원명칭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형태	

귀 부처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행사 결과보고서 2. 기타 특이사항(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 진행에 따른 특이사항)	수수료 없음

5.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배경

- 지역에서 다수 기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 증대
- 부처별 정책은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성과 한계
- 정부 지역정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초 지자체 역량 미비

⇒ 지역의 부처 간 사업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정책 효과 제고 필요

주요내용

- 5부처 MOU* 기반 사업 연계로 시너시 효과가 큰 지역** 선정(5부처 합동)
  - 국비 5억, 5개 지역 선정
  - 지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부처는 지원 가능 방안 적극 검토(상향식)

  * 자치·돌봄·재생·교육 등 부처 지역사업의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해 행안·교육·농식품·복지·국토부 등 5개 부처 간 협약 체결('20.3월)

  ** 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지역범위 내 생활권 (1~3개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공공생활서비스 공유 가능 범위)
- 부처 간 정책 연계사업 추진을 돕는 지원체계 구축
  -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주민 및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 보완
- 지역 맞춤형 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 지역현황, 부처 정책, 주민의견 등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
- 지역 이슈발굴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운영

  * 중앙·지방정책협의체, 지역민관합동협의체, 주민협의체 등
- 다부처 협력사업 추진 기반 확산
  - 사업추진 전 과정 매뉴얼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과 홍보 추진 등

추진계획

- 사업공고('21.1월) → 사업지 선정(2월) → 합동워크숍(3월) → 사업추진(~12월) → 성과 홍보(12월)

참고 3-4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계획

사업 개요

- **('21년 예산)** 국비 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5개소 선정 계획
- **(신청 대상)**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사업 대상 지역)** 기초자치단체 또는 그 이하 범위의 지역
- **(사업 내용)** (가칭)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지원, 협력사업 추진협의체 운영, 워크숍, 자료 제작 등
- **(신청 요건)** 5개 부처 MOU 기반 사업 중 '19년~'21년간 2개 부처 이상의 사업을 수행(완료 포함)하는 지자체로서, 수행사업 연계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정책(부처 무관, 지자체 사업 등) 연계방안과 향후 연계정책 제안 필수

5개 부처 MOU 기반 주요 사업('19~'21년)

담당부처	주요 사업	신청 대상 세부사업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 미래교육지구(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제도정책 분야' • 민간지원단체 주도형 지역사업(커뮤니티임팩트) •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사업 •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유형 3] •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고도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 사회서비스원 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계기반형, 혁신지구, 인정사업

붙임 다부처 정책 연계 예시(안)

❶ (주민자치회 주도형) 행안부+교육부+국토부+지자체

A지역 : '19년 전국 주민자치회박람회 우수사례 제도정책 분야 선정(행안부)+'20년 미래교육지구 선정(교육부)+'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국토부)+'20년 출산지원센터 설치/운영(지자체)

- A지역의 폐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여성·노인 문화원으로 리모델링
- 리모델링 기획 과정에서 프로그램 설계까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 주민자치회 분과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설치하여 학생 대상 주민자치 교육 등 운영하고 학교별 학생총회를 개최해 다양한 지역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화
- 지자체 문화원 내 출신자원센터를 설치해 임신·출산·양육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❷ (도시재생 뉴딜 중심형) 국토부+복지부+행안부

B지역 : '20년 도시재생 뉴딜(국토부)+'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복지부)+'20년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유형3](행안부)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간개선 계획 포함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주민자치회를 통합 구성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CRC를 주민자치회 연계 사회적협동조합과 통합하여 구성
- 통합돌봄 거주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 설계하여 구성

❸ (통합돌봄 중심형) 복지부+농식품부+국토부+행안부

C지역 : '20년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복지부)+사회적 농업(농식품부)+'20년 도시재생 뉴딜(국토부)+'20년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사업(행안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내 아동돌봄기관 설치
-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을 연계하고,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개설
- 주민자치센터에서 할머니 반찬, 할아버지 목공소, 함께하는 빵공장 등을 운영하여 노인 및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 주민자치회가 '우리동네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 생산품을 판매하고 관련 수익은 마을사업을 위해 활용
-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주민자치회 연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 통합돌봄 관련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민·관 협치 및 지역의 역량 강화

❹ (미래교육지구 중심형) 교육부+국토부+복지부+행안부+문화부

D지역 : '20년 미래교육지구(교육부)+'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국토부)+'20년 통합돌봄 선도사업(복지부)+'20년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유형3](행안부)+'20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문화부)

- d초등학교 빈 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증·개축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지역대학, 평생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학교 빈 공간을 공동육아방, 어르신 활동방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와 학생총회를 연결하여 학생 자치학습의 기회 제공
- 주민자치센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운영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d초등학교 공간에서 주민주도의 다양한 문화생활 활동 지원

❺ (사회적농업 중심형) 농식품부+복지부+행안부+교육부+지자체

E지역 : '21년 사회적 농업 조직(농식품부)+'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지(복지부)+'20년 민간지원단체 주도형 지역사업(커뮤니티임팩트)(행안부)+'21년 미래교육지구(교육부)+취약계층 무료급식/도시락 지원(지자체)

- 사회적농장에서 지역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 특수학생 등)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사회적응 및 인지재활, 경제활동 기회 제공
  * 돌봄시설·학교 주도의 사회적농업 참여 수요 파악, 참여자 숙식 제공 관련 주민자치회 참여 등
-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돌봄 프로그램에 사회적농업 연계 과정 개설
- e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으로 사회적농업 체험과정 개설
- 주민자치회와 민간이 협업하여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주민들에게 판매
- 무료급식/도시락 지원대상을 사회적 농장 서비스 대상과 연계

6. 풀뿌리 주민자치 커뮤니티 운영

추진목적

- 주민자치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자료(관련 법, 홍보 동영상, 교육자료, 지자체별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등)를 한 곳에 모아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주요내용

- 온나라 지식 시스템의 커뮤니티 공간에 각 기관별(행안부, 지자체 등)로 주민자치 관련 자료(동영상, 사진, ppt, 한글파일 등)를 저장하여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공지', '주민자치 영상', '사례공유', '묻고 답하기' 등 주민자치 관련 다양한 정보들이 모여 있는 소통 공간으로 구성

역할분담(안)

- **(행정안전부)** 시스템 내 공간 구성 및 총괄 운영
  - 커뮤니티 내 기관 및 내용별 세부항목 구축 및 관리, 시·도 담당자 지정 및 권한·역할 부여 (※ 시·도는 소관 시·군·구의 담당자 지정)
  - 정보 및 자료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관리, 사용 가이드라인 제시, 모니터링 등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별(시·도, 시·군·구) 공간 구성 및 운영
  - 주민자치 관련 소관자료(동영상, 사진, 한글파일, ppt 등)를 분류된 해당 공간(폴더)에 저장, 타 기관과도 자료 공유
  -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 기구 회원들과도 자료 공유 및 전파

행안부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시스템 공간 구성 및 총괄 운영 - 사용 가이드라인 제시 - 시·도 담당자 지정 및 권한 부여 - 모니터링	- 시스템 내 시·도 공간구성 및 관리 - 소속 시·군·구 담당자 지정 및 권한 부여 - 소관 자료 등록	- 시스템 내 시·군·구 공간 구성 및 관리 - 소관 자료 등록 - 주민대표 기구와 자료 공유

※ 지자체 자료 공유 사례 : 세종시

- 세종시 마을기록문화관 개관('19.12.9.)
  - 읍·면·동 마을회의·소식지 등 주민 자발적 주민 자치기록물을 종합적 보존·관리
  - 기존 보건소 리모델링, 1층 전시실 및 사무공간, 2층 기록물 저장 및 교육·회의
  - 향후 시민기록활동가 양성 및 마을소식지 편집·발간 지원 등 계획

참고 3-5 시스템 사용 방법

• 접속경로

- [온나라지식 〉 커뮤니티 〉 커뮤니티 이름] 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입력, 검색(http://www.on-nara.go.kr/GKMC/)

• 커뮤니티 가입 : [커뮤니티 가입 〉 가입]

- 가입 신청으로 멤버로 등록(별도의 승인절차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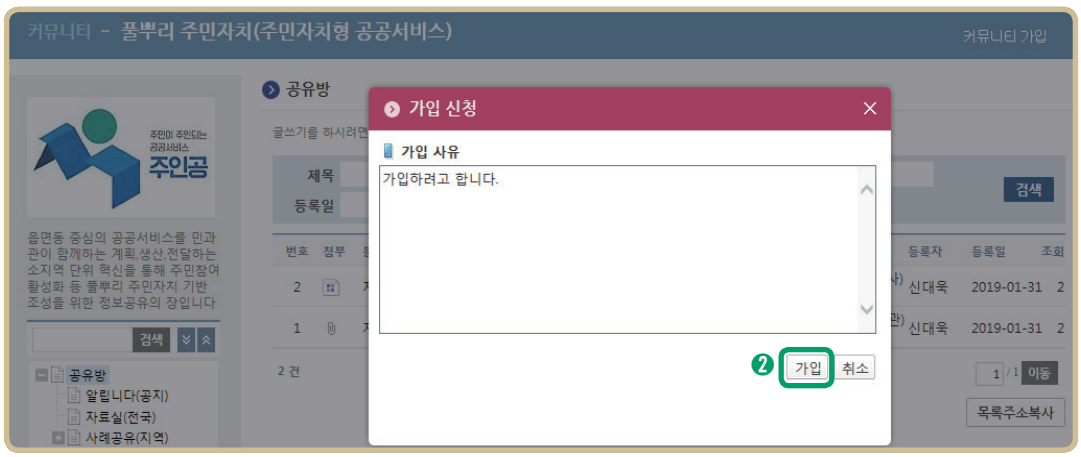

• 자료 업로드 : [자치단체명 선택 〉 글쓰기]

• 관리자(=리더) 지정(권한 부여)

- 시·도 담당자는 행안부로 관리자 지정 요청(haty2005@korea.kr / 044-205-6482)
- 시·군·구 담당자는 소속 시·도로 관리자 지정 요청

★ 관리자(리더)는 시·도별 1명, 시·군·구별 1명으로 제한

- [커뮤니티 관리 〉 멤버 목록 〉 지정할 멤버 선택 〉 선택 맴버를 리더로 변경]

※ 관리자(리더) 역할 : 소관 폴더를 구성·관리하고, 다른 맴버에게 권한 부여

☞ 관리자는 타 기관의 폴더와 자료를 절대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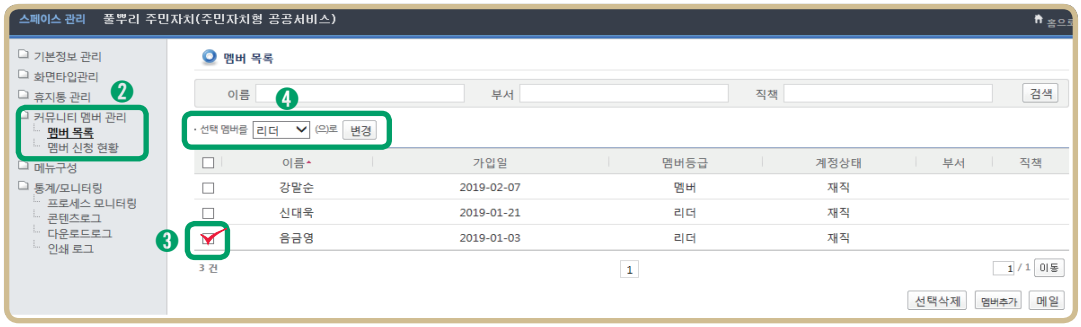

• 관리자(=리더)의 소관 폴더(하위폴더) 생성

- [커뮤니티 관리 〉 메뉴구성 〉 사례공유(지역)에서 소관 폴더 선택 〉 ⊞하위노드 추가 〉 노드 이름에 폴더명 작성 〉 저장 〉 하위폴더 생성 확인]

참고 3-6 세종시 주민 자치기록물 보존·관리 사례

세종시에 전국 첫 마을기록문화관

출처 : 더퍼블릭뉴스(http://www.thepublicnews.co.kr, 2020.1.8.

- 읍·면·동 마을 회의·소식지 등 주민 자치기록물 보존·관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형 기록자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기록문화관을 건립하고 지난해 12월 9일 개관했다.

마을기록문화관은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생산된 마을회의, 마을계획, 마을소식지 등과 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기록물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 건립됐다.

옛 연동면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마련한 마을기록문화관은 1층에 상설 기록전시실과 사무공간, 2층에 주민자치기록저장소, 주민기록실, 교육·회의를 위한 다목적실 공간을 갖췄다.

시는 앞으로 시설을 활용해 주민자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관리하는 한편,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회 개최, 시민기록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기록물 관리 공간의 개념을 넘어 이곳에서 마을소식지 편집·발간 등 주민자치 기록이 가치 있게 생산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록과 문화가 공존하는 주민자치 활동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전국 최초로 개관한 마을기록문화관을 통해 기록자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록문화관은 기록자치 실현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비 3억 4,0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건립했다.

2 지역 대상 정책 연계 지원

1. 도시재생 예비사업(행안부 협력형)

추진배경

-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부처별 지역사업을 주민 주도로 전환키 위해, 자치계획과 부처 지역사업의 연계를 추진 중(행안부, '17.7.~)
  - 한편, 국토부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舊,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 중('18.4.~)

☞ 두 사업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

사업개요

- **(사업정의)**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대표기구* 주관의 '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부처협업(행안부, 국토부) 사업('18년부터 시행)

  * 주민자치회 등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주민자치대표기구 또는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립·지원하는 마을계획단 등

- **(사업목적)**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
-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사업 예시 : ① 마을의 현안 및 문제 조사 ② 주민총회 개최 ③ 마을의제 발굴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 ④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개선 등 마을계획의 실행 ⑤ 주민 참여 소통 공간 조성 ⑥ 마을공동체 행사·축제 개최 ⑦ 마을공동체 주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주민자치대표기구 제안→사업계획 수립·신청(지자체)→사업선정(행안·국토 합동) → 예산지원(국토부) 및 사업시행 → 사후 점검 · 관리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지원센터와의 연계,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등을 지원

- **(추진실적)** '18년 4건, '19년 9건, '20년 9건, '21년 6건 총 28건 선정

추진일정

- '21년 선정계획 공고·공모(9월), 평가·선정(12월), 워크숍 및 예산교부('21.2월)

  * 총 86곳 중 행안부 협력형 6곳, 사업별 0.5억원~2억원을 단년간 국고보조(지자체 매칭 50%)

참고 3-7 2021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계획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75호

2021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舊,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 공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주민참여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목적

-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도모
- 도시재생예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뉴딜사업 전에 완료하여 뉴딜과의 인과적 연계를 강화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 다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舊)소규모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 (신청일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지원사항

-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마을 자원조사, 지역문제 해결, 수익모델 발굴 등 사업화 권고

- **(지원규모)** 80곳 내외(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100억원* 규모

  *사업별 0.5억원 ~ 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총사업비 1억원~4억원),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보조율 50%)

- **(지원기간)** 사업별 1년('21년 단년도 보조)
-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평가 및 선정기준

- **(평가기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30점), 적절성(41점), 효과성(29점)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 적격성, 주민·지자체 의지,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대 8점 가점 부여

  -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고려

- **(사업선정)** 사전검증,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80개 내외 사업 선정

신청방법

- **(신청절차)**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지자체에 제안하면 기초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 광역지자체로 신청

  -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제출

- **(지자체 신청기한)** '20.11.13.(금)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
- **(국토부 제출기한)** '20.11.16.(월) 18:00까지, 광역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 공문 시행 및 LH 헬프데스크로 사업계획서 파일 송부

  - 광역지자체에서는 신청 사업의 적격성, 가점신청 내용을 자체 검증한 후 '20.11.19.(목)까지 국토교통부로 결과 제출

    ※ '공문시행'과 '파일송부'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함

결과발표 : '20.12월(선정사업에 한해 광역지자체로 공문 통보)

기타 세부사항 :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조

참고 3-8 광주시 사례(무등로 3·3·3, 리-이노베이션)

세부사업	사업 내용	관련 사진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연계사업)	• **(추진배경)** 사업대상지 내 30여개가 넘는 빈집·빈 점포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청년창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청년체육과와 협업으로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사항)** - 빈집, 빈 점포 등 유휴공간 DB 구축 -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사업 추진 - 현장설명회 및 공간소유주-예비창업자 매칭 지원 -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창업자 약정식 - 로컬콘텐츠 기반 청년 창업공간 개소(10개소)	
유흥주점 활용 재생 프로젝트 (연계사업)	• **(추진배경)**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 내에 폐업한 유흥주점 11곳 중 1곳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혁신공간으로 리모델링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사항)** - 폐업한 유흥주점 현황 및 소유자 임대의사 조사(11곳) - 시범대상지 확정 - 프로젝트 공모 및 참여자 선정 - 건물주-사업자-행정 상생협약 및 5년 무상임대 약정식 - 공유목공방 등 공유도시실험소 공간 구축 - 폐업한 유흥주점 공간혁신을 통한 상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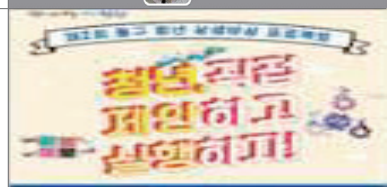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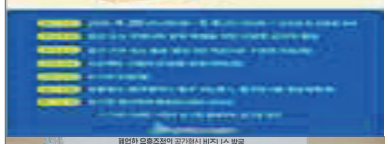

참고 3-9 세종시 사례(해뜨는 동편마을, 연동면)

세부사업	사업 내용	관련 사진
주민역량 강화 교육 운영	• **마을 어르신 강사 양성(할배·할매)** – (분야·인원) 4개분야* / 19명(연령 : 60~70대) * 전통음식전수, 전통육아돌봄, 마을해설사, 마을텃밭 교육 – (시기) '20.9.18.~11.3. – (추진절차) 참여자 모집 → 전문강사 선발 → 할배·할매 강사양성 ☞ **(성과)** 지역의 문제(노인일자리 등)를 주민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향상과 주민주도 사업추진으로 소속감 제고 및 자긍심 고취	
마을체험 프로그램 운영	**1. 할매강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떡케익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분야) 전통음식전수 부분 – (시기·인원) '20.12.19. ~ 12.27. / 400명 * 동영상 & 종이레시피 제공 – (진행방법)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운영(당초 : 대면 체험) – "코로나 상황에 맞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긍정적 반응 * (TV 등 언론보도) KTV(12.24. / 뉴스리포트), 신문보도 등	
	2. 마을텃밭 프로그램 운영 – (시기·인원) '20.5~12월 / 29명 참여 – (사업내용) 유휴공간 활용 체험을 위한 텃밭 조성 및 분양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도·농 교류)	

참고 3-10 기타 사례(인천, 경남, 광주, 대구)

인천, 경남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가좌 4동)	인천광역시 서구(가좌 1동)	경남 진주시(상봉동)
사 업 명	〈가재울주민발전소〉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소통와 회복의 마을 공동체	공동체 도화지 그리기
사업기간	'19.3.~'19.12.	'19.6.~'20.12.	'19.12.~'20.12.
사 업 비	2억원(지자체 매칭 50%)	1.52억원(지자체 매칭 50%)	1.05억원(지자체 매칭 50%)
추진체계	- 지자체 : 행정지원 - 마을n사람 : 기획 및 수행 - 주민 : 프로그램 및 마을의제 도출 참여	- 지자체 : 행정지원 - 인천회복마을 : 기획 및 수행 - 주민 : 프로그램 및 마을의제 도출 참여	- 지자체 : 행정지원 - 주민자치위원회·행정복지센터 : 사업추진 및 협력
사업내용	- 거점공간 조성 - 지역네트워크 형성 - 거점공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아카이빙을 통한 주민 스토리 나눔 및 지역 자산 조사 - 단계적인 사업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발굴	- 주민이 원하는 거점공간 조성 - 다양한 요리를 배우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부엌 프로그램 진행 -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증대	- 로컬푸드(복숭아잼) 활용 마을기업 육성 교육 - 옛)우물터 부지 주민쉼터 열린공간 정비 - 사회적약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안전한 골목환경 정비 - 자율방범대 연계 학생, 여성 등 마을방범 활동 실시
추진성과	주민주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경로당 벽화작업을 통한 마을 미관 개선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공동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기여
향후계획	거점공간 지속 운영 (임대료, 관리비 지원)	거점공간 지속 운영 (임대료, 관리비 지원)	주민공동체 실현 및 마을기업 육성공간으로 활용

광주, 대구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동구
사 업 명	사직애인	영구임대주택 공실을 청년주거로 연결 프로젝트	불로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기간	'19.1.~'20.12.	'19.12.~'20.12.	'19.7.~'20.12.
사 업 비	1.5억원(지자체 매칭 50%)	2억원(지자체 매칭 50%)	1억원(지자체 매칭 50%)
추진체계	- 지자체 : 행정지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관리 및 지원 - 현장지원센터 : 사업추진 역할 수행	- 지자체 : 행정지원 - 입주청년회의·우산빛여울채 청년입주자 협의회 : 프로그램 운영 및 수행	- 지자체 : 행정지원 - 주민자치위원회·도시재생지원센터 : 컨설팅 및 운영지원 - 주민협의체 : 참여 및 홍보
사업내용	- 주민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공감대 형성 활동 등 -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 - 주민경제조직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5개팀 29명(협동조합 설립 3개팀) - 소규모 재생사업 홍보 영상 제작 - 사업추진책자 발간	- 영구임대주택 공실 환경개선 공사 -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 마을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한옥 리모델링)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상시적 소통창구 마련 - 마을의 문제점 모색 및 도시재생 사업에 적용가능한 아이템 발굴 - 지역 콘텐츠 활용방안 및 집수리 이론·실전 역량심화교육
추진성과	협동조합 3개팀 설립, 일자리 창출 19명	공동체 회복과 세대 간 통합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토대 마련
향후계획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 발굴 및 자원연계 등 지원사업 지속 -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연계	타 사업과 연계 및 확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2.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 부여

(1) (국 토 교 통 부)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2) (산 업 통 상 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3)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4) (교 육 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5) (행 정 안 전 부)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1〉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추진배경

- 행안부·복지부·국토부(이하 '3개 부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치·돌봄·재생의 정책적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MOU* 체결('18.9.11)

  * 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생활서비스집약형 도시재생」,「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지역사회 내 융합을 모색키로 결정

사업개요

- **(사업정의)** 지역거점과 마을거점으로 공공시설을 집약(compact)하고, 주변지역과는 유연한 순환연결(network) 체계를 구축하는 공간 조성 및 행정혁신을 지원하는 부처 협업사업
- **(기대효과)** 인구감소에 대응한 공공·생활서비스 체계개편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체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국토부) → 사업계획 수립·신청(지자체) → 사업 선정(행안·국토 합동) → 예산지원(국토) 및 사업시행 → 사후 점검·관리(행안·국토 합동)

추진경과

- 단기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19.6월)

  * 연구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간 : '19.2~'19.6(4개월)

- 도시재생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을 추가, '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반영('19.7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공생활서비스 유형) 공모·선정(의성군·청도군, '19.10월)
- 범부처 인구정책 TF 과제로 채택, 경제활력대책회의 상정·발표('19.11.6.)
-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공생활서비스 유형) 공모·선정(서천군, '20.11월)

향후계획

-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유형' 보완(~6월), '21년 공모·선정(~12월)

〈2〉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협업 추진배경

-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주민수익창출형)을 위해 행안부-산업부 간 부처협업 추진

사업개요

- **(사업정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통합형 보급사업 추진 및 에너지자립마을 구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 지자체/공공기관 주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 모니터링업체, 민간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 **(지원대상)** ❶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 간 융합, ❷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 구역복합
- **(협업목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주민자치회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리의 지속성 확보
  -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소득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
- **(협업내용)**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 제안시 가점 2점 부여

  * 행안부 선정 주민자치회와 주민수익창출형 사업 연계시 가점 2점 부여
- **(추진실적)** '21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형지원) 사업지로 선정된 세종시는 "주민자치회 및 수민수익창출형" 으로 가점 2점 받음

추진일정

- 수요조사 사업공고('20.3월) → 사업계획서 신청(5월) → 공개평가(7월) → 현장평가(8~9월) → 선정 및 계약 체결('21.1월) → 사업 추진('21.1월~12월)

참고 3-11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수요조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6호

「신·재생에너지보급 –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3.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1. 지원 규모

■ **2021년 : 1,122억원 내외** * 2021년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

2.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별첨 1]의 융·복합 지원모델 참조

-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3. 지원 기준

■ 지원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단, 연료전지와 외벽수직형 BIPV는 70%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모니터링비, 시스템 설계비 등으로 구성

  * 에너지원별 설비단가 및 지원단가는 공고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설비 설치비 산정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에너지원별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확정

  *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별첨 4] 참조)의 경우 기준단가의 120% 범위에서 산정

- 전력저장장치는 [별첨 1]의 2번 모델(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의 여타 보조금에서 지원 시 동 사업에서는 지원 배제

- [별첨 1]의 2번 모델(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융합)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서의 전력관리주체를 사업계획서상에 명시할 것

  *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인 도서는 한국전력공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야 하며,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도서는 지자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야 함

4. 지원 절차

사업 공고 (3.20일)	⇒	**사업계획서 접수 (3.23.~5.29일)**	⇒	**공개평가 (6.15.~6.26일)**	⇒	
센터		컨소시엄 → 센터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7.1.~8.31일)	⇒	**선정결과 가내시 및 최종 확정 (9월 중, 12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1년 1월)**		
센터		센터, 컨소시엄		컨소시엄		

*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 등을 기획·선정한 후, 이를 사업계획서로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 [별첨 2]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신청 개소별) 및 건축물대장(신청 개소별) 제출

*** 주관기관은 여건에 따라 사업신청 전에 자체 사업공모과정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

■ **(공개평가)** 사업추진 방법 등 사업내용과 참여 시공기업 적정성 등 시공능력에 대하여 평가 ([별첨 3]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참조)

* 계량평가 40점과 비계량평가 60점으로 평가

• **계량평가 기준**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기본평가 항목 : ① 시공능력(12점), ② 모니터링능력(3점)
  ③ 사업변경률(8점), ④ 민간자부담 비율(7점)
  ⑤ 예산 집행률(5점), ⑥ 사업비 정산현황(5점)

- 배점, 가·감점 적용 항목

①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이 일자리 우수기업(신규 고용인력 및 청년고용 실적기준)일 경우, 배점(+2점) 부여

② "풍력, 소수력,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설비"가 전체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20% 이상인 경우, 가점(+1점) 부여

③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가점(+1점) 부여(단, '21년 설치완료가 가능한 곳에 한함)

④ [별첨1]의 ⑥ 에너지자립마을 고도화 인증 기초지자체의 경우, 가점(+1점) 부여

⑤ [별첨1]의 ⑦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의 경우, 가점(최대 +2점) 부여

⑥ BIPV를 포함한 사업신청 시, 가점(최대 +2점) 부여(단, '21년 설치완료가 가능한 곳에 한함)

⑦ 신청사업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일정비율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가점(최대 +1점) 부여

⑧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사업신청 시, 가점(+1점) 부여

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경우, 감점(최대 △3점) 처리

• **비계량평가 기준**

- 평가항목별 5단계(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로 평가점수 부여

■ **(현장평가)** 사업계획서(제안서)의 사실 여부와 사업추진 여건 등을 확인·점검·조사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역 현장평가

* 접수현황, 공개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선정 및 협약 체결)** 공개·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 체결

* ('20.6 공개평가)순위 결정 → ('20.7~8월 현장평가)용량, 사업비만 조정 → ('20.9 총괄평가)선정결과 가내시 → ('20.12 정부예산확정 시)최종선정 통보 → ('21.1)협약 체결

• **(사업 기간)** 사업 당해연도 내 사업 완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연장 가능

• **(사업계획 변경)** 협약 체결 후 사업계획 변경은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의 지급 취소 사유가 됨

* 사업규모 축소, 설치용량 감소 등의 변경은 지원예산이 변경(감액)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사업 착수 시 선급금 지급(정부 보조금의 70% 이내), 설비설치 진행 또는 설치확인 완료 후 잔여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 정산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으로 충당

5. 사업 접수

• (신청방법) 참여신청 전자문서 송부 및 첨부서류의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https://www.knrec.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수요조사 신청(주관기관))

① 회원가입 신청(주관기관만 가능)

② 센터 승인(비밀번호 발급)

③ 전자민원 로그인 후 첨부서류 등록

* 개소별 개별첨부 시스템으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입력 필요하며, 마감시간까지 신청분을 기준으로 평가 (추가제출 불가). 시스템내 '신청매뉴얼' 참고

④ 융복합지원사업 참여신청 전자문서 송부

* 제목 : 2021년 OO시청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사업계획서 제출

* 첨부서류 : '첨부서류(온라인제출)'으로 기재

※ 마감시간까지 전자문서 도착 및 온라인 첨부서류 등록이 완료된 신청분만 유효

• (접수기간) 2020년 3월 23일(월) ~ 5월 29일(금) 17:00까지

〈 공고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참조 〉

〈3〉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돌봄·치유·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 (사회적 농업)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조직형태)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지원 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소모성 물품), 시설사용료, 교통비, 기타(컨설팅, 상품 기획 및 마케팅 비용 등)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사회적 농업 이용자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단, 임차 우선,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지원한도

- 개소당 6천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지원기간

- 최대 5년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우대요건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 '리 또는 면' 단위에서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수의 농장이 연계·협업하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규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2개소 내외)

  * 사업 신청은 해당 지역의 공동체조직 또는 농장 중 1곳이 신청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대상지역(읍·면) 소재 조직

  * 사업내용 상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예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농장 이용자가 마을 공용공간 화목·초화류 식재 시 참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대상지역(시·군) 소재 조직

  * 사업내용 상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예시: 보건·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장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농지 및 유휴시설 무상 임대 시
- 발달장애인이 사업 주체이거나 사회적 농업 이용자인 조직 및 활동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대상지역 소재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와 연계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시할 경우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담당부서: 교육부 학교정책과) 대상지역 소재 조직으로서 방과 후 프로그램, 특수학급 교육과정 등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시할 경우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사업추진체계 * 2021년 신규 사업자 선정 일정례

사업 수요 제출	→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시·도 → 농식품부(~6.3.)		농식품부 → 시·도 (9.11.~)		사업신청자 → 시·군 (~10.4.)	
사업자 적격심사·제출	→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	**사업자 선정 및 예산 배정**	
시·군 → 시·도 → 농식품부(~10.18.)		(11월 중)		농식품부 → 시·도 (12월 초/'21.1~2월)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돌봄) ○○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하여 어울려 살 수 있기를 희망함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 정보 플랫폼 구축과 청년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법인과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힐링)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도시민,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인근 소외계층 아이들의 쉼터이자 주변 노인들의 작업장이기도 함. 농촌의 자연환경에서 힐링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는 잠자리와 좋은 음식, 소소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체험농장 역할도 하고 있음

  * 단, 농촌관광, 단순 체험행사는 해당하지 않음

참고 3-12 2021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주요 사업내용

연번	지 역		업체(법인)명	주요 내용
	시도	시군		
1	경기	고양시	㈜사탕수수	청소년,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아열대작물 재배)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2	경기	용인시	㈜그리니쉬 농업회사법인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화훼)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3	강원	춘천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주)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화훼)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4	강원	춘천시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	귀농귀촌 희망 청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농촌 생활 적응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5	강원	횡성군	㈜태기산마을 농업회사법인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우리밀, 약용식물 재배)을 통해 돌봄 및 경제활동 기회 제공
6	충북	충주시	쇠불리 교육협동조합	장애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7	충북	제천시	에코마실 농업회사법인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다육식물 재배)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8	충북	제천시	㈜희망그린마을	발달장애인(성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9	충북	진천군	충청사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돌봄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10	충남	천안시	농업회사법인 다함원(주)	고령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돌봄 및 정서적 안정 제공
11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다운 농장	고령자, 청소년, 귀농 청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허브 재배)을 통해 돌봄 및 직업훈련, 경제활동 기회 제공
12	충남	홍성군	홍성우리마을돌봄 영농조합법인	발달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화훼, 허브 재배)을 통해 인지 재활 훈련 및 돌봄 서비스 제공
13	충남	예산군	지오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화훼, 천혜향, 아열대 작물 재배)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14	전북	군산시	사단법인 산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연번	지 역		업체(법인)명	주요 내용
	시도	시군		
15	전북	익산시	익산시농촌마을연구회	고령자,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아로니아, 녹차, 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
16	전북	완주군	완주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꿈드림	장애인, 고령자, 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를 통해 돌봄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17	전북	진안군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18	전남	순천시	사단법인 지역사랑복지협의회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돌봄 및 사회 적응 기회 제공
19	전남	장흥군	농업회사법인 소농두레(유)	아동·청소년, 다문화여성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돌봄 및 농촌 정착 지원
20	경북	포항시	㈜꿈바라기 농업회사법인	지역민(지진트라우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정서 안정 지원
21	경북	경산시	포니힐링농원	장애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 동물(말) 교감을 통해 돌봄 제공
22	경북	의성군	평평마을 협동조합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돌봄 및 농촌 정착 지원
23	경남	진주시	농업회사법인 진양호힐링센터(주)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을 통해 돌봄 및 정서 안정 제공
24	경남	김해시	대감영농조합법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미나리, 허브 재배)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25	경남	김해시	농업회사법인 클라우드베리(주)	고령자, 아동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딸기, 토마토, 고구마 재배)을 통해 돌봄 및 정서 안정 제공
26	제주	제주시	농업회사법인 ㈜제원하늘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감귤 재배)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27	제주	서귀포시	농업회사법인 가뫼물주식회사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감귤 재배), 곤충 교감을 통해 돌봄 및 정서 안정 제공
28	세종	세종시	(사)한국교통장애인 세종시협회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방울토마토, 튤립 등 재배)을 통해 돌봄 및 경제활동 기회 제공
29	인천	강화군	큰나무캠프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각종 농작물 재배), 동물(닭, 산양) 교감을 통해 정서 안정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30	광주	광산구	천사베리 영농조합법인	정신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아로니아, 블루베리 재배)을 통해 정서 안정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참고 3-13 2021년도 사회적 농장 현황(60개소, ✓ 표시: 신규)

소재지		법인명	소재지		법인명
경기 (3)	화성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전북 (10)	군산	사단법인 산돌 ✓
	고양	㈜사탕수수 ✓		진안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
	용인	㈜그리니쉬 농업회사법인 ✓	전남 (7)	영광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강원 (5)	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해남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태기산마을 농업회사법인 ✓		나주	화탑 영농조합법인
	원주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곡성	항꾸네협동조합
	춘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주) ✓		장성	농업회사법인 옐로우 창농(주)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 ✓		순천	사단법인 지역사랑복지협의회 ✓
충북 (7)	보은	농업회사법인 성원		장흥	농업회사법인 소농두레(유) ✓
	제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경북 (5)	청송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주)
		에코마실 농업회사법인 ✓		경산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희망그린마을 ✓			포니힐링농원 ✓
	청주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 종이		포항	㈜꿈바라기 농업회사법인 ✓
	충주	쇠불리 교육협동조합 ✓		의성	평평마을 협동조합 ✓
	진천	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경남 (5)	거창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
충남 (7)	홍성	협동조합 행복농장		함양	㈜호미랑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다운 농장 ✓		진주	농업회사법인 진양호힐링센터(주) ✓
		홍성우리마을돌봄영농조합법인 ✓		김해	대감영농조합법인 ✓
	공주	농업회사법인 ㈜공주 아띠			농업회사법인 클라우드베리(주) ✓
	청양	농업회사법인 ㈜청양푸드	제주 (3)	제주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주)
	천안	농업회사법인 다함원(주) ✓			농업회사법인㈜제원하늘 ✓
	예산	지오팜 ✓		서귀포	농업회사법인 가뫼물주식회사 ✓
전북 (10)	무주	반햇소 영농조합법인	세종 (3)	세종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완주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목인동 영농조합법인
		키울협동조합			(사)한국교통장애인세종시협회 ✓
		완주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꿈드림 ✓	인천 (2)	강화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임실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큰나무캠프힐 ✓
	익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의정원	대전	유성	㈜손수레
		익산시농촌마을연구회 ✓	울산	울주	금곡영농조합법인
	고창	농업회사법인 행복한 치유농장	광주	광산구	천사베리 영농조합법인 ✓

〈4〉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추진 배경

- 지역에서 마을과 학교의 소통 및 협력 부족으로 정책추진*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마을-학교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학교시설 활용(마을→학교), 마을과 연계되는 프로그램과 기관 섭외 어려움(학교→마을) 등

  - 행안부·교육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연계·협력 추진

사업 개요

- **(사업정의)** 교육(지원)청-지자체, 학교-마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연계를 통한 지역 교육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20~)

  * '20년(10개) : 서울(도봉), 부산(사하), 울산(중구), 경기(시흥), 충북(충주, 옥천), 충남(공주), 전남(순천, 곡성, 구례)

    '21년(12개) : 서울(서대문), 부산(진구, 북구), 인천(계양), 세종, 경기(고양, 화성, 오산), 강원(인제), 충북(제천), 전북(군산), 경북(의성)

- **(지원내용)**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구 내 학교 혁신 선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색사업 개발* 및 내실화 지원

☞ **[사업예시]** ❶ 마을방과후/온종일돌봄 활성화, ❷ 학교밖 청소년 및 위기학생 지원, ❸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❹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진로 집중학기 운영, ❺ 마을 연계 미래형 학교혁신 선도, ❻ 대학-산학 연계 직업교육 활성화, ❼ 평생학습체제 구축, ❽ 주민자치회와 마을교육자치회 연계 활성화, ❾ 교육 중심 부처 사업 연계 특화모델 개발

- **(사업대상)** 혁신교육지구 협약을 맺은 시·군·구
- **(협업내용)** 마을-학교 연계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회(분과 형태) 설치하도록 행안부-교육부 간 상호 협력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체제(예시)

• **(추진실적)** '20년 협력지구 대상 지역 내 마을 - 교육간 연계를 위한 주민자치 관련 컨설팅 지원 (전남 순천, 전남 곡성, 부산 사하구)

추진일정

• 사업공고('20.10월) → 사업계획서 신청(11월) → 서류 및 본 심사(12월 초) → 최종확정·발표 (12월 중순) → 사업추진('21.1~12월)

2021년 미래교육지구 특색 사업(신규지구)

• (서울 서대문)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
  - 동 주민자치회 중심 사업 '판' 및 마을 협력 학교지원사업 '상상하라', 온라인 원격학습 '토요동(洞) 학교 확장판', 부적응 학생 심리지원 '달팽이 학교' 등 운영

• (경기 화성) "화성 아키온(아이를 키우는 온 마을)"
  - 학교급 이음형 공동교육과정, 모·여·라 화성학생의회, 이음터 상상 학교, 학생 민간공익단체 사업, 화성 진로체험거리, 찾아가는 코딩교실 등 운영

• (충북 제천) "지역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
  - 청소년 공간 혁신사업, 청소년 복합문화 연합지구, 청소년정책 시장, 마을형 공동교육과정(클래식 합주, 영상제작, 연극 등) 운영

참고 3-14 2021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 공고

교육부 공고 제 2020 - 383호

2021년 미래교육지구(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공모 공고

지역교육의 지속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 개발을 위한『2021년 미래교육지구(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1년간('21.1월~12월) ※ '22년 특교 사업 심의 후 차년도 연계 지원 추진

○ 사업예산: 총 24억원(지구별 최대 1.5억원)

※「2021년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사업('21.1월~12월, 총 5억원)과 공동 공모 추진 (희망지구에 한함)

2. 신청대상

○ 신청 대상: 혁신교육지구로 협약을 맺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시도교육(지원)청 공동 신청('20.10.30. 기준), ※ 세종특별자치시 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 가능. (예시) ㅁㅁ구청-△△구청-ㅁㅁ△△교육지원청

※ 공고일 기준, 혁신교육지구 협약에 대한 사실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할 것

3. 선정 방법

○ 평가 내용

- 사업목적 부합여부, 지역사회 특성 및 지역의 요구 수렴 등을 통한 과제 도출,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 협력체제 구축, 혁신교육 확산 방안,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예산 및 성과관리 등(※ 사업계획, 공모, 선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문 및 사업공모 계획 참조)

○ 선정평가 방법

- (원칙) 선정심사단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지역 선정 및 지원금 최종 확정
- (선정방식)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1차 심사(서면평가) 및 2차 심사(대면평가) 후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선정 및 지원금 최종 결정
  - (1차 심사)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지역 수의 1.5~2배수 내외에서 2차 심사 평가대상으로 확정
  - (2차 심사) 사업계획에 대한 대면평가(발표·면접) 실시

※ 2차 심사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지구에는 2차 심사 일정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해당 심사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사업신청 공문(전자문서), 사전 신청서(신규지구에 한함), 사업 계획서(신규 및 기존지구), '21년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 사업 신청서(공동 공모사업으로 희망 지구에 한해 신청)

○ 제출방법: 공문(전자문서) 접수만 인정(자료는 파일로만 제출, 출력자료 직접 제출 불필요)

※ 첨부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 담당자 이메일(abovo691@korea.kr)로 기한 내 제출

○ 제출기한

- **(사전 신청서) 2020. 11. 16.(월)까지**

※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하여 **공문 제출 협조 요청**(제출처: 교육부 학교정책과)

- **(사업 계획서) 2020. 11. 24.(화)까지 공문 제출**(기한 내 접수만 인정)

○ 접수처: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교정책과

- 문의처: (미래교육지구)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455)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416)

○ 사전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작성 서식 : **[별첨 1, 2] 참조**

※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 기재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별첨】 1. 사전 신청서(양식) 1부
2. 사업 계획서(양식) 1부

참고 3-15 주민자치-학교 연계 사례

(광주 서구) 학교별 마을총회 특화

- **(사업목적)** 지역 공공의제에 대해 다양한 세대의 의사소통 및 참여유도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별 마을총회 실시
- **(추진방향)**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마을로 시선을 넓혀 마을문제 해결 경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주인되는 마을민주주의 실현
  -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 공유 및 주민총회 안건으로 연계하는 참여 구조 마련
- **(추진경과)** ❶ 금부초교 시범사업('18년) → ❷ 학교별 마을총회 특화 추진계획을 통해 시범사업 확산('19.8월~/8개 학교) → ❸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시범사업지로 광주 서구(학교별 총회 등) 선정('20.8월) → ❹ 학교별 마을총회 全 洞으로 확대('20년~)

■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20.8.19.)

- (협약기관) 자치분권위원회,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 (협약내용) 아동·청소년(학교), 공동주택 공동체, 마을공동체 등 읍·면·동 내 단체 및 다양한 계층의 마을총회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주민총회 모델 발굴 및 확산
  - (자치분권위)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확립을 위한 컨설팅과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 청소년 마을총회 지원 및 전국 확산 방안 마련
  - (광주시) 광주형 주민총회 실행을 위한 자치구 연계 등 행정사항과 청소년자치학교 운영, 마을총회 개최 환경 조성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청소년의 학교 내·외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 장려, 학교 연계 등 지원

⇒ 광주광역시 서구*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자치학교와 학교·청소년 총회, 마을 공동체 총회 등 지원

* 금호1동 '학교별 총회 및 주민총회/청소년 주민자치회 출범('20.10.28., 유튜브)'

* 풍암동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학교 실시('20.11.1.)'

- **(세부내용)** 학생들이 직접 마을의제를 제안설명하고 투표를 통해 1위 의제*를 선정, 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마을사업으로 추진

* (의제 사례) 학교 부근 불법주정차 개선, 학생쉼터 조성, 은행나무 악취 해소 등

- 지자체-교육청 간 협업으로 학교총회가 교과과정으로 全 洞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중

  * ('18년) 1개 학교→ ('19년) 8개 학교 → ('20년) 전 洞으로 확대 예정

• **(성과)** 미래세대가 공적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위기 확산

■ (금호1동 학교총회 사례) 전국 최초 학교별 마을 총회

• 금부초등학교 학교총회('18년, '19년)

  - 은행나무 악취 해소, 학생들의 공간 및 쉼터 조성 등

• 상무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금부초등학교, 금호중학교 학교총회('19년)

  - 학교부근 불법주정차 개선, 학생들의 쉼터 조성, 마을 내 편의 시설 조성 등

※ 마을총회 진행 절차(소요시간 약 2시간)

① 마을총회 의미 및 절차 안내(洞 주민자치회)

② 마을의제 제안 설명(학생)

③ 투표(학생) 및 문화공연 : 실제 선거와 같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표대 등 설치

④ 투표 결과 발표 ☞ 득표수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후 주민총회 의제로 제안

※ 추진경과('18~'19)

2018년도				2019년도		
학교총회 추진을 위한 대상학교 간담회 실시	금부초교 학교별 마을총회 시범실시	결정된 의제 '18년 주민총회 상정 (2건)		학교총회를 교과과정으로 도입 (4개 학교)	학교별 마을총회 확대 실시 (4개 학교)	결정된 의제 '19년 주민총회 상정
'18.9월	'18.10.8.	'18.10.27.		'19.3월	'19.5~7월	'19.10월

붙임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발굴 및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간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공동협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은 아동·청소년(학교), 공동주택 공동체, 마을공동체 등 읍·면·동 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총회(사전총회 형태)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주민총회 형태를 말한다.

제3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호 적극 지원·협력한다.

1. (자치분권위원회)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확립을 위한 컨설팅,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청소년 마을총회를 지원하고, 읍·면·동 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총회 개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광주형 주민총회 전국 홍보 및 확산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2. (광주광역시)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실행을 위한 자치구 연계 등 필요한 행정 사항, 자치분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 운영, 마을총회 개최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청소년의 학교내·외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학교 연계 등 학교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 사항을 지원한다.
4. 그 밖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및 추진해 나간다.

제4조(협의조정) 제3조에 따른 협력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5조(시범운영) 2020년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발굴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 학교 · 청소년 총회, 마을공동체 총회 등을 지원한다.

제6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 기관의 업무 내용 중 비밀유지를 요하는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7조(해석, 변경 등)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 시 서면 합의 등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효력) 이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때부터 발생하며,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1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위원장	시장	교육감
김 순 은	**이 용 섭**	**장 휘 국**

(충남 당진) 청소년 100인 토론

- **(사업목적)**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 청취 및 공유
- **(추진방향)** 청소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 증진을 위해 행정에 참여해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조성
  -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실행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추진경과)** ❶ 주민자치회 주도 청소년 100인 토론회 개최('17.7월) → ❷ '18년 충남도민 참여예산 공모로 청소년 문화공간인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설립('17.8월~'19.8월) → ❸ 청소년 운영위원회 '별하'(중·고등학생 15명) 구성 및 운영('19.11월~)
- **(세부내용)**
  - (행 사 명) 청소년이 제안하는 행복한 신평만들기를 위한「청소년 100인 토론회」
  - (일시/장소) '17.7.18.(화) 14:00~17:00 / 신평중학교 체육관
  - (참석대상) 신평면 중고등 청소년 100명(공개모집)
  - (토론주제) 6개 분야* 지역현안
    * 참여와 시민의식, 관광과 놀거리,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생활환경과 자연
  - (토론결과) 토론 후 투표를 통해 우선 순위사업으로 '청소년 소통공간' 조성사업 선정
- **(성과)** '청소년 100인 토론' 계기로 '18년부터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의제 발굴 및 선정하는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마을 민주주의 본격화
  - 또한 청소년위원회(여성·청소년 자치센터 건립방안 협의) 설치 등 의제 논의 단계부터 주민총회 투표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설립

• (개요) 청소년 100인 토론 의제의 하나인 “청소년 쉼터 조성사업”을 도민참여예산을 활용,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여성·청소년자치센터로 설립

• (추진과정)

▶ (2017.7.) 주민자치회 주도로 지역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100인 토론회 개최

→ 방과 후 학생들의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자치센터”건립 요청

▶ (2017.8.) ’18년 충남도민 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 → 사업비 300백만원 확보

▶ (2017.9.) 자치회–신평소방서 간 MOU체결을 통해 舊119안전센터 사용 협약

▶ (2018.1.~10.)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주민, 학생, 자치위 등) 및 운영

→ 청소년 자치센터 공간조성 의견 제시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논의

▶ (2018.11.~2019.8.)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진행 및 준공

▶ (2019.11.~) 청소년 운영위원회‘별하’(중·고등학생 15명) 구성 및 발대식 개최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자치센터 운영세칙 및 2020년 프로그램 구성 논의

▶ (2020.1.~) 지역주민 대상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100인토론회

자치센터 추진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자치센터 개관식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도자료

〈5〉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청년공동체를 발굴·확산하고, 지역과 연계한 청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활력 제고 도모

『청년+공동체=활성화』/"청년이 모여 지역을 바꾼다"

• **(사업내용)** 지역에서 활동중인 청년공동체 15개팀 선정·지원

- (지원대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

  * 공동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활동 지원, 멘토 및 전문가 컨설팅, 청년공동체 간 네트워크, 주요활동 홍보 지원 등

2020년 추진

• **(선정유형 및 규모)** 2개 유형 / 청년공동체 15팀 이내

(지역선도형) 지역 內 청년공동체와 교류·소통이 활발하고 지역의 중심이 되는 『Hub공동체』로서, 새로운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그 공동체가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청년공동체

* 성과목표(예) : 신규 청년공동체 0개소 발굴, 0개소 법인화, 0개소 네트워크 조성 등

(지역연계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활동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공동체로서,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활력 제고(경제적, 문화적, 사회적)를 목표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공동체

* 성과목표(예) : 청년들의 창업공간 0개소 조성,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학교(돌봄교실)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단위 지역축제 0회, 지역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취약계층 돌봄 등

• **(선정방법)** 지자체 추천* + 공개모집(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지자체 사업과 연계되거나 주민자치회와 연계*되어 있는 청년공동체

〈 주민자치회 연계 〉

(대상) ① 청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에 포함되어있거나 주민자치회 내 분과(청소년 및 청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공동체, ②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활동,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청년공동체

(신청) 계획서(신청서) 작성 시 청년공동체-주민자치회 사전 협의를 통해 활동 이력 및 계획, 각자의 역할 기입

• **(선정기준)** 성과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팀 중심으로 선발(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기간)** '20.4. ~ 10월(7개월)

• **(발대식)** 사업계획 등 설명, 공동체 소개 등 발대식 개최(4월 중)

• **(성과평가)**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평가하는 성과보고회 개최(10월 중)

* 우수 청년공동체에는 인센티브 지원

3. 주민자치회의 자원봉사센터 연계·활용

기본방향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주민센터 내 '동자원봉사상담가'를 통한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배치 지원
- 주민자치회 간사 또는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도록 주민자치회의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등록을 통해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실적등록 대상은 주민자치회 내 위원이 아닌 일반 자원봉사자

주요내용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

  * 자원봉사센터에서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통해 수요처의 적합 여부를 판단

-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자원봉사자 일감·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입력(승인 요청)할 수 있는 수요처 관리자 등록·권한 부여
- (등록절차) ① 접수* → ②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③ 승인 공문 발송 → ④ 수요처 기관 등록 및 관리자 1365 포털 전산 등록 → ⑤ 전산승인

  * 수요처 등록 신청서, 자원봉사 일감활용 계획서, 고유번호증, 기관소개서 등(지자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서식 참조)

- 등록대상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민간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자치 기관의 수요처 등록 현황】 *'21년 1월 7일 기준,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 주민자치회 23개기관(행정기관 1, 공공기관 6, 공공시설 1, 민간기관 12, 민간시설 3)
- 주민자치위원회 42개기관(행정기관 5, 공공기관 6, 공공시설 10, 민간기관 21)
- 주민자치센터 114개기관(행정기관 46, 공공기관 39, 공공시설 21, 민간기관 2, 민간시설 6)

붙임

1. 표준조례 가이드 전문
2.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문
3. 주민자치활동 관련 유권 해석
4. 주민자치회 운영 규칙(마장동, 서천군)
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안내서
6. 온라인 콘텐츠 안내
7.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표준 정관
8. 주민자치 주요 Q&A(2020년 주민자치 컨설턴트 답변)

1. 표준조례 가이드 전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 : 자치제도과 - 1176(2013.6.20.)
개정 : 자치제도과 - 2369(2014.7.24.)
개정 : 자치제도과 - 2153(2015.6.17.)
개정 : 자치제도과 - 374(2017. 2. 1.)
개정 : 자치분권과 - 3169(2018.8.30.)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2666(2019.8.28.)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1222(2020.4.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지역에 따라 자치계획 또는 마을계획으로 규정)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4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하 등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지역에 따라 외국인 자격요건 자율 결정)

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삭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호 대상을 2호 대상 보다 우선적으로 구성)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또는 군수·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삭제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 · 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월 1회, 격월, 분기 1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또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또는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또는 동,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3조(감독)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 운영은 ○○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시(또는 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 · 면 · 동의 경우)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 시범실시 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도입 시행 이전까지 실시)

2.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2017.11.02. 조례 제1247호
(일부개정) 2019.10.10. 조례 제1377호
(전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45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 의사결정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단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공공목적을 가진 단체에 한정한다.
6.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치활동, 평생학습 및 문화·복지·환경개선 활동을 추진·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능력 강화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활동 지원 시설을 말한다.
7. “시설”이란 자치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 자치회관 뿐만 아니라 자치회관과 연계

하여 사용하는 지역 시설도 포함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 이상 3명 이하를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각 호별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80퍼센트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제2조 제5호에 따른 단체 중에서 추천받아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20퍼센트 이내

③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회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은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에는 40대 이하가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해당 지역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선정위원회의 위원, 도봉구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위원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위원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대한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되, 위원 선정 후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선정위원회는 추첨으로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며, 그 외 각 호별 10명 이하의 예비자 순위를 추첨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후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④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 순서대로 위촉
2. 예비 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되어 충원하고자 할 경우: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추첨 후 위촉

⑤ 동장은 위원 모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추첨 진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과정을 임기 중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와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 요구를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 해촉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서와 의결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도와 주민자치 업무를 지원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③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며, 선거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추천해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④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이 연임할 경우 제3항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15조(사무국 또는 간사) ① 자치회장은 간사를 채용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실무를 총괄하는 인력으로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채용한다. 다만, 2회 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봉구 주민 중 채용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된 결과보고서는 주민총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지역 주민에게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추가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 감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정원으로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2. 분과회의는 각 분과별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장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주민자치회 임원과 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민관협력회의는 주민자치회 임원과 동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재난·재해상황 등 발생 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⑥ 온라인 회의에 참석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구성한다. 일반 주민 분과원은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분과 활동에 한정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속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수건, 부채, 컵, 양우산, 휴대용 선풍기, 마스크, 시계, 손톱깎이 세트, 양말, 스카프, 마스크팩, 에코백, 유에스비,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과 주민자치회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3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③ 수립된 자치계획은 공포하고,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4장 자치회관

제24조(설치)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2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주민자치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3. 건강증진, 작은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② 제1항제1호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 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또는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시설이 협소할 경우 자치회관 시설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복지관, 체육시설 및 공원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징수한 수강료의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 운영을 제4조에 따른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알맞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그 밖의 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관할 구역에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⑧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 전반과 수입·지출 등 재정운영 실태를 소속 공무원 및 회계책임자 등에게 매월 보고받고 회계감사와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28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강사에 대한 수강자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다음 강사채용에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자치회관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한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해 주민자치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용을 반기별로 주민에게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그 시기는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로 한다.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 포기를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자치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2.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③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를 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동장은 주민이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등이 훼손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33조(주민참여 등)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행사개최 등)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평가와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보고) ① 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내용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해당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동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8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9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자치회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45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한다.

제4조(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단체 위원 구성 비율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충족하도록 한다.

제5조(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정수 충원 및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021년 12월 19일로 변경한다.

제7조(협의회 시행 경과조치) 제20조에 따른 협의회는 14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후 시행한다.

제8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4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3. 주민자치활동 관련 유권 해석

〈행사 또는 홍보 활동의 선거법 위반 여부〉

• 행정안전부(주공사업추진단) 질의 →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설명회 등 행사 개최

• 주민자치회의 위원 모집 홍보 기간 및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상시제한, 90일 제한, 60일 제한 사항에 위배가 없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법령에서 행사 개최를 위임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설명회 등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능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기부행위(홍보물품·다과·식사 제공)에 대하여

- 주민자치회 정기·임시회의,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자치계획 활동에 주민자치회가 다과 및 식사 등을 제공하는데 있어 선거법 상시제한, 90일 제한, 60일 제한 사항에 위배가 없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홍보용품, 다과,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나목에 따라 가능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주민자치센터 무상이용〉

- 세종시 질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회신

질의 및 답변

- 시에서는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발굴하고 있으며,
  -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작은도서관의 관리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 주민자치회를 마을공동체로 보아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에 따라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

⇒ 따라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사안 주민자치회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이 가능

⇒ 또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 상기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에 해당할 경우라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주민자치회에 관리위탁할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

〈행정사무 위탁시 수의계약 1〉

• 광주 광산구 질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회신

질의 및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조 사목(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분권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규정을 근거로 적용하여 민간위탁금 2천만원 이상의 행정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질의 사항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위임·위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

〈행정사무 위탁시 수의계약 2〉

법제처 의견제시 19-0024

질의 및 답변

- 화성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법 제28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4항 등 관련)

⇒ 화성시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면, 화성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예컨대, "제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0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화성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

⇒ 또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둔다면 그 규정을 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사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례 참조)

⇒ 즉, 화성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 주민자치회의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4. 주민자치회 운영 규칙(마장동, 서천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18. 02. 07. 제　　정
2019.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및 기능) ① 정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② 주민자치회 기능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 · 수탁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한 의견 제출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홍보, 기금 운용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마장동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4.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5.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6.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제6조(위원 모집) ①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 모집 한다.

②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

③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④ 공고문은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제7조(위원 신청 및 관리) 위원 후보자 추천과 위원 공개모집은 각 호의 서식에 따르며, 위촉 및 해촉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추천서
2. 위원 신청서

제8조(추첨관리위원회) ①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②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주민자치위원 위원 추첨 절자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 공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도의 서식에 의거 인적사항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 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지역 내 주민여론 수렴 등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내외의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자치회장이 한다.

3.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둔다.

② 모든 위원은 분과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감사, 간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한 주민자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례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간 6회 이상 불참자
2. 회비를 3개월간 미납한 자
3. 분과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4.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5.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장, 기관장, 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6. 둘 이상 주민자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추첨관리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7.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중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차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특별한 소명이 없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의 위촉해제는 주민자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 및 임기)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2명 (남자 1명, 여자 1명)

3. 감사 1명
4. 고문 0명
5. 간사 1명

제13조(임원 선출) ①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자치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간사는 자치회장이 위원 중 임명토록 한다.
③ 고문은 자치회장 역임 위원 중 본인의 자유의지를 반영하여 자치회 선출 또는 주민자치회 공로가 인정된 위원 중 자치회장이 임명토록 한다.
④ 감사는 자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제1항의 선출 및 해임 방법 등은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14조(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주민자치회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자문을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각 분과사업을 수행한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 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⑦ 감사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집행을 감사하고 정기회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감사 자료인 행정 모든 문서 및 증빙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한다. 감사 업무 매뉴얼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8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진행절차는 분과위원 모집이 되면 분과 구성 워크숍 등을 통해서 필요와 욕구를 모으고, 필요와 욕구에 따라 분과를 설치한 후 참여하고 싶은 분과에 참여하여 분과별 계획을 수립한다. 단, 자치회관 운영 분과는 필수로 한다.

④ 주민공개 모집된 분과위원 및 주민자치위원은 분과위원이 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 결과를 기록하여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무·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2. 임시회의
3. 임원회의
4. 분과위원회
5. 민관협의회

②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별도의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정기회) 정기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세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2.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결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위촉해제 요구
5. 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6. 분과위원회 구성
7.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8조(회의 개최) 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에서 개최를 요구할 때
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③ 자치회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기 정기회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 한다.

제19조(회의 의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정기회의 및 주민총회는 제23조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은 위원 과반수 출석의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임원회) ① 임원회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임원회는 세칙 제12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회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기회에 부의할 사항
3.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4.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분과 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매월 정기회 이전에 1회 이상 분과위원회를 수시 개최한다.

② 분과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월례회의) 개최 7일 전 임원회에 부의한다.

제22조(사업계획 수립) ① 분과위원장은 사업진행절차(메뉴얼)에 따라 다음연도 당해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② 임원회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수합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안을 정기회에 보고한다.

③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타 단체 협조사항 등

④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운영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 주민총회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인구의 1,000분의 5 이상 참여로 성립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

회장이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교부금, 수입금, 찬조금, 회비,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 예산
2. 수입금은 주민자치회관 운영 및 마주보고카페, 수수공방 등 수익사업
3. 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4. 회비는 성별 관계없이 20,000원으로 한다.
5. 특별회비는 정기회의시 의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간사가 관리한다.

② 자치회장은 총회 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계 및 지출은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매월 정기회의시 마주보고카페 수입, 지출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회계 연도 시 비품, 소모품, 현물자산 등 위원들에게 알 권리를 촉구한다.

제28조(직인 관리)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도의 서식의 따라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3. 문서접수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0조(상벌) ① 위원 임기만료 시 주민자치회는 당해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2년 이상 위원에 한한다.

② 자치회장이 위원의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거나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18. 12. 1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자치의 권한은 더 많은 주민과 나누고, 활동은 스스로 한다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7.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제4조(명칭 및 설치) ①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회 사무소는 충남 서천군 마산면 한마로 456-51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주민자치위원 모집) ① 본회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 모집한다.

②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한다.

③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 소 이상에 공고한다.

제6조(위원 공개) 본회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적사항을 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제7조(주민자치회 구성)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회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2.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모든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장은 위원의 추천을 받아 "활동가"를 임명할 수 있으며 활동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활동가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8조(임원 및 고문) ①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주민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2명(남자 1명, 여자 1명)
3. 감사 3명
4. 사무국장 1명

② (고문)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지역사회로부터 덕망이 높은 자로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선출) ①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사무국장은 공개 모집하여 채용한다.

③ 제1항의 선출방법은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10조(임무) ① 자치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연장자가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본회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④ 감사는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정기 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 시 정기회의 의결 후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1. 본회 자금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관계법령 또는 관련세칙을 위반하면서 본회 활동을 한 자

3. 임원으로써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기타 사회 통념상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한 자

제12조(회의) ① 본회는 회무·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임시회의
4. 임원회의
5. 분과회의

② 본회와 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들은 출석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개최) ① 주민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써 연 1회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에서 개최를 요구할 때
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④ 자치회장은 임시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기 정기회의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본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제14조(회의 의결) ① 본회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세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2. 사업계획안 심의의결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분과위원 포함) 해촉
5. 분과위원회 구성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6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임원회의는 운영세칙 제8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3.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4. 면장이 부의한 사항
5. 기타 본회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권한 및 의무

제17조(권한) 본회는 조례 제6조의 의거 다음의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협의권한
2. 수탁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제18조(사업비 관리) 본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9조(회비) ① 필요한 경우 위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회비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20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교부금, 수입금, 찬조금, 회비,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 예산
2. 수입금은 주민자치회 수익사업
3. 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4. 특별회비는 정기회의시 의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과 절차에 따라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④ 사무국장은 정기회의시 수입, 지출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분과위원 포함)으로서 품의를 지켜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① 명예직 무보수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②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정기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직인 관리) ① 본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본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3. 각종 회계장부
4. 사업계획서
5.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본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27조(위원 등의 해촉) ①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세칙 제22조에 의한 위원 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자
2. 회비를 3개월간 미납한 자
3. 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4. 분과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특별한 소명이 없을 경우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상벌) ① 위원 임기만료 시 본회는 당해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2년 이상 위원에 한한다.

② 위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를 거쳐 확정된 날로 (2018.12.11. 제정)부터 시행한다.

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안내서

목 차

안내
4 일러두기
5 **[참고]** 마을역량 단계 구분과 선택 가능한 사업 유형 예시
6 **[참고]** 충남 희망마을 사업과 농식품부 역량단계별 발전전략 | 대응개념도
7 **[참고]** 우리 마을에 맞는 사업은? 역량단계별 마을 사업 예시 | 개념도
8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을 연계한 연중 및 연차별 표준모델(안)
9 충남도 실국별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목록 현황

일반마을
12 01 | 농촌현장포럼
13 02 | 주민자치 아카데미
14 03 |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15 04 | 우리 마을 주치의제
16 05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17 06 | 농어촌장애인·고령자주거환경 개선사업
18 07 | 농어촌마을 안전사각지대 소방안전망 구축

선행사업
20 08 | 희망마을 선행사업
21 09 |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22 10 | 슬레이트 처리사업
23 11 | 도랑살리기 운동
24 12 | 모범경로당 조성 운영
25 13 | 협동조합 발굴 육성 지원

새싹마을
28 14 | 마을만들기(자율개발)
29 15 | 산림휴양치유마을(기반)
30 16 |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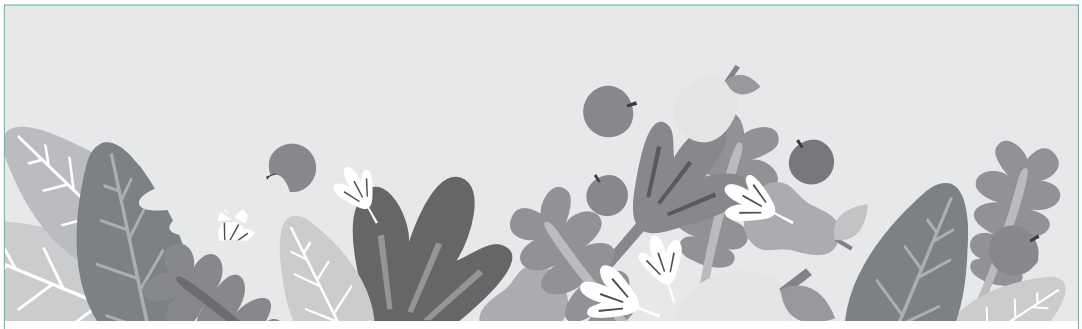

31 17 |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2 18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33 19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34 20 | 농어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지원
35 21 | 마을기업 육성사업

꽃마을
38 22 | 마을만들기(종합개발)
39 23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40 24 | 마을만들기(신규마을)
41 25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2 26 | 산림휴양치유마을(종합)
43 27 | 어촌종합개발 사업
44 28 |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해수부]
45 29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열매마을
48 30 | 농어촌인성학교
49 31 | 농촌체험휴양마을

네트워크
52 32 | 농촌다움 복원 사업
53 33 |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54 34 |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55 35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56 36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시범사업)
57 37 |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58 38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해수부]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목록』 요약자료집 안내

일러두기

1.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는 매우 다양한 행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양하고 사업도 많아 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계 공무원들도 전체사업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충청남도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농어촌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열심히 추진해 왔고, 교육을 마치면 마을여건에 맞는 연계사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마을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일몰사업) 새롭게 신규 사업이 도입되는 등 마을 사업의 정보가 자주 바뀌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런 이유로 마을 사업의 간단한 개요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 리더와 관계 공무원들이 널리 학습할 수 있도록 매년 개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4. 자료집 책자에서 소개하지 못한 **'사업지침'**이나 **'공모계획'**, 변동사항 등은 **'충남도 3농정책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3nongMain.do)', 충남마을넷 밴드** 등에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알고 싶거나 궁금해 하시는 사업은 '담당부서와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자료집에 명시한 사업은 **생활환경, 경관, 체험·소득, 사회적경제, 문화·복지, 역량강화, 주민자치,네트워크** 등의 분야에 걸쳐 **38개** 단위사업입니다. 각 마을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습니다. 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빠진 사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향후 계속 보완하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이나 공모방식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담당부서 및 담당연락처는 2019년 1월 행정개편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마을역량 단계 구분과 선택 가능한 사업 유형 예시

역량 단계별	선택 가능한 사업유형
1단계 일반마을 마을 공동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려는 마을	· 농식품부 현장포럼 (색깔마을) · 각종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 · 문화, 복지, 경관, 안전 등 소액 프로그램 사업 ※ 시·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주민교육
1.5단계 선행사업 주민교육을 완료하고 소규모 실행 사업을 시도해 보고 싶은마을	· 희망마을 선행사업 · 모범경로당 등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 빈집 정비, 도랑살리기 등 소규모 H/W 사업 ※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소액공모사업
2단계 새싹마을 선행사업의 경험을 축적하여 중규모 하드웨어(H/W) 기반구축이 필요한 마을	· 농식품부 마을만들기(자율개발) · 농식품부 외 타 부처 중규모 사업 · 예비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경제공동체 사업
3단계 꽃마을 중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대규모 하드웨어(H/W) 기반 구축이 필요한 마을	· 농식품부 마을만들기(종합개발) · 농식품부 마을만들기(신규마을) · 산림청 마을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 사회적기업, 두레기업 등 중규모 경제공동체 사업 · 어촌 종합개발 사업
4단계 열매마을 마을의 안정된 발전과 유지 관리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한 마을	· 인성학교 지정 등 사후관리 S/W 프로그램 사업 · 체험휴양마을 인증, 마을사무장 배치 사업 · 시·군 역량강화사업 현장포럼(사후관리) ※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보건소 등 프로그램 사업
네트워크 읍·면소재지를 기반으로 인근 마을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하고 하드웨어(H/W)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합의한 읍·면 혹은 시·군	· 농촌다움 복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 면소재지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선도·일반, 통합지구) ·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 농식품부, 국토부, 행안부 등의 각종 공모사업

※ 위의 빨간 내용 중심으로 검증 필요

[참고]

충남 희망마을 사업과 농식품부 역량단계별 발전전략 | 대응 개념도

※ 아래 그림은 충청남도 희망마을 사업을 기준으로 농식품부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를 연계시킨 개념도입니다.
1.5단계 선행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현장포럼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필수사항)	(예비단계 완료지구대상)	(진입단계 완료-평가 대상)	(사업 완료지구 대상)
역량강화	**기반구축**	**종합개발**	**활성화**
사전역량강화 실시 - 마을발전계획수립 ↓ - 자체사업 경험 축적	마을만들기(자율개발) -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	마을만들기(종합) -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 - 인성학교 등 활성화 S/W추진

충청남도

1단계 일반마을
희망마을 1기
(~2014년)
마을학교 경험 마을
현장포럼 경험 마을
현장포럼 신규 마을

시군역량강화사업
• 공무원, 리더교육
• 자체 현장포럼

1.5단계 선행사업
희망마을 2기
(2015~)
1. 희망마을 선행사업
(마을당 3천만원)
2. 융복합 사업
(소규모 하드웨어, 중규모프로그램사업)

2단계 새싹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
5억원 규모 사업
중규모 H/W 구축
행복문화마을 등
소규모 경제공동체

3단계 꽃마을
마을만들기(종합)
10억원 규모 사업
대규모 H/W 구축
산림휴양치유마을 등
중규모 경제공동체

4단계 열매마을
사후 유지관리
• 인성학교 지정
• 체험휴양마을 인증 등
• S/W 프로그램 사업

5단계 네트워크
읍면과 마을 연계
• 농촌다움 복원
• 기초생활거점육성
•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일반, 통합지구)
• 신활력플러스

융복합 사업 : 하드웨어 및 경제공동체, 마을 외부 연계 프로그램 사업

역량강화사업(사업 자체+시군 지역)+중간지원조직 → **성과의 외연적 확산**

[참고]

우리 마을에 맞는 사업은? 역량단계별 마을 사업 예시 |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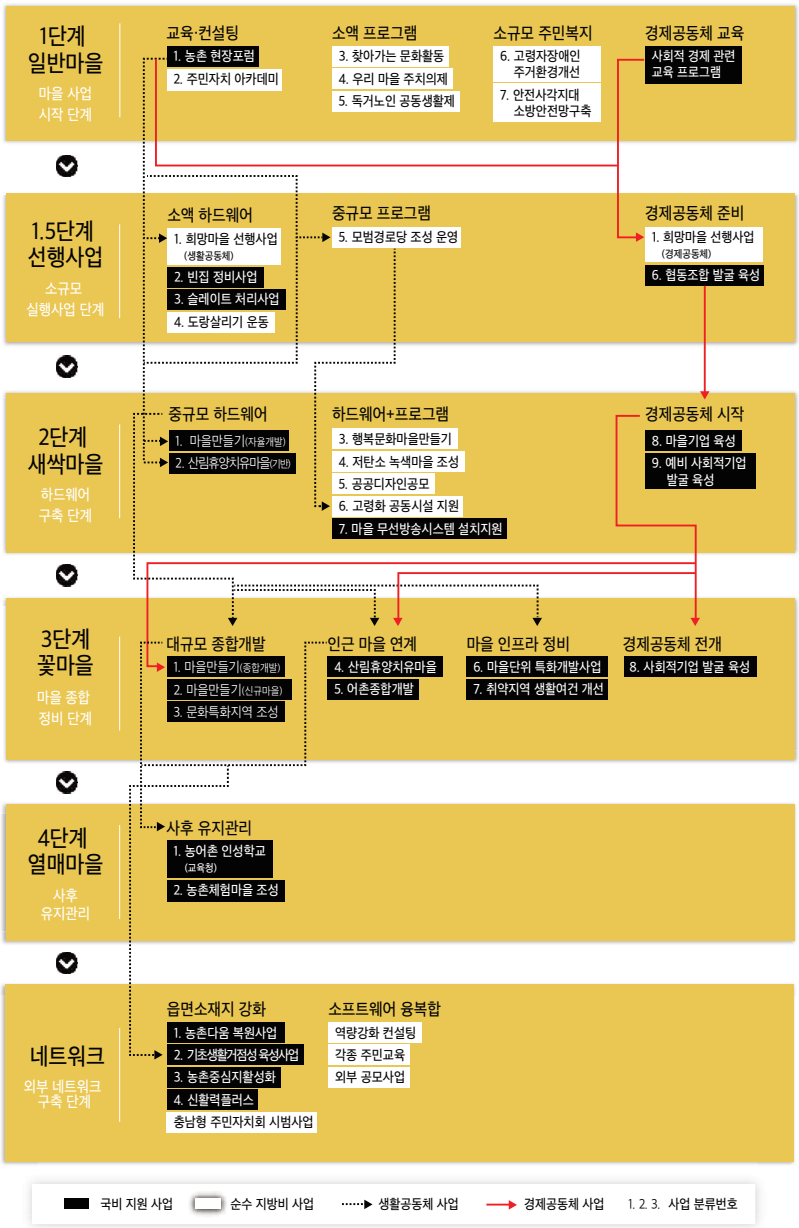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을 연계한 연중 및 연차별 표준모델(안)

※ 아래 그림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2017년부터 마을의 역량단계별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을 연계한 표준모델(안)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충남도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연차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결합하고 소규모 사업을 거쳐 하드웨어 기반 구축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쳐 마을 자체의 내구성 강화 및 마을만들기의 지속방향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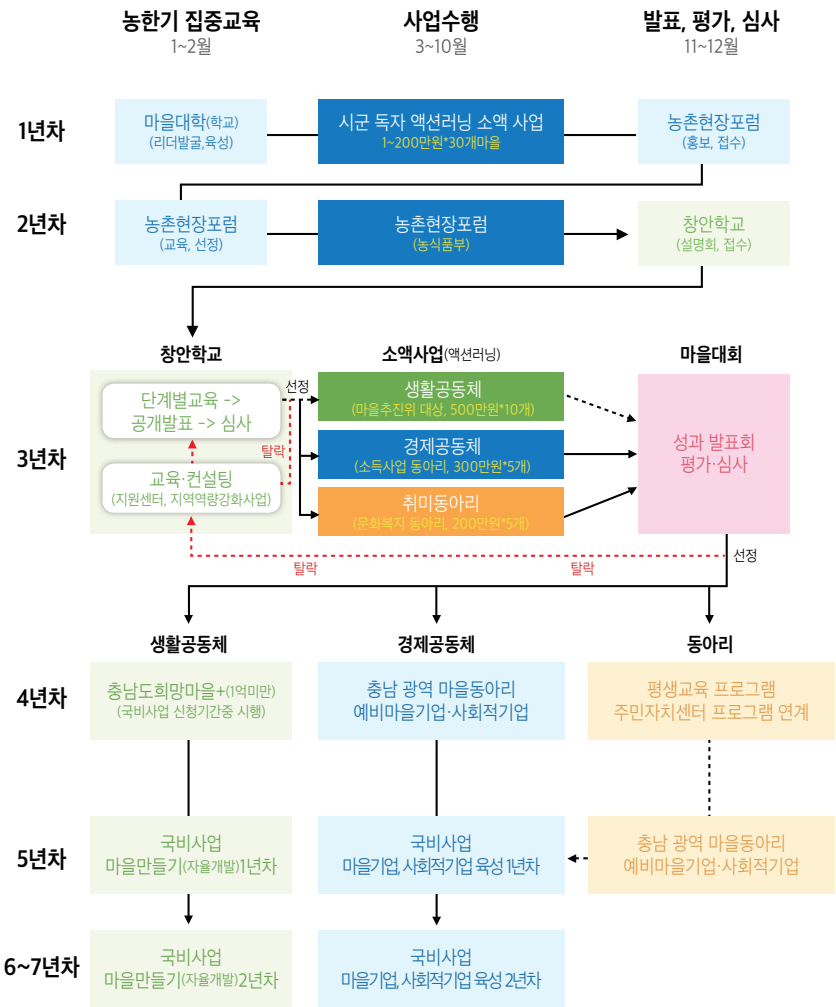

충남도 실국별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목록 현황

구분		도청 담당부서		사업명	비고
역량단계	사업번호	실국	실과		
1단계	1-1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현장포럼	1
1단계	1-2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2
1단계	1-3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3
1단계	1-4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우리마을 주치의제	4
1단계	1-5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5
1단계	1-6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농어촌 장애인·고령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6
1단계	1-7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농어촌마을안전사각지대 소방안전망 구축	7
1.5단계	1.5-1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희망마을 선행사업	8
1.5단계	1.5-2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9
1.5단계	1.5-3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10
1.5단계	1.5-4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도랑살리기 운동	11
1.5단계	1.5-5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모범경로당 조성 운영	12
1.5단계	1.5-6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협동조합 발굴육성 지원	13
2단계	2-1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만들기(자율개발)	14
2단계	2-2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휴양치유마을(기반)	15
2단계	2-3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조성	16
2단계	2-4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17
2단계	2-5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18
2단계	2-6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시범사업)	19
2단계	2-7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농어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지원	20
2단계	2-8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21
3단계	3-1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만들기(종합개발)	22
3단계	3-2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23
3단계	3-3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만들기(신규마을)	24
3단계	3-4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5
3단계	3-5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휴양치유마을(종합)	26
3단계	3-6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	27
3단계	3-7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8
3단계	3-8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9
4단계	4-1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어촌인성학교	30
4단계	4-2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31
네트워크	5-1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다움 복원 사업	32
네트워크	5-2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33
네트워크	5-3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34
네트워크	5-4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35
네트워크	5-5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시범사업)	36
네트워크	5-6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7
네트워크	5-7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해수부)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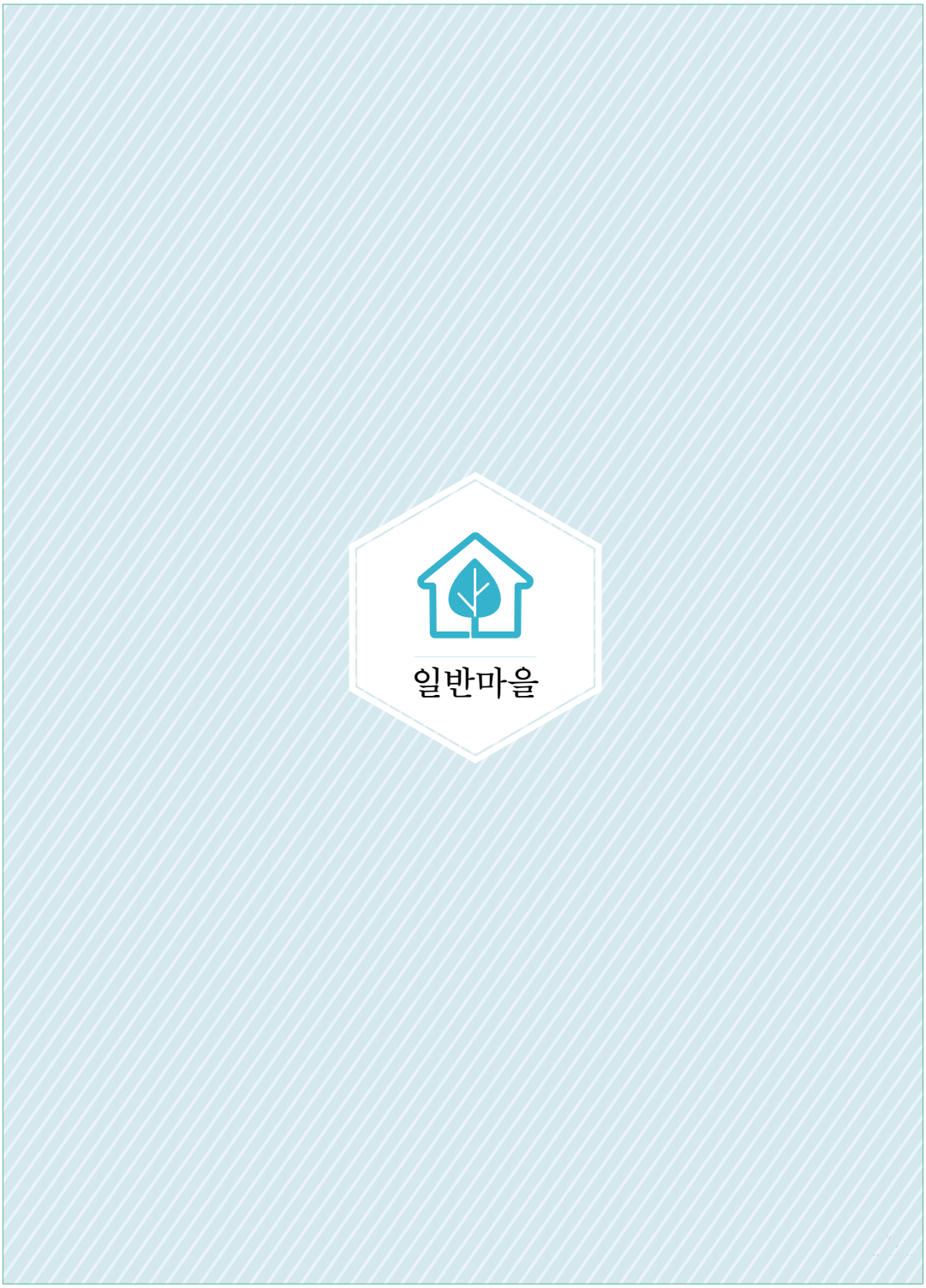
일반마을

01

1단계 일반마을

농촌현장 포럼

충남도 | 농촌활력과　　담당자 성명 | 이중의　　전화번호 | 635-4076

TIP 이건 마을에 본 사업을 추천합니다

- **농촌현장포럼**은 현장활동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 자원을 찾아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테마·과제를 발굴하여 주민스스로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입니다.
- **마을 선정**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마을,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마을, ▲사업선정 후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마을, ▲사업시행과정 중에 갈등 해결 등 현안 문제 해결이 필요한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단계 새싹마을 단계에 해당하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창조적마을만들기)공모사업은 **농촌현장포럼 교육을 이수하고 소액사업(희망마을선행사업 등) 추진실적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기간	1년간(마을추진위원 교육 참여 : 5회)
사업규모	마을당 10백만원(국비36%, 도비19%,시·군비45%), 도내 연간 65마을내외
사업주관	농식품부(지역개발과), 도(농촌마을지원과), 시·군(건설과 등)
사업내용	『사전조사,리더교육(2회),주민교육, 테마과제 발굴 워크숍, 선진지견학, 마을컨설팅』 등을 거쳐 마을발전계획 수립
선정방법	공모방식으로 시군에서 평가·선정(✓)
신청 또는 선정기준	신청방법 : 마을(신청서 작성) → 읍·면(경유) → 시·군(신청) 세부자료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침] 등 붙임자료 참고
선정시기	매년 1~2월경(농식품부 계획에 따름)
홍보방법	시군 공문시달(✓), 도홈페이지 공고(✓), 공무원설명회(✓), 주민설명회(✓), 기타(　)

충남도 계획·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년	2019년 계획	2020년 ~
마 을 수	910마을(누적)	63마을	매년 63마을 내외
사 업 비	7,120백만원(누적)	630백만원	마을당 10백만원

02
1단계 일반마을

주민자치 아카데미

충남도 | 자치행정과　　담당자 성명 | 배관열　　전화번호 | 635-3605

TIP 이런 마을에 본 사업을 추천합니다

-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현안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시대정신에 맞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주민,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과정별 교육(주민자치 이론·심화·실무교육 등)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마을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지역계획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 및 갈등해소, 주민화합 등 지역공동체 복원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기간	1년
사업규모	140,000천원(도비 70,000, 시·군비 70,000) ※ 시단위 12,000천원 / 군단위 7,000천원
사업주관	도(자치행정과), 시군(자치행정과 등)
사업내용	이론교육(주민자치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 마을축제 등) 심화교육(지역자원조사, 마을회의 기법, 우리동네 아젠다 발굴 등) 실무교육(지역계획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탐방 등)
선정방법	시·군 자체 시행
신청 또는 선정기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희망시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
선정시기	매년
홍보방법	시군 공문시달(✓), 도홈페이지 공고( ), 공무원설명회(✓), 주민설명회( ), 기타( )

충남도 계획·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계획	2020년 계획
사 업 량	131회	140회	150회
사 업 비	14백만원	14백만원	14백만원

03

1단계 일반마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충남도 | 문화정책과　　담당자 성명 | 이해인　　전화번호 | 635-3818

TIP 이런 마을에 본 사업을 추천합니다

- 도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충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다원 등 5개 분야 60여개 공연단체를 선정하여 15개 시·군의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서 도민들을 위해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마을 주민들에게 문화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사업의 계기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재미있고 즐거운 마을 만들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기간	1년
사업규모	5개 분야 64개 단체 (도비 50%, 시·군비50%)
역량강화사업	해당없음
사업주관	도(문화정책과), 시·군(문화예술과 등)
사업내용	5개 분야 64개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지원
선정방법	농식품부 공모방식( ), 충남도 공모사업(✓), 기타( )
신청 또는 선정기준	아마추어나 동호회가 아닌 문화예술단체
선정시기	매년 3~4월 경
홍보방법	시군 공문시달(✓), 도홈페이지 공고(✓), 공무원설명회( ), 주민설명회( ), 기타( )

충남도 계획·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년	2019년 계획	2020년 ~
사업개소	59개단체 완료	64개단체 추진중	60개 단체 예정
사 업 비	408백만원	416백만원	416백만원

04
1단계 일반마을

우리 마을 주치의제

충남도 | 건강증진식품과　　담당자 성명 | 김미경　　전화번호 | 635-4335

TIP 이런 마을에 본 사업을 추천합니다

- 의료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월 3회 이상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보건 서비스제공,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독자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가 취약한 마을이 보건소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 리더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활동의 계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기간	1년
사업규모	273백만원(도비30%,시·군비70%)
사업주관	도(보건정책과), 시·군(보건소 등)
사업내용	내·외과 중심의 진료에서 한방진료까지 확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 ※ 마을별 월 3회 이상 방문(월 2회 의사 참여 의무)
선정방법	기타 (✓)
신청 또는 선정기준	의료취약지역 마을(시·군 선정)
선정시기	매년 1월 중(도 및 시군 계획에 따름)
홍보방법	시군 공문시달(✓), 공무원설명회(✓), 주민설명회( ), 기타( )

충남도 계획·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년	2019년 계획	2020년 ~
사업개소	169개 마을	169개 마을	169개 마을
사 업 비	273백만원	273백만원	273백만원

6. 온라인 콘텐츠 안내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1	인천	-	-	2020 새로워진인천주민자치회 #주민의#주민에의한 #주민을위한#자치회	'20.4.21.	수시	https://youtu.be/1ARzVl7zf9s	협치인권 담당관실
2	인천	중구	영종1동	[영종TV] 영종1동 11월 주민자치회 정례회의	'20.11.19.	수시	https://www.youtube.com/watch?v=feZCIUGWZpI	영종1동
3	인천	중구	영종1동	[영종TV] 2020년도 영종1동 주민자치회 추가위원 위촉식	'20.11.3.	수시	https://www.youtube.com/watch?v=cduXbgQTtOg	영종1동
4	인천	중구	영종1동	[영종TV] 2020년 영종1동 생명사랑마을 이름짓기 공모전 시상식	'20.10.28.	수시	https://www.youtube.com/watch?v=Eov9rADttTM	영종1동
5	인천	중구	영종1동	[영종TV] 영종1동 주민자치회 고구마수확	'20.10.24.	수시	https://www.youtube.com/watch?v=gerf0vtrr3U	영종1동
6	인천	중구	영종1동	[영종TV] 제2회 2020년 영종1동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결과	'20.9.25.	수시	https://www.youtube.com/watch?v=uESOEWMIFRU	영종1동
7	인천	중구	영종1동	[영종TV] 영종1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우쿨렐레 공연	'19.12.19.	수시	https://www.youtube.com/watch?v=Ode_2a9o0ls	영종1동
8	인천	동구	만석동	주민총회	'20.12.16.	연 1회	https://youtube/V6m3GFJINjY	만석동
9	인천	동구	화수1. 화평동	주민총회	'20.12.18.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7MkRSPvtQ2hLnxAgOO92QQ	화수1. 평동
10	인천	동구	화수2동	주민총회	'20.12.11.	연 1회	https://youtube//h2jyEBK8fu	화수2동
11	인천	동구	송현 1.2동	주민총회	'20.12.14.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_9Samz0gLtj4hXVcbkFKLQ	송현 1.2동
12	인천	동구	송현3동	주민총회	'20.12.21.	연 1회	http://www.youtube.com/4BDzL_bwJ2Cy	송현3동
13	인천	동구	송림1동	주민총회	'20.12.17.	연 1회	http://youtube/v4CGU8s80TM	송림1동
14	인천	동구	송림2동	주민총회	'20.12.12.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Rv3mvNffxbn83lUts4mn1A	송림2동
15	인천	동구	송림 3.5동	주민총회	'20.12.17.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B0UxA7alJKXB_P1TS525A	송림 3.5동
16	인천	동구	송림4동	주민총회	'20.12.22.	연 1회	https://m.youtube.com/channel/UCn9zHvjzYGcLiqYxTPS1c3g#menu	송림4동
17	인천	동구	송림6동	주민총회	'20.12.18.	연 1회	https://myaccount.google.com/u/0/b/114118389290364852219/?hl=ko	송림6동
18	인천	동구	금창동	주민총회	'20.12.15.	연 1회	http://www.youtube.com/channel/UCGcT4hlUunZYfJUnj0DNSnw	금창동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19	인천	미추홀구	-	온라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20.7.6. ~계속	연중계속	https://cafe.naver.com/michucenter	시민공동체과
20	인천	미추홀구	-	온라인 주민설명회	'20.9.16. ~11.30.	3개월 중 계속	https://youtu.be/qE6gHYozlDg	시민공동체과
21	인천	연수구	-	주민자치협의회 토론회	'20.11.24.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KLgwFXRd8Pk	마을자치과
22	인천	연수구	-	2020년 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성과공유회	'20.12.1.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tnTAmyARy-w	마을자치과
23	인천	연수구	-	동 주민총회 홍보영상	'20.9.16. ~10.4.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SM3l-GYnkbQ	마을자치과
24	인천	연수구	옥련1동	온라인 주민총회	'20.9.25.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Cs69biyzwg-vWslcrabJ1A	옥련1동
25	인천	연수구	옥련2동	온라인 주민총회	'20.9.26.	연 1회	https://band.us/band/80891656	옥련2동
26	인천	연수구	선학동	2020년 선학동 주민총회	'20.9.26.	연 1회	https://band.us/band/81080980	선학동
27	인천	연수구	선학동	2020년 선학동 주민총회 안내 및 마을홍보	'20.9.26.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dKPvhOCvQVM	선학동
28	인천	연수구	연수1동	주민총회	'20.9.26.	연 1회	http://band.us/band/81068440	연수1동
29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연수2동 온라인 주민총회	'20.9.26.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_iaQ3YuDvLY&feature=youtu.be	연수2동
30	인천	연수구	연수3동	온라인 주민총회	'20.9.26.	연 1회	https://band.us/band/81066068	연수3동
31	인천	연수구	동춘2동	2020년 제1회 동춘2동 주민자치회 온라인 주민총회	'20.9.26. 7:00~18:00	연 1회	https://band.us/band/80914303/post/78	동춘2동
32	인천	연수구	동춘3동	주민총회	'20.9.26.	연 1회	https://band.us/band/80938131	동춘3동
33	인천	연수구	송도2동	2020년 송도2동 주민총회 라이브 방송	'20.10.6.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34	인천	연수구	송도2동	#1 송도2동 주민총회 의제 (세계속의 시민, 글로벌 송도)	'20.10.6.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35	인천	연수구	송도2동	#02 송도2동 주민총회 의제 (송도 ZOOM-IN 소식지)	'20.10.6.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36	인천	연수구	송도2동	#03 2020 송도2동 주민총회 의제 (문화가 있는 커낼워크)	'20.10.6.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37	인천	연수구	송도2동	#04 2020 송도2동 주민총회 의제 (공공식수대로 생수병 OUT)	'20.10.6.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38	인천	연수구	송도2동	#05 2020 송도2동 주민총회 의제 (걷고 싶은 꽃길 만들기)	'20.10.6.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39	인천	연수구	송도2동	#06 2020 송도2동 주민총회 의제 (100개의 송도이야기& 송도의 夜한 셀럽)	'20.10.6.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40	인천	연수구	송도2동	송도2동 주민자치회 홍보 영상	'20.10.6.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41	인천	연수구	송도2동	송도 랜선합창단 2020	'20.10.31.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42	인천	연수구	송도2동	송도2동 온라인 어울림한마당 랜선 플리마켓 (함께가치, 살까요 팔까요?)	'20.10.31.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43	인천	연수구	송도2동	송도2동 온라인 어울림 한마당 (제1회 청소년 방콕 퀴즈왕)	'20.10.31.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44	인천	연수구	송도2동	송도2동 온라인 어울림한마당 축제 실시간 스트리밍	'20.10.31.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xFQs-BIPMqROI441nR9g/videos	송도2동
45	인천	연수구	송도4동	2019.9.28.송도4동 주민총회	'19.10.21.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0aUMFfLmbNk	송도4동
46	인천	연수구	송도4동	송도4동 주민총회	'20.10.3.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6ZS9FkBd66c	송도4동
47	인천	연수구	송도4동	song4workshop 3	'20.11.9.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w7uS6jA16gw	송도4동
48	인천	연수구	송도4동	송도4동 마을방송 마을수다 - 행복수다만보걷기로건강찾기 walking1	'20.12.6.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ZKYCSNZ9CPQ	송도4동
49	인천	남동구	간석2동	2020년 간석2동 주민총회 동영상	'20.9.25.	연 1회	https://www.namdong.go.kr/dong/bbs/bbsMsgDetail.do?msg_seq=16&cate1=ganseok2&bcd=dong_video&dong=ganseok2	간석2동
50	인천	계양구	-	좌충우돌 주민자치회 이야기	'20.7.3. ~8.31.	격주 1회	https://band.us/band/80299897	자치 행정과
51	인천	계양구	-	계양구 주민자치학교	'20.10.26.	2강	https://band.us/band/81703771	자치 행정과
52	인천	계양구	-	2020 계양구 주민자치& 평생학습 송년특강	'20.12.21. ~24.	총 4회	https://band.us/band/81076289	자치 행정과
53	인천	계양구	-	지금은 계양시대 - 계양구 온라인 주민총회	'20.9.9.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t_W3kb7eS_M	자치 행정과
54	인천	계양구	효성1동	주민총회	'20.8.29.	연 1회	https://band.us/band/75300655	자치행정과
55	인천	계양구	효성2동	주민총회	'20.9.5.	연 1회	https://band.us/band/81089080	자치 행정과
56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주민총회	'20.9.5.	연 1회	https://band.us/band/81002606	자치 행정과
57	인천	계양구	계산3동	주민자치 TV	'20.9.5.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ujxtXBTCRds	자치 행정과
58	인천	계양구	계산4동	주민총회	'20.9.19.	연 1회	https://band.us/band/81178362	자치 행정과
59	인천	계양구	작전1동	주민총회	'20.9.5.	연 1회	https://band.us/band/81178362	자치 행정과
60	인천	계양구	작전2동	주민총회	'20.9.3.	연 1회	https://band.us/band/79417713	자치 행정과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61	인천	계양구	작전 서운동	주민총회	'20.9.5.	연 1회	https://band.us/band/80035946	자치 행정과
62	인천	계양구	계양2동	주민자치 TV	'20.9.19.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SDoA4LXCHglCACc1piMrww	자치 행정과
63	인천	계양구	계양3동	주민자치 TV	'20.9.5.	연 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7o3nwHwlp-kpdCF6kvdOGg	자치 행정과
64	인천	서구	검암 경서동	검암경서동 주민총회	'20.12.10.	-	https://youtu.be/1YTx2Auby8I	검암 경서동
65	인천	서구	연희동	2020년도 온라인 주민총회	'20.12.12.	연 1회	https://band.us/band/82021292	연희동
66	인천	서구	연희동	연희동 주민자치회 블로그	수시	수시	https://blog.naver.com/cho5613030	연희동
67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축하영상	'20.10.30.	-	https://blog.naver.com/gajeong1dong/222145652850	가정1동
68	인천	서구	가정1동	온라인 주민총회	'20.12.12.	연 1회	http://band.us/band/82074588/post/72	가정1동
69	인천	서구	신현 원창동	온라인 주민총회	'20.12.17.	-	https://youtu.be/b_e9WJAxebw	신현 원창동
70	인천	서구	가좌4동	마을재생경제활성화 분과 의제 설명	'20.12.7.	-	https://youtu.be/cdn-HVOqjiI	가좌4동
71	인천	서구	가좌4동	기획교육문화체육분과 의제설명	'20.12.7.	-	https://youtu.be/IhpZCNwQV-0	가좌4동
72	인천	서구	가좌4동	행복나눔복지분과 의제설명	'20.12.7.	-	https://youtu.be/5YF2NAlUmJA	가좌4동
73	인천	서구	가좌4동	주민총회 홍보영상	'20.12.7.	-	https://youtu.be/XzcNakeTVNs	가좌4동
74	인천	서구	가좌4동	주민총회까지 준비과정 인트로 영상	'20.12.15.	-	https://youtu.be/y6P-guhjoL4	가좌4동
75	인천	서구	가좌4동	2020년 온택트 주민총회	'20.12.17.	-	https://youtu.be/moNkJBT-h2Y	가좌4동
76	인천	서구	불로 대곡동	주민총회	'20.9.10.	연 1회	https://youtu.be/RxbArnBnK40	불로 대곡동
77	대전	유성구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동 성과 발표회(제1차 성과공유회)	'20.11.7.	-	https://www.youtube.com/watch?v=svRR_fPfCMY	마을 자치과
78	대전	유성구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동 성과 발표회(제3차 성과공유회)	'20.11.18.	-	https://www.youtube.com/watch?v=3uY98VuQUu8	마을 자치과
79	대전	유성구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1영상	'20.12.10.	-	https://www.youtube.com/watch?v=fs29YbMPpWE	마을 자치과
80	대전	대덕구	오정동	2020년 오정동 온라인 주민총회	'20.10.29.	연 1회	youtu.be/lu66z9GXBYk	오정동
81	대전	대덕구	대화동	2020년 대화동 온라인 주민총회	'20.10.30.	연 1회	https://youtu.be/3S50AorkVr0	대화동
82	대전	대덕구	회덕동	2020년 회덕동 주민총회	'20.10.15.	연 1회	https://youtu.be/JhFBcqgAGR8	회덕동
83	대전	대덕구	회덕동	회덕톡톡톡	'20.12.17.	-	https://youtu.be/6Zph0Jt0Pc4	회덕동
84	대전	대덕구	비래동	2020년 비래동 온라인 주민총회	'20.10.27.	연 1회	https://youtu.be/knm8PaNR0-U	비래동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85	대전	대덕구	송촌동	2020년 송촌동 주민총회 소개영상	'20.7.22.	-	https://www.youtube.com/watch?v=K99yvZOTQJw	송촌동
86	대전	대덕구	송촌동	2020년 송촌동 주민총회 티저 영상 '슬기로운 송촌생활'	'20.8.10.	-	https://www.youtube.com/watch?v=O0Kg7wcoJmw	송촌동
87	대전	대덕구	송촌동	2020년 송촌동 온라인 주민총회	'20.7.30.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GRRxaxw8MIs	송촌동
88	대전	대덕구	송촌동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소개영상 (송촌동 주민자치회)	'20.11.28.	-	https://www.youtube.com/watch?v=kpfhJvUSP3M	송촌동
89	대전	대덕구	중리동	2020년 중리동 온라인 주민총회	'20.7.31.	연 1회	https://youtu.be/BVXyr0NHiTg	중리동
90	대전	대덕구	법1동	제1회 법1동 온라인 주민총회	'20.10.29.	연 1회	youtube.com/watch?v=7UJwyJcLDjo	법1동
91	대전	대덕구	법2동	2020년 법2동 온라인 주민총회	'20.10.28.	연 1회	https://youtu.be/Su993LhtQPQ	법2동
92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020년 신탄진동 온라인 주민총회	'20.10.29.	연 1회	https://youtu.be/IMzBbR8bjYk	신탄진동
93	대전	대덕구	석봉동	2020년 석봉동 온라인 주민총회	'20.10.30.	연 1회	https://youtu.be/n4cgUtC2cgM	석봉동
94	대전	대덕구	덕암동	2020년 덕암동 온라인 주민총회	'20.7.30.	연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Z4UB8nBEezk	덕암동
95	대전	대덕구	덕암동	2020년 온라인 덤바we 주민화합축제	'20.10.31.	-	https://www.youtube.com/watch?v=gGmsj2rLdZU	덕암동
96	대전	대덕구	목상동	2020년 목상동 온라인 주민총회	'20.10.29.	연 1회	https://youtu.be/R-k-Ql-9q5s	목상동
97	부산	연제구	거제3동	거제3동 주민자치회 "2020년 주민총회" 현장스케치	'2011.27.	연 1회	https://youtu.be/Ez-67n0XqgA	자치 지원과
98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 TV2기] 신입 기자 소개 영상	'20.11.12.	-	https://www.youtube.com/watch?v=K1kzOHzCFdI	다대1동
99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TV 뉴스 #7월 : 패들보드 체험, 다대포 해녀, 서예가 한경자	'20.7.15.	월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0h4OcVqMoqI	다대1동
100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 TV 뉴스 #6월 : 다대는 TV 근황토크, 커피열매북카페몰운대점, 긴급재난지원금	'20.6.21.	월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dCuE-vddFkA&t=145s	다대1동
101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TV 기자단 2기 모집	'20.6.2.	-	https://www.youtube.com/watch?v=W2BsRn1_NDY	다대1동
102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 TV 뉴스 #2월 : 윤공단 경로당, 길왕성테일러, 육아용품대여점, 포토에세이	'20.2.25.	월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kflXjQOBZqY&t=1s	다대1동
103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TV뉴스 #1월 :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두리하나복지회, 을숙도탐험	'20.2.11.	월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nLxF7sxgjhM&t=526s	다대1동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104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TV 새해인사	'20.1.25.	-	https://www.youtube.com/watch?v=ck9csSUQxgs&t=2s	다대1동
105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 TV 팀의 2019년 활동 기록	'20.1.18.	-	https://www.youtube.com/watch?v=efhUU9i8YnU	다대1동
106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 TV 뉴스 #12월 : 도시락봉사단, 수민동락 방문, 마을미디어 축제, 포토에세이	'19.12.26.	월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f_KKbEqffhQ	다대1동
107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 TV 뉴스 #11월 : 사하예술제, 금빛합창단, 아미산둘레길, 몰운대 희망전입투어, 사진으로 보는 다대포	'19.11.20.	월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YBDpg36QXRA	다대1동
108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대는TV가 떴다!	'19.11.18.	-	https://www.youtube.com/watch?v=Rtlv9PktJOk&t=18s	다대1동
109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 TV 뉴스 #10월 : 2019 바다미술제, 정운장군 향사, 사진으로 보는 다대포	'19.10.15.	월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5aeeKMU7UUg	다대1동
110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는 TV 뉴스 #9월 : 힐링 다패포, 다대포 회센터, 다대포 낙조 분수, 다대포 소식, 사진으로 보는 다대포	'19.9.16.	월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w6eUBbiC0sA	다대1동
111	울산	중구	태화동	태화동 주민총회· 청소년 창의한마당	'20.11.7.~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mfWG0aa5PAY	주민 소통과
112	울산	북구	농소3동	제1회 농소3동 온라인 주민총회	'20.8.21.	-	https://www.youtube.com/watch?v=S3F9w8ZSpVo&feature=emb_title	주민소통 담당관
113	경기	본청	-	찾아가는 자치교실 주민자치, 자치경찰 온라인 교육	'20.11.1.~	지속	https://www.gseek.kr/learn/learn.read?SG_CODE=5f880e068a73d&SC_SC1_CODE=5db1d931615ce&SC_SC2_CODE=5db1dc4f27b02&SC_SC3_CODE=T407	자치 행정과
114	경기	수원시	-	수원시 주민자치 온(ON)	'20.10.29.~	지속	https://www.youtube.com/watch?v=wa1gStneGWI&list=PL79SbexPhhMWwlRbwOOWSBArM053SfDVJ&index=7	자치 행정과
115	경기	성남시	-	성남시 주민자치회의 이해	'20.10.7.~	지속	경기 지식 : http://me2.do/IDER3Hrd 성남시주민자치회밴드: https://band.us/band/81565029/post/6	자치 행정과
116	경기	부천시	본청	2020년 주민총회	'20.8.19.	-	https://www.youtube.com/watch?v=OFUaQSEMjAQ	자치 분권과
117	경기	부천시	심곡동	2020년 심곡동 주민총회	'20.9.3.	-	https://www.youtube.com/watch?v=R_XFPl94Pzk	마을 자치과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118	경기	부천시	성곡동	2020년 성곡동 주민총회	'20.9.4.	-	https://www.youtube.com/watch?v=WH5_i-iBQFY	마을자치과
119	경기	부천시	오정동	제1회 오정동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홍보영상	'20.8.20.	-	https://www.youtube.com/watch?v=i1G5KFwUdgo	마을자치과
120	경기	부천시	오정동	제1회 오정동 주민총회 투표결과 유튜브 생중계	'20.9.4.	-	https://www.youtube.com/watch?v=ZZTxh1G_PZI	마을자치과
121	경기	부천시	오정동	제1회 오정동 주민총회 투표결과	'20.9.7.	-	https://www.youtube.com/watch?v=_lkA-pAo4CE	마을자치과
122	경기	화성시	동탄7동	[화성시 동탄7동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언택트 주민소통'] (코로나19 응원편'친구야힘내')	'20.10.18.	-	https://www.youtube.com/watch?v=3OWarg-WR6Y	동탄7동
123	경기	화성시	동탄7동	[화성시 동탄7동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언택트 주민소통'] (강의) 코로나19와 독감 무엇이 다를까요?	'20.10.28.	-	https://www.youtube.com/watch?v=4nn7fepXBY8	동탄7동
124	경기	화성시	동탄7동	[화성시 동탄7동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언택트 주민소통'] (강의) 코로나19와 독감 무엇이 다를까요? [Q&A]	'20.10.29.	-	https://www.youtube.com/watch?v=aCh1op5PfNI	동탄7동
125	경기	화성시	동탄7동	[화성시 동탄7동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언택트 주민소통'] (코로나19 실내체조편) 날 따라 해봐요	'20.11.9.	-	https://www.youtube.com/watch?v=jURoakniR4w	동탄7동
126	경기	화성시	동탄7동	[화성시 동탄7동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언택트 주민소통'] (주민과의협치메세지)	'20.11.9.	-	https://www.youtube.com/watch?v=tLhTqP3jJ8Y	동탄7동
127	경기	화성시	동탄7동	[화성시 동탄7동 주민자치회. 특강] 주민자치, 함께 만드는우리마을 특강/ 화성시장 서철모	'20.11.12.	-	https://www.youtube.com/watch?v=y9bl2hvc93c	동탄7동
128	경기	화성시	동탄7동	[화성시 동탄7동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언택트 주민소통'] (우리마을 문제찾기) 동탄7동 지역단체장 인터뷰편	'20.11.15.	-	https://www.youtube.com/watch?v=tVo8bojPjmQ	동탄7동
129	경기	화성시	동탄7동	[화성시 동탄7동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언택트 주민소통'] (우리마을문제찾기)관공서편	'20.11.22.	-	https://www.youtube.com/watch?v=yiC8O0yEBfw&t=1s	동탄7동
130	경기	화성시	동탄7동	[화성시 동탄7동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언택트 주민소통'] 동탄7동 사업활동 모음	'20.11.27.	-	https://www.youtube.com/watch?v=_T2dDud6h4Q	동탄7동
131	경기	화성시	동탄8동	동탄8동 주민자치회 2020 추석맞이 대청소	'20.10.7.	-	https://www.youtube.com/watch?v=RK7cDMq7VeE	동탄8동
132	경기	화성시	동탄8동	동탄8동 주민자치회 공유부엌 '동행' 현판식	'20.10.22.	-	https://www.youtube.com/watch?v=bGVzMs9jVGY	동탄8동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133	경기	화성시	동탄8동	동탄8동 활성화사업 주민자치회 작은음악회	'20.11.13.	-	https://www.youtube.com/watch?v=95f_TMotf_o	동탄8동
134	경기	화성시	동탄8동	동탄8동 주민자치회 환경캠페인 영상	'20.11.20.	-	https://www.youtube.com/watch?v=3H3njONYeMs	동탄8동
135	경기	화성시	동탄8동	화성형 주민자치회 소개	'20.11.28.	-	https://www.youtube.com/watch?v=OOtlAyNsQME	동탄8동
136	경기	화성시	동탄8동	동탄8동 주민총회 홍보	'20.12.3.	-	https://www.youtube.com/watch?v=W621zJRM-0M	동탄8동
137	경기	화성시	동탄8동	주민자치회 활동 영상	'20.12.3.	-	https://www.youtube.com/watch?v=lpdNT5W8QVg	동탄8동
138	경기	안산시	일동	주민총회 제안사업선정 주민투표	'20.9.7.	-	https://youtube.com/watch?v=lse-_tonTX0	상록구 일동
139	경기	안산시	일동	주민총회 사업선정 결과발표	'20.9.22.	-	https://www.youtube.com/watch?v=ONClQNwtCjU	상록구 일동
140	경기	안산시	원곡동	2020년 제1회 원곡동 주민총회	'20.10.29.	-	http://blog.daum.net/wongok/34	단원구 원곡동
141	경기	안산시	이동	이동 주민총회	'20.12.15.	-	https://www.youtube.com/watch?v=abh7sdDDn10	상록구 이동
142	경기	광명시	-	광명시 주민자치, 무엇이 달라지나요?	'20.6.18.	-	https://www.youtube.com/watch?v=7bSLIh4Y9GU	자치 분권과
143	충남	본청	-	무늬만 지방자치 이제는 바꾸자	'14.4.10.~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QlRCBf3UPM	자치 행정과
144	충남	본청	-	모두가 꿈꾸는 마을	'19.6.3.~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PXB-gSOlB2w	자치 행정과
145	충남	본청	-	충남 사진으로 주민자치를 담다	'19.12.24.~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aa3jTHMi27k	자치 행정과
146	충남	본청	-	주민이 주인 되는 충남도 개방형 읍면동장제	'20.8.24.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4ZaAfT_tPG8	자치 행정과
147	충남	본청	-	2020년 충남 자치분권 사진&영상 공모전 모음	'20.11.22.~	연중 상시	https://cafe.naver.com/chungnamca	자치 행정과
148	충남	본청	-	제5회 충남 동네자치 한마당	'20.12.3.~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9o0CiO9Zv4k	자치 행정과
149	충남	본청	-	2020년 충남 자치분권 홍보영상	'20.12.21.	연중 상시	https://cafe.naver.com/chungnamca	자치 행정과
150	충남	천안시	백석동	제2회 2020 백석동 주민총회 활동사진	'20.12.3.~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4ZaAfT_tPG8	자치 민원과
151	충남	천안시	백석동	2020 백석동 주민총회 다시보기	'20.12.14.~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0DAMBiVE3_k	자치 민원과
152	충남	서산시	대산읍	2019 대산읍 주민총회	'19.6.29.	연1회	youtube.com/watch?v=xQKKfQKUtx8	시민 공동체과
153	충남	서산시	대산읍	제4회 대산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송년예술제	'19.12.12.	연1회	youtube.com/watch?v=b4NBANLKGdo	시민 공동체과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154	충남	서산시	대산읍	희망의 2020! 신년음악회	'20.1.17.	연1회	youtube.com/watch?v=wgio0d-jI-0	시민공동체과
155	충남	당진시	-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이해 (e-주민자치학교)	'20.4.8.~	연중 상시	http://dangjin.evermbc.com/p12/2020/Do.jsp?menuSeq=361&categorySeq=1160	공동체새마을과
156	충남	당진시	-	당진시 주민자치 우수사례 (e-주민자치학교)	'20.4.8.~	연중 상시	http://dangjin.evermbc.com/p12/2020/Do.jsp?menuSeq=361&categorySeq=1160	공동체새마을과
157	충남	당진시	-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퍼실리테이션 (e-주민자치학교)	'20.4.8.~	연중 상시	http://dangjin.evermbc.com/p12/2020/Do.jsp?menuSeq=361&categorySeq=1160	공동체새마을과
158	충남	당진시	-	YES!를 이끄는 설득.협상기법 (e-주민자치학교)	'20.4.8.~	연중 상시	http://dangjin.evermbc.com/p12/2020/Do.jsp?menuSeq=361&categorySeq=1160	공동체새마을과
159	충남	당진시	-	행사기획이란 무엇인가 (e-주민자치학교)	'20.4.8.~	연중 상시	http://dangjin.evermbc.com/p12/2020/Do.jsp?menuSeq=361&categorySeq=1160	공동체새마을과
160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19 송악읍 주민총회	'20.1.7.~	연중 상시	https://youtu.be/FjCnJzWPe54	송악읍
161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19 한진포구 음악회	'20.1.7.~	연중 상시	https://youtu.be/U6FBriLxG6c	송악읍
162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19 송악읍주민자치한마당	'20.1.7.~	연중 상시	https://youtu.be/GXwQJA7j9fk	송악읍
163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19 송악읍주민자치	'20.1.7.~	연중 상시	https://youtu.be/WaxhlhqauFM	송악읍
164	충남	당진시	송악읍	당진시 주민자치어플 우리동넷	'20.2.8.~	연중 상시	https://youtu.be/rs60ZZQGEr0	송악읍
165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20년 당진시 송악읍주민자치회	'20.2.16.~	연중 상시	https://youtu.be/iUw4NuSip0k	송악읍
166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2019.12.14 프로그램 풍물 공연	'20.2.26.~	연중 상시	https://youtu.be/cZdJKKIzV6Q	송악읍
167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2019.12.14 프로그램 장구난타 공연	'20.2.27.~	연중 상시	https://youtu.be/XD4ZHdnb5ZM	송악읍
168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2019.12.14 프로그램 라인댄스 공연	'20.2.27.~	연중 상시	https://youtu.be/QCBfr88sMj8	송악읍
169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2019.12.14 프로그램 오카리나 공연	'20.2.27.~	연중 상시	https://youtu.be/ssZn5yLAhRc	송악읍
170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2019.12.14 프로그램 통기타 공연	'20.2.27.~	연중 상시	https://youtu.be/iQ8GjjsZVvo	송악읍
171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2019.12.14 프로그램 하모니카 공연	'20.3.2.~	연중 상시	https://youtu.be/mrtFlHuJMkk	송악읍
172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2019.12.14 프로그램 장구난타 야간반 공연	'20.3.2.~	연중 상시	https://youtu.be/TqKoJMj_oHw	송악읍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173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2019.12.14 프로그램 스포츠댄스 공연	'20.3.2.~	연중 상시	https://youtu.be/5b631MTju2s	송악읍
174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2019.12.14 프로그램 북난타 공연	'20.3.2.~	연중 상시	https://youtu.be/Zu5EAEiT3lA	송악읍
175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2019.12.14 프로그램 노래교실 공연	'20.3.2.~	연중 상시	https://youtu.be/wlpav7isic8	송악읍
176	충남	당진시	송악읍	재봉틀 없이 마스크 만들기	'20.3.9.~	연중 상시	https://youtu.be/Uiv0n-rW5HI	송악읍
177	충남	당진시	송악읍	덴탈 KF94 마스크 만들기	'20.3.14.~	연중 상시	https://youtu.be/mpfFZeR3n30	송악읍
178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주민자치회 행복홑씨입양사업	'20.6.12.~	연중 상시	https://youtu.be/MkBTbdryUyk	송악읍
179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20년 날마다배움터 "당찬마을학교"	'20.6.12.~	연중 상시	https://youtu.be/BK5eqM0UUUk	송악읍
180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읍 메뉴판 지원사업	'20.6.12.~	연중 상시	https://youtu.be/hR2fJEKaGfs	송악읍
181	충남	당진시	송악읍	홈바리스타 커피딸기라떼	'20.6.21.~	연중 상시	https://youtu.be/WJv3g-VOY5U	송악읍
182	충남	당진시	송악읍	당당버블티 (당찬당진버블티)	'20.6.26.~	연중 상시	https://youtu.be/sG71NzXCy-Y	송악읍
183	충남	당진시	송악읍	마을계획동아리 청소년분과 활동(7월14일)	'20.7.20.~	연중 상시	https://youtu.be/6de91kNn0ME	송악읍
184	충남	당진시	송악읍	마을계획동아리 4개분과 활동	'20.7.23.~	연중 상시	https://youtu.be/owO8wHtViLI	송악읍
185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20년 마을계획동아리 주제선정	'20.8.11.~	연중 상시	https://youtu.be/MPQP2lFpyu4	송악읍
186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안건 1. 이주단지 힐링스터디 카페	'20.8.22.~	연중 상시	https://youtu.be/L6Klj1rLm0A	송악읍
187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안건 2. 송악읍 자동차극장	'20.8.22.~	연중 상시	https://youtu.be/J6baJen9ZVo	송악읍
188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안건 3. 학교 앞 버스 도착 알리미	'20.8.22.~	연중 상시	https://youtu.be/7x-GxZJqvLQ	송악읍
189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안건 4. 주민이 만드는 문화의 거리 틀못광장	'20.8.22.~	연중 상시	https://youtu.be/srYoQ2WcjGI	송악읍
190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안건 5. 송악읍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20.8.22.~	연중 상시	https://youtu.be/fikHpwBCdl4	송악읍
191	충남	당진시	송악읍	당진해나루고구마 (고구마또띠아)	'20.10.10.~	연중 상시	https://youtu.be/5G71R8Kh6m4	송악읍
192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20년 오늘은 도서관가는날 나만의카페	'20.12.6.~	연중 상시	https://youtu.be/zQfclAg42y8	송악읍
193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20년 오늘은 도서관가는날 책갈피만들기	'20.12.6.~	연중 상시	https://youtu.be/oydtSAVX_Hc	송악읍
194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20년 오늘은 도서관가는날 크리스마스홈카페스타일링	'20.12.6.~	연중 상시	https://youtu.be/OKhcJOXGlEQ	송악읍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195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20년 송악읍 걷기대회 & 어울림한마당	'20.12.8.~	연중 상시	https://youtu.be/KdBVW9_CCmU	송악읍
196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20년 송악읍주민자치회 (도서관가는날)	'20.12.12.~	연중 상시	https://youtu.be/ZZJFvgH7nB0	송악읍
197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20년 송악읍주민자치회 스마트그린도시	'20.12.16.~	연중 상시	https://youtu.be/15VzY3tK5Nc	송악읍
198	충남	당진시	고대면	kbs-다큐온 주민총회	'20.10.23.~	방송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0-0388&program_id=PS-2020158982-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code=05&section_sub_code=08	고대면
199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소들 북 콘서트	'20.12.12.~	연중상시	https://youtu.be/R0ndUyljtys	우강면
200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우수사례발표 -주민자치분야 (19회전국주민자치박람회)	'20.12.11.~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1KT5RgmtYcE	신평면
201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면주민자치	'20.11.29.~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hBjt2rC5ing	신평면
202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여성청소년자치센터	'20.11.21.~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hNLdzV1olok	신평면
203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에 가다(1)	'19.11.28.~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LcaYRdYnV5g	신평면
204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에 가다(2)	'19.11.28.~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cxX_PTAEFm8	신평면
205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시 신평면 착착진행되는 주민자치 사업	'17.10.18.~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N-27Ne7hDVQ	신평면
206	충남	당진시	신평면	동네자치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린 당진시와 신평면 주민자치회	'16.10.31.~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0pQEzY6Jpb0	신평면
207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송산밤마실북콘서트	'20.11.20.~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luVE_VhhYqo	송산면
208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송산에 놀러와	'20.11.29.~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Bv-Tt03KPds	송산면
209	충남	당진시	송산면	제5회 충남 동네자치 한마당	'20.12.3.~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9o0CiO9Zv4k	송산면
210	충남	당진시	당진1동	2020년 주민총회	'20.1218.~	연중 상시	https://www.youtube.com/watch?v=brdUQVaoakM	당진1동
211	전남	순천시	중앙동	주민총회	'20.7.24.	연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HpD8Ea0ZHKK3T_TsiV6Xdw	순천시 중앙동
212	전남	순천시	외서면	주민총회	'20.7.14.	연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b1pitzTpgPJYODBUz7bdag	순천시 외서면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상 등 콘텐츠 제목	개최(방송)		URL 주소	담당 부서
					일자	주기		
213	전남	순천시	별량면	주민총회	'20.8.19.	연1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d7NolKBCQdfG50mSNAfsQ	순천시 별량면
214	경북	구미시	-	구미시 사이버강좌센터 주민자치 시민교육	'20.7.1.~	상시운영	http://gumiedu.evermbc.com/	총무과
215	경북	예천군	-	명품교육도시 예천만들기-2편	'20.9.2.	1회	youtube.com/watch?v=pblc4BlHhXU	행정 지원실
216	경남	본청	-	제2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20.12.11. ~12.18.	-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TjvZ4WKtLdHhF4r6i1SA	행정과
217	경남	본청	-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작(6건)	'20.12.11. ~12.18.	-	https://youtu.be/zCvs2fYIAvc	행정과
218	경남	본청	-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	'20.12.17.	-	https://youtu.be/xulcgruXKHg	행정과
219	경남	진주시	-	주민들의 가호와 더불어, 안전마을 가호동	'20.12.7.	-	https://www.youtube.com/watch?v=4OO4OFV9pfo&feature=youtu.be	행정과
220	경남	진주시	-	전국 최초 주민자치 온라인 강좌 개설	'20.12.7.	-	https://www.youtube.com/watch?v=rKKDld_4pq8&feature=youtu.be	행정과
221	경남	거창군	북상면	제1회 북상면 주민총회 및 제11회 어울림 한마당	'19.12.23.	연 1회	https://www.geochang.go.kr/news/board/View.do?gcode=1162&idx=14036771&pageCd=NW0201000000&cpage=1&stype=title&sstring=%EC%A3%BC%EB%AF%BC%EC%B4%9D%ED%9A%8C	기획예산 담당관 공보담당 행정과 주민자치 담당

7.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표준 정관

※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읍/면/동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자치조합')이라 한다.

〈 유의사항 〉

· 자치조합은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와의 연계성, 사업 분야와 내용의 지역성 및 공공성,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그리고 명칭에는 해당 읍면동 지역명이 포함되는 것을 권장한다. (예) ○○동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제2조(목적) 자치조합은 자주적·자치적·공익적·자립적·협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추구한다.

※ 예시

1. 지역의 공동체 대상 복지 분야 커뮤니티케어 및 기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공동체 안전망 구축
2. 지역의 기초 공공공간 활용 및 생활인프라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
3.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지속적 공급을 통한 삶의 질 제고
4. 공동출자·공동생산·공동소비·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한 지역사회 선순환 체계 구축
5. 지역 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경제공동체 육성을 통한 건강한 지역경제생태계 구축
6. 위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권익 증진

제3조(OO읍/면/동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① 자치조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된 ○○읍/면/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와

연계된 법인으로, 자치조합은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지역사업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며 OO읍/면/동 지역의 혁신과 지역경제생태계 구축에 기여한다.

② 연계 법인의 설립 및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내규에 따른다.

제4조(조합의 책무) ① 자치조합은 지역주민 및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자치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자치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군/구 ○○읍/면/동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사업구역) ① 자치조합의 사업구역은 ○○읍/면/동 및 △△읍/면/동까지로 한다.

② 사업구역의 확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유의사항 〉

· 자치조합은 그 지역과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행정구역(예.○○구)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인접 행정구역 내 주민자치조직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사업 방향과 범위를 정하여 영위할 수 있다.
·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걸쳐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되는 모든 행정구역을 기술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7조(공고방법) ① 자치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자치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치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규약 또는 규정) 자치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1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제6조 사업구역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로서, 자치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주민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구역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않은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민)조합원 : 자치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
2. 소비자(주민)조합원: 자치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합원
3. 생산자(주민)조합원: 자치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조합원
4. 직원(주민)조합원: 자치조합 사무국에 고용된 조합원
5. 후원자(주민)조합원: 자치조합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문 등의 서비스, 자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합원

〈 유의사항 〉

· 자치조합의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자치조합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위 5가지 중 2가지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필요 시 자치조합은 △△의 의결을 얻어 제6조 사업구역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 이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치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자치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자치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자치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3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5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자치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유의사항 〉

· 그 밖에 필요에 따라 당연탈퇴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명) ① 자치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개월 이상 계속해서 자치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자치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자치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치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유의사항 〉

· 자치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자치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제명이 결의되는 경우 자치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자치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자치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자치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8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9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생산자조합원에게는 최소 ○○좌 이상의 출자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예) 단, 제12조 제○항에 따른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는 최소 ○○좌 이상의 좌수를 출자하여야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자금을 나누어 납입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제1회 출자금 납입일에 취득한다. 단, 제1회 납입금액이 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2회 출자금납입일(출자금완납일)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⑥ 자치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자치조합 또는 자치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자치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또는 조합원이 요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치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자치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자치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자치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자치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를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자치조합은 그 의결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의가 있으면 자치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의 공고를 채권자에 대하여 하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자치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자치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자치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 자치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며, 이 경우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자치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자치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자치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자치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자치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자치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지역기금, 주민자치회 운영기금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자치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1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유의사항 〉

· 대의원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자치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결과를 정기총회 종료 후 개최되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OO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OO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세칙)」 제OO조에 따른 정기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34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10호에 대한 의결사항은 정기총회 종료 후 개최되는 주민총회(「OO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조 및 「OO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세칙)」 제OO조에 따른 주민총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이사장은 임시총회의 결과를 임시총회 종료 후 개최되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34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10호에 대한 의결사항은 임시총회 종료 후 개최되는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자치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제27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립금의 사용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 자치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 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치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은 총회 성원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④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치조합이 정하는 규정과 양식에 따라 미리 자치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자치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자치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유의사항 〉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이사회 결과를 이사회 종료 후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43조 제4호, 제5호에 대한 의결사항은 이사회 종료 후 개최되는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자치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5. 사업구역의 확장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그 밖에 자치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유의사항 〉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자치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44조(이사회의 의결 및 의사록)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제6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임·직원 및 사무국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자치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1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③ 근무형태(상근 및 비상근), 직무 등은 규약에 따른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단, 이사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정수(整數)가 아닌 경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은 주민자치회의 현직 위원을 겸하고 있는 후보군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51조 제4항을 따르고, 3분의 1의 비율 유지 조항 또한 다음 자치조합의 임원 선임 때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이사는 주민자치회의 현직 위원 또는 이 자치조합에서 2년 이상 조합원으로 활동한 자이어야 한다. 단, 최초 설립의 경우, 조합원 활동 기간에 관한 제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선거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유의사항 〉

· 감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자치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므로 기본적인 회계지식이 있으면서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자치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자치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치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 포함)·팩스·스마트폰 SNS·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자치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 · 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 · 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현직 위원이 임원인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종료 시, 다음 자치조합의 임원 선임 때까지는 임기를 유지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의사항 〉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④ 자치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자치조합을 대표하고,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 ○○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자치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자치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자치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자치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자치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자치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자치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유의사항 〉

· 임원이 자치조합에 물품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등 자치조합과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 제OO조(임원과 자치조합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자치조합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6.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자치조합의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제57조(임원의 수당 등) 비상근 임원의 수당 또는 상근임원의 보수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정하거나, 규약에 의한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자치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자치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 유의사항 〉

·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2조(사업의 종류)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해당 인가부처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 그 뒤 법인세제과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해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므로,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및 기부금 모집 계획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조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제60조(사무국) ① 자치조합은 직원으로 구성된 집행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2. 자치조합 홍보 및 조합원 모집
3. 자치조합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4. 조합원 교육
5. 그 밖에 자치조합 사업에 필요한 활동

②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 및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유의사항 〉

·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으로서 '○○○ … … ○○○'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위 4항에 해당하는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에 사업유형에 따른 예시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되, 한 사업유형에 예시가 둘인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된다.

1. 지역사업형
   -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지역사업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3.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4. 위탁사업형
   - '위탁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제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5. 기타 공익증진형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주 사업으로 두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

적용 예)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예시)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자치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1. 주택 관리 지원, 집수리 지원, 사회적 주택 운영, 마을 상점 지원 등 지역사회의 재생 사업
2. 에너지 자립 지원,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특산품 생산 및 유통, 문화 및 관광 서비스 생산, 전통시장 및 상가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3.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감염병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위생 개선 사업 등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 사업

4.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자치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및 위·수탁사업
2.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자치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자치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62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60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62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유의사항 〉

· 소액대출 총액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한다.
· 소액대출 한도는 조합원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16.12월 기준 3.29%)를 고려하여 정한다.
·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25%)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62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유의사항 〉

· 조합은 상호부조사업의 여부 및 상호부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혼례, 사망, 질병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상호부조를 제공한다.
· 상호부조의 범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사업의 이용) ① 자치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 유의사항 〉

·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지역 내 다른 조직과의 협력 등) ① 자치조합은 제6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다른 조직들과 연대 및 협력해야한다

1. 주민자치회
2.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 마을공동체 조직
4. 지역내 사회단체
5. 지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② 자치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자치조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물품공급, 용역, 건설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에 생산자조합원인 법인과 공동하여 입찰 및 참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해당 경우 생산자조합원의 공동참여는 자치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즉, 내부관계)가 아닌 자치조합과 별도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관계(즉, 외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제2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을 우선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입찰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7장 회계

제67조(회계연도) 자치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8조(회계) ① 자치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해당 자치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자치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70조(결산등) ① 자치조합은 정기총회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영지원 전문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운영

지원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② 자치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손실금의 보전) ① 자치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자치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2조(합병과 분할) ① 자치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자치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자치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자치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3조(해산) ① 자치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 유의사항 〉

·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자치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청산인) ① 자치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5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자치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부 칙

(정관에 따라 별도 준비되어야할 규약)

1.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2. 취약계층 감면에 관한 규약
3. 총회 운영에 관한 규약
4. 이사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약
5. 선거 관리에 관한 규약
6.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약
7. 지역 내 다른 조직과의 협력에 관한 규약(재화와 서비스의 우선 선정, 공동입찰 및 참여 등)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8. 주민자치 주요 Q&A(2020년 주민자치 컨설턴트 답변)

1. 조례 및 법령 정비 관련 사항

•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 지방분권법 제27조부터 제29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08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 · 면 ·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례 제정 및 개정시 제안사항

- 주민자치위원 자격 개방성 확대(13세 또는 15세 이상 확대), 추첨을 통한 주민자치 위원 선정, 자치계획 수립과 분과활동, 임원 및 위원의 임기 구체화 필요,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위탁 운영 등

※ 조례안 참조 : (도시) 서울시 도봉구, 금천구 (농촌) 경북 의성군 등

• 운영세칙 제정 및 가이드라인
  - 주민자치회 운영 원칙 및 목적, 위원의 의무와 역할
  - 분과 개폐 및 운영,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안건상정 및 의결), 공개 운영 원칙
  - 임원 선출 관련 규정, 감사의 역할과 감사 실시 및 보고 관련 사항
  - 주민자치회 산하 법인 설립 및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설정 내용

2. 주민자치회 준비 및 자치단체장 관심

• 전담 공무원 배치 및 중간지원 조직 운영
  -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전문직화 최소 4년)
  - 중간지원 조직 운영 또는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전문 단체 위탁 운영 방안 마련

• 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 방안
  - 동 행정 일상 경비가 아닌 주민자치회에 교부하는 방식 선택
  -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활동(자치계획 수립활동), 주민총회 개최 비용
  - 주민자치회 민간이전 경상 보조금으로 편성

• 단체장의 관심과 협력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변화 및 발전 가능성이 비례함
  - 단체장의 지원 정책 설계와 지속적 관심 필요
  -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대의 민주주의 단점 보완과 주민참여를 위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설정
  - 단체장의 관심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갈등(타 기관 등)이 해소되는 속도가 빠름

3.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및 운영

• 주민자치학교 홍보 및 운영
  - 모집 공고에 주민자치위원 선발 방법, 단체와 개인 구분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을 공고
  - 이와 같은 각종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반영하도록 준비
  - 주민자치학교 모집 및 홍보 활동 강화 : 기존 관행적 홍보 탈피(타켓 설명회 강화)
  - 주민자치학교 내용 기획 : 타 자치단체 등 관련 자료 참조 및 내용 확인

-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 위원추첨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위원선정위원회 역할을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확인과 위원 자격 유무 확인, 위원 추첨 진행, 추첨자 명단 발표 등 추첨의 공정한 관리만으로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 주민자치학교 이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
- 주민자치회 운영조직 구성
  - 위원 위촉 후 바로 회장 및 임원진 선출 방식 지양(분과 구성 후 진행 권고)
  - 위촉 후 주민 분과원 모집 홍보 활동(20일~30일 정도 진행)
  - 분과 구성 워크숍을 통한 분과 구성(서울시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방안 참조)
    ※ 주민자치회 역할과 가능 수행 분과 필수, 읍면동 의제 중심의 분과 구성
  - 임원진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및 민주적 투표 방식의 선출 권고(추대 지양)
-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 체계 구축
  - 주민자치회 회의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침 수립 시행 권장
  - 분과회의, 임원회의, 전체회의 순으로 안건 상정 절차 규정
  - 민관협업회의 : 읍면동장과 주요 관계자 및 주민자치회 임원(간사, 총무 실무자)
  - 민관협업회의 회의결과 보고 전 취합 후 단체장 보고(취합 : 자치 담당팀)
- 분과활동
  - 분과활동이 활성화되어야 총회에 상정하는 의제가 다양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음
  - 분과활동은 지역자원조사 → 주민의견 수렴 및 당사자 조사 → 의제발굴 워크숍 → 의제 결정 및 사업제안서 작성 → 사업 제안서 부서 검토 및 정책공유회 →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조정 및 의결 → 주민총회 결정 순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4.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 사항

- 주민참여예산 연계 관련
  - 주민참여예산 사업 : 실행 주체가 아닌 사업제안자로 설정
  - 주민참여예산 제안된 사업은 주민총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결정과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음
-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예산
  - 경상보조 성격의 협의사무와 자치사무를 직접 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민자치회와 연계

단체나 주민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경상보조 성격의 예산으로 교부하는 것 권장

-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과 사업 실행 예산의 명확한 구분
- 교부된 예산은 주민자치회가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활동에 필요한 예산(주민자치회 분과활동,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위원역량강화 교육, 각종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비)과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실행하는 의제 실행 예산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구체화 과정 필요
- 예산 교부와 집행 기준 및 규정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 행안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예산은 있으나(공모사업, 우수자치단체 등), 주민자치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이고 자치단체 비용으로 해결
- 현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이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특정사업, 위탁사업으로 보조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방식에 대한 자체적인 지자체의 선택이 필요

• 간사 또는 사무국장 인력에 대한 지원

-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근거로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사무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뉴얼에 해당 사례를 일부 정리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출이 가능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민총회 준비 및 개최

- 주민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범위
  - 주민자치회, 행정, 주민, 분과원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나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만 구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는 총회 개최를 위한 민관협력기구이므로 행정의 팀장 이상이 참여하여 협업으로 준비할 것을 권장
- 주민총회 의전 : 가장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임
  - 의전과 관련된 것은 시군구 담당부서와 주민자치회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갈등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주민총회 숙의와 공론의 장 구성 방법
  - 충분한 논의 및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과 논의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나 진행요원을 테이블별로 배치
- 주민총회 홍보 물품 제작 배부 문제
  - 선거법상 상시기부행위 제한으로 선관위와 협의 후 추진
  - 향후 주민총회에 제안된 사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물품(홍보용) 제작 배부할 경우 조례에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도 방법임(사례 참조 : 서울시 금천구 조례)
  - 장소 선정 및 안전 확보 문제 : 불특정 다수 주민참여용 보험 가입, 건물 및 공간 배상보험 가입 유무 확인, 안전 요원 배치 등

주민자치 시범사업 FAQ

연번	진 행 시 기	질문
1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위원선정위원회의 역할과 회의 진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첨은 어떻게 진행 하나요?
3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운영내규를 워크숍을 통하여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임원 및 간사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5		감사의 역할과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6		분과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과의 활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7	자치계획 수립	정책공유회 진행 시 주민자치사업단과 행정부서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8		자치계획 의제 중 적합하지 않은 의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9	주민총회	주민총회 시 총회 정족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0		주민총회는 매년 진행해야 하나요?
11	자치회관	자치회관의 인수인계, 위탁운영의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위원선정위원회의 역할과 회의 진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선정위원회는 서울시 표준조례(안)에는 자치구 단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 조례는 보통 동단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시에는 자치구 조례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 자치구 또는 동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신규구성의 진행일정, 기준과 방법, 주민자치회 공개추첨 방법 등을 결정하여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과정의 기준을 세우고 진행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선정위원회의 권한이 조례에서 정한 신규구성 절차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치구 자치부서와 주민자치사업단이 함께 활동 가이드를 작성하여 선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선정위원회 가이드를 작성할 때 선정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명시하여 선정위원회가 조례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0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첨은 어떻게 진행 하나요?

A 주민자치학교가 끝나면 주민자치학교 이수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추첨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대상자가 확인되면 공개추첨의 방식을 정하고 대상자에게 공지하여 추첨과정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공개추첨은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개추첨을 녹화하여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가 추후 영상을 통하여 공개추첨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례 구성 비율에 따라서 구성 인원을 확인하고 추첨을 통하여 비율을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공개추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개추첨 방식은 자치구별로 변형 가능함)

예시) 개인 60%, 단체 40% 이하 / 40대 이하 15% / 특정성별 60% 이하

단체(20명)			개인(30명)		
성별		40대 이하	성별		40대 이하
남	여		남	여	

03 주민자치회 운영내규를 워크숍을 통하여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운영내규는 주민자치회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입니다. 위원이 지켜야 하는 약속을 워크숍을 통하여 함께 만듦으로 위원 스스로가 주민자치회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도 '자치'의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04 임원 및 간사 선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원 선출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바로 진행하지 않고 주민자치회 운영내규 워크숍 후에 진행합니다. 워크숍을 진행 한 후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워크숍 기간을 통하여 위원 서로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각 동 주민자치회 리더십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선출 방식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이뤄지며 2년 임기 후 위원임기가 연임되더라도 임원은 꼭 호선을 통하여 재선출해야 합니다.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연임이 된다고 임원의 직위까지 자동 연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은 추후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민자치회의 리더로 활동합니다. 간사는 동자치지원관과 함께 신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사는 주민자치회 사업기획, 회계정산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과 실무 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선출해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함께 이끌어 나갑니다,

05 감사의 역할과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감사는 정례적으로(연1회) 사업 및 회계 감사를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예산 수립, 결산, 집행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평가하고 예 · 결산의 투명성과 집행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임원이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예 · 결산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자치회 임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06 분과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과의 활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참여의사가 있는 주민은 누구나 분과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회의와 운영의 의결권은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추첨이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만 부여되지만, 분과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의제를 실행하는 주요 활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분과별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실행 등의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은 분과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동일합니다.

07 정책공유회 진행 시 주민자치사업단과 행정부서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A 정책공유회는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된 의제를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 행정과 주민이 함께 모여 의제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공론장입니다.
정책공유회의 전체적인 진행은 자치구 자치부서와 주민자치사업단이 함께 기획하고 진행합니다(필요시에는 TF 형태로도 운영 가능). 자치부서의 역할은 의제와 연관성이 있는 자치구 관련부서가 정책공유회에서 의제를 제안한 주민과 의제실현에 대하여 조언 및 토론을 성심성의껏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사업단은 동에서 선정된 의제를 사전 취합하여 의제를 분류 정리하여 행정에 사전 공유함으로써 정책공유회에 참여하는 행정과 주민이 원활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08 자치계획 의제 중 적합하지 않은 의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자치계획 의제 중 자치회관 및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자치회관의 물품 구입, 방역장비 구입, 직능단체의 자체사업 수행 물품 구입비,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 자치구 고유사업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은 자치계획 의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능단체나 자치구의 자체경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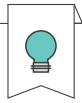

부적합 및 적합사업 예시

실행의제 제출 시 제외될 수 있는 사업

- 자치회관, 주민센터 등 리모델링 사업(시의회 지적사항)
- 주민자치위원회(자치회관 물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방역장비 등) 등 직능단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단체 자체경비 활용)
  - 단체운영 경비 사용 불가
-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 단순 민원 해결 사업(구비 확보)
  - 자치구 고유사업은 사용불가

실행의제 제출 가능 사업

- 자치회관 내의 주민사용 공간(주민 주체, 운영계획 등이 확실한 공간)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
- 골목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 등

09 주민총회 시 총회 정족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주민총회 정족수 및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상황을 고려해 운영내규로 정하도록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별 사례를 봤을 때 주민총회 정족수는 동인구의 1% 또는 0.5%가 다수입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에 대한 대표성과 명분을 얻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총회 정족수를 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주민총회는 매년 진행해야 하나요?

A 조례표준안에 따르면 총회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초기에는 주로 주민세와 시민참여예산을 실행하기 위한 자치계획의 의결을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지만 주민자치회 운영이 안정화되면 꼭 자치계획의 의결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의 1년간의 활동내역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우리동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총회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시범사업 개선안, 조례표준안 개정('20.7)을 통해 주민자치회 의결로 주민총회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주민총회를 매년 개최하는 방안, 격년으로 개최하는 방안, 임시총회를 도입하는 방안들을 제도화하여 사업 초기 주민자치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치구 조례 제·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1 자치회관의 인수인계, 위탁운영의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자치회관 위탁운영까지는 크게 자치회관 분과구성, 자치회관 자율운영, 자치회관 민간위탁 준비, 자치회관 민간위탁 운영 등 4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바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회관 위탁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역량과 자치구청의 행정사항 준비(사업비 산정, 위탁 근거 마련 등)에 따라 민간위탁의 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민 총회에서 결정하고 위탁 절차가 진행된 때 위탁협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업무의 인수인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식 1-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신청 유형	☐ 신규 ☐ 분과위원		주민자치학교 이수여부	☐ 이수 ☐ 미이수
개인/단체 구분	☐ 개인부문 ☐ 단체부문 (단체명)		거주주민/ 생활주민구분	☐ 거주주민 (우리동에 살고 있어요) ☐ 생활주민 (우리동에서 활동·일하고 있어요)
이름			연락처	
성별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3년 이내 마을 활동 경험 (중복가능)	1.주민자치위원회	2.마을계획단	3.참여예산 동지역회의	4.직능단체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	☐	☐	☐
	5.마을공동체공모사업 (서울시, 자치구)	6.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7.그 외 단체 및 주민모임/기타	8.경험 없음
	☐	☐	☐ (단체명)	☐
신청사유 (지원동기, 관심분야)	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			
관심 주제 키워드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제를 키워드로 작성해주세요. 예) #주민소통 #마을공간 #환경 #인권 #마을신문 #마을경제			
※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후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함께 제출 필
※ 단체부문 신청자의 경우 '주민자치회 단체부문 추천서' 함께 제출 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 귀하

[서식 1-2]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신청서

○○동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신청서					
주민자치회 위원 여부	☐ 위원활동 중 ☐ 신규 참여		주민자치학교 이수여부	☐ 이수 ☐ 미이수	
개인/단체 구분	☐ 개인부문 ☐ 단체부문 (단체명)		거주주민/ 생활주민구분	☐ 거주주민 (우리동에 살고 있어요) ☐ 생활주민 (우리동에서 활동·일하고 있어요)	
이름			연락처		
성별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3년 이내 마을 활동 경험 (중복가능)	1.주민자치위원회	2.마을계획단	3.참여예산 동지역회의	4.직능단체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	☐	☐	☐	
	5.마을공동체공모사업 (서울시, 자치구)	6.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7.그 외 단체 및 주민모임/기타	8.경험 없음	
	☐	☐	☐ (단체명)	☐	
신청사유 (지원동기, 관심분야)	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				
관심 주제 키워드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제를 키워드로 작성해주세요. 예) #주민소통 #마을공간 #환경 #인권 #마을신문 #마을경제				

※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함께 제출 필

위 본인은 서울시 ○○구 ○○동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 회장 귀하

[서식 1-3]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신청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신청서

개인/단체 구분	☐ 개인부문 ☐ 단체부문 (단체명)	거주주민/생활주민구분	☐ 거주주민 (우리동에 살고 있어요) ☐ 생활주민 (우리동에서 활동·일하고 있어요)
보수교육 이수여부	☐ 이수 (이수시간:) ☐ 미이수	활동분과명	
위원 활동 기간 (현재 임기)	'00. 00. 00 ~ '00. 00. 00.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임기 내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연임자격 부여 (자치구 조례10조2항)			
이름		연락처	
성별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3년 이내 마을 활동 경험 (중복가능)				
	1.주민자치위원회	2.마을계획단	3.참여예산 동지역회의	4.직능단체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	☐	☐	☐
	5.마을공동체공모사업 (서울시, 자치구)	6.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7.그 외 단체 및 주민모임/기타	8.경험 없음
	☐	☐	☐ (단체명)	☐

신청사유	주민자치회 연임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
관심 주제 키워드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제를 키워드로 작성해주세요. 예) #주민소통 #마을공간 #환경 #인권 #마을신문 #마을경제

※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함께 제출 필
※ 단체부문 신청자의 경우 '주민자치회 단체부문 추천서' 함께 제출 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동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활동단체명,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 3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년 간 마을·자치활동 경험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 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서울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계수집·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의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보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년 간 마을·자치활동 경험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 3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부문 추천서

○○동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부문 추천서

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성명	
	주요활동			
	3년이내 마을공동체공모 사업 선정 현황	해당년도, 공모사업명, 사업내용 기재 해당 시 작성		
추천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이메일	
추 천 사 유				
- 단체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방향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				

주민자치회 단체부분 위원 추천 시 확인사항	
1. 서울형주민자치회시범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함	확인함 ☐
2. 추천대상자 선정시 단체회원과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합의절차를 거쳤음	확인함 ☐
3.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와 단체의 융합방향을 검토함	확인함 ☐
4. 추가 제출 문서를 확인하고 제출함 (추가 제출 문서 : 단체 회원 명부)	확인함 ☐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 / 추천인 : (인)

○○구청장 귀하

[서식 4] 주민자치회 신청자 명단

OO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명단(2020.00.00기준)

일반현황													※단체부분만 작성		3년 이내 마을 활동 경험 유무 (해당하는 곳 1표씩, 중복가능)								선정/활동 현황			
연번	신청서 접수일	위원/분과위원	개인/단체 구분	거주 주민/생활 주민	이름	성별	생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추천 단체	추천 단체 자위	1. 주민자치위원회	2. 참동 마을 계획단	3. 참여 예산 동지역 회의	4. 직능단체 (통장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등)	5.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서울시, 자치구)	6. 자치 회관 프로그램 수강	7. 그 외 단체 및 주민 모임/기타 (직접기재)	8. 경험 없음	주민자치 학교 이수여부 (이수/미이수)	최종 선정 여부 (선정/미선정)	미선정 이유 (낙첨/교육 미이수/개인사정/불참의사)	분과 활동 여부 (O/X) 관심 주제	비고
예시	2020.01.03	위원	개인	거주	홍마을	남	1986	010-2345-6789		서울시 00구 00동					1			1					이수	미선정	낙첨	O문화 예술	
예시	2020.03.12	분과 위원	단체	생활	김연아	여	1991	010-2345-6790		서울시 00구 00동			OO 복지관	간사		1							이수	선정		X복지	
1																											
2																											
3																											
4																											
5																											
6																											
7																											
8																											
9																											
10																											

[서식 5]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 명단

○○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 명단
(2020.01.01.기준)

연번	위원/분과위원	개인/단체	거주주민/생활주민	이름	성별	생년	연락처	주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6] 간사 활동기록부

○월 ○○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기록부

(활동비 항목 내 활동수당)

□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산출근거	간사 서명	확인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강사 활동비확인서 함께 첨부 필수

※ 개인정보 수집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 164조, 시행령 제 193조 및 제 213조

[서식 7] 간사 활동비 확인서

간사 활동비 확인서

건 명			
일 시 (기 간)	20 년 월 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금 액 (소득세등포함)		지급방법	개인 계좌 입금
지급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이용 동의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 제24조 및 「소득세법」제145조,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자격 적격여부 및 실비 지급 근거 자료, 세무신고 활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 집 항 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기관, 직위, 은행계좌(통장사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년도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이후 폐기)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비지급 등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거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1. 제공받는 자 : 국세청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4. 보유 및 이용기한 : 해당년도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 (이후 폐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 . .

확인자 : (인)
(활동비 지급 해당자)

[서식 8] 주민자치회 회의록

○○동 주민자치회 회의록

회 의 명					
회의일시	20○○년 월 일 (요일) ○○시 ~ ○○시				
장 소					
참 석 자 (총 명)	명단 별첨				
회의구분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	분과회의	기타 ( )
회의안건					
회의내용					
사진기록					

[서식 9] 분과별 제안의제 목록

행정동 :
분과명 :

분과별 제안의제 목록

연번	제안의제명	제안위치 (장소)	주요 당사자	내용	정책공유회 진행여부	총회상정 여부	최종 의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액셀파일로 양식 제공

[서식 10] 자치계획 제안서

○○동 :
○○분과 :

자치계획 제안서

1. 제안내용

과 제 명			
제 안 위 치 (장 소)		주요당사자	
제안사유	필요와 욕구 조사 목록'의 내용을 바탕으로,분과별 심층조사 및 과제 찾기 워크숍에서 진행한 분과별 지역 심층조사 내용과 과제별 당사자 조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만들고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글 또는 사진	글 또는 사진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여 작성
제안내용	• 제안내용 ※ 작성 시 점검사항 - 분과 내 필요와 욕구조사 후 심층조사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작성합니다. - 타 분과 제안과 유사 내용은 되도록 통·융합하여 하나의 제안으로 정리합니다.		

2. 자치구 유관부서 정책정보 제공 및 컨설팅 (확인날짜 : 20 . . .)

법령·조례 등 저 촉 여 부	저촉 ☐ 해당없음 ☐	저촉사유 :
행정검토내용	- 법령 등 저촉여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 추가 검토했으면 하는 자료 등 종합적 의견 정리 - 정책공유회 기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	
부 서 명		
검 토 자	과장 / 팀장 / 담당 (전화번호)	

※ 주민자치회의 제안내용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이 취합, 모니터링 한 후 자치구 유관부서에 송부, 자치구 유관부서 검토 의견과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정책공유회' 기획

[서식 11] 의제별 사업계획서

○○동 :
○○분과 :

사업명

사업의 필요성	• 주민의 필요와 욕구 '○○동 ○○분과 자치계획 제안' 중 '제안사유' 내용을 정리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심화하여 정리 • 주요당사자 의견 내용 주요당사자 의견수렴 혹은 협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사업목적	이 사업을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
사업기간	20○○. ○○ ~ 20○○. ○○(○○개월 간)
사업내용	주민자치사업단, 유관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자치계획의 '제안내용'을 수정 정리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내용 및 방법
세부사업1	년 월 ~ 년 월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추진주체
세부사업2	년 월 ~ 년 월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추진주체

■ 예산계획

예 산 과 목		편성항목	산출내역	금 액
비목	하위 비목			
사업비	세부사업1 ( )		실비를 조사하여 작성	
	세부사업2 ( )			
소 계(%)				원
-	-			
소 계(%)				원
총 계(100%)				원 (%)

사업비 마련 방법	

※ 작성방법

사업비 마련 방법 : ①참여자 자부담으로 실행 ②공모사업으로 실행 ③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실행 ④참여예산과 연계(차기년도 실행) ⑤행정사무 수탁으로 실행(차기년도 협약) ⑥주민세 개인균등분

■ 협조사항 (정책공유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 정리)

구분		협력내용
자치구 유관부서		
지역기관		
기타 (예: 주민, 전문가)		

[서식 12] 총회 안건 총괄표

총회 안건 총괄표

연번	예산 조달방법	실행시기	사 업 명	작성분과	예산액
1	공모사업을 통해 실행	차기년도 실행	함께 소통하는 마을문화 만들기	마을공동체분과	500천원
2	동단위참여예산	하반기 실행	함께 나누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자치회관운영분과	500천원
3	동단위참여예산	하반기 실행	더불어 함께 사는 장애인 친화마을	환경안전분과	300천원
4	동단위참여예산	차기년도 실행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학교 운영하기	자치회관운영분과	300천원
5	참여자 자부담으로 실행	차기년도 실행	걷고 싶은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환경안전분과	100천원
6	주민자치회 자체 예산으로 실행	하반기실행	마을시설 보수하고 정비하기	자치회관운영분과	100천원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방법

실행시기 : ①하반기 실행 ②차기년도 실행

예산 조달방법 : ①참여자 자부담으로 실행 ②공모사업을 통해 실행 ③주민자치회 자체 예산으로 실행 ④참여예산과 연계 (차기년도 실행) ⑤행정사무 수탁으로 실행(차기년도 협약 체결) ⑥주민세 개인균등분 ⑦비예산

[서식 13] 주민총회 사전 체크리스트

※ 주민자치회가 기획한 총회의 방식에 따라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_사전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내용	체크
사전 홍보		• 주민에게 주민총회에 대한 홍보와 자료(주민총회 자료집)제공이 충분히 되어있는가?	
		• 총회정족수확인, 투표권 확인 등과 같은 참여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가?	
		• 주민총회에 대한 문의가 있을 시 응답할 담당자가 배치되었는가?	
장소		• 주민다양성을 고려하여 장소를 섭외, 준비 하였는가? (장소인지도, 어린이동반,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출입, 주차와 주차안내 등)	
		• 주민총회 장소 안내를 위한 사인물을 설치(준비) 하였는가?	
		• 우천 등 기상변화에 대응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접수 관련		• 접수대의 운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담당자, 참관인 구분, 투표권확인 절차, 방명록 작성, 정보의 이용 안내 등)	
		• 주민에게 총회진행을 안내할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주민자치회설명, 총회설명, 투표방식안내, 투표결과 처리방식 안내, 기타 질의 응대 등)	
		• 주민총회의 식순 및 제안 의제를 안내하는 '총회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는가?	
		• 분과 및 자치계획실행에 참여 희망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는가?	
숙의 관련	의제 발표	• 주민총회 전체 진행할 사회자가 결정되고 진행전반에 대한 이해가 되었는가?	
		• 주민자치회 활동 경과 및 활동에 대해 설명할 발표자를 결정했는가?	
		• 자치계획 의제를 발표할 발표자들을 결정하고, 발표 방식, 시간 등을 협의 하였는가?	
	토론	• 토론을 진행할 진행자 및 퍼실리테이터, 기록자를 결정하고 운영(토론시간, 토론기준 등)에 대해 협의 하였는가?	
		• 주제별 토론할 경우, 각 주제 사인물 등이 테이블에 표시를 준비하였는가?	
		• 숙의토론을 위한 필요 준비물(총회 자료집, 필기구, 기타 교구 등) 이 테이블에 세팅되어 있는가?	
투표 관련		• 투표방식, 주의사항 등을 안내 할 담당자가 배치되었는가?	
		• 투표장에 투표할 수 있는 물품이 준비되어 있는가?	
		• 투표장에 투표와 집계 과정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 투표결과를 바로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가?	
당일 홍보		• 언론매체 및 자체 홍보 담당자가 있는가?	
		• 현장 촬영 언론매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 주민총회 소통 창구(페이스북 라이브방송)가 마련, 운영준비를 하였는가?	
기타		• 주민총회 진행 실무자들 간에 성평등, 주민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및 사전약속이 이행되었는가?	
		• 주민총회 진행을 위해 각 역할에 맞는 업무분장이 완료 되었는가?	
		•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마이크, 스크린, 테이블, 의자, 음향, 영상, 기타 사무용품 등) 점검이 완료되었는가?	
		• 사진, 영상 등 현장기록 담당자가 있는가?	
		• 기타 주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가?	
		• 안전사고, 물품준비, 비상연락망 등을 관리하는 장소마련과 담당자가 있는가?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행정안전부